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3000-002928-14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및 운영 표준안

2021. 2.

**국 토 교 통 부**



---

#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 및 운영 표준안

---

◆ 본 표준안은 심의 운영기관 및 발주기관 등의 업무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참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 1.

국 토 교 통 부  
기술안전정책관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제도는 1975년 도입되어 2010년 전면 개편 이후 3번의 부분 개편을 통해 건설업체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설 신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술력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심도 있는 설계심의를 지원하고자 심의위원 정원을 확대하였으며, 심의기간 단축과 평가위원 선정시 특정대학 출신 참여를 제한하고 제3자를 통한 비리감점을 반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고 평가지표 세분화로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였으며, 기술형입찰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를 금지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 입찰절차 및 심의 운영제도에 관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개정된 제도를 원활히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 내용 위주로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설계 심의 및 운영 표준안」을 재발간 하게 되었으며,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부록에 관련 규정과 설계심의 중점착안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각 발주기관은 본 표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표준안이지만 적용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설계 심의 및 운영 표준안」을 통해 담당자들이 기술형입찰 심의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설계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건설사업의 기술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이 상 주



# 목 차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및 운영 표준안

<b>I</b>	설계심의 일반	1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3
	제2절 설계심의전 준비사항	3
	제3절 설계심의 절차	7
	제4절 설계심의분과위원회	9
	제5절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14
<b>II</b>	설계심의 단계별 수행업무	19
	제1절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21
	제2절 입찰안내서 심의	22
	제3절 심의계획 수립	24
	제4절 심의위원 선정 및 공개	30
	제5절 공동설명회 및 현장답사	32
	제6절 소위원회 기술검토회의	33
	제7절 온라인 질의·답변	34
	제8절 설계평가 및 채점 등	35
	제9절 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51
	제10절 심의 후속단계	52
<b>III</b>	설계심의·운영 특별규정	53
	제1절 설계심의 분과위원 관리	55
	제2절 설계심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 강화	60
	제3절 비리·감점관련 업무처리 절차	61
	부록	77





# 설계심의 일반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 제2절 설계심의전 준비사항
- 제3절 설계심의 절차
- 제4절 설계심의분과위원회
- 제5절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 I. 설계심의 일반

###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 1-1 목적 및 배경

- (목적)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설계심의 및 평가 수행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업무 담당자의 심의·평가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함
- (배경)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및 운영 표준안('13.1)」 배포 이후 지속적인 설계심의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매뉴얼 개정이 필요해짐

#### 1-2 적용범위

- 이 표준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86조, 제103조,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설계심의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설계심의 주무관청은 발주청 여건 및 심의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제2절 설계심의전 준비 사항

#### 2-1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추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 또는 특정공사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공기단축이 필요하거나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위, 지방위,

특별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받아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방식을 결정

☞ 관련법령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1호)

■ 일괄 입찰(턴키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기본설계+시공 일괄시행) 방식
- 심의시설(내용)
  - ① 심의 대상 시설이 총공사비의 50% 이상
  - ②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 ③ 설계와 시공 전반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

■ 대안 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한 실시설계서 공종 중, 대체 가능 공종을 기본방침 변경 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 원안 가격보다 저가로 입찰하는 방식
- 심의기준(내용)
  - ① 심의 대상 시설이 총공사비의 40% 이상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심의기준(내용)
  - ① 심의 대상 시설이 총공사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 이상인 경우
  - ②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심의기준(내용)
  - ① 심의 대상 시설이 총공사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 이상인 경우

■ 기타공사

- 턴키 또는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공사 외의 모든 공사

## 2-2 사전조사

- (일괄입찰)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청은 기초자료 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
    -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노선의 미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작을 경우 생략 가능)
- ☞ 관련법령 : 운영규정 제38조(사전조사 실시)

## 2-3 입찰안내서 협의

- 발주기관은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 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 국토교통부장관(또는 해당 심의기관)과 협의
- ☞ 관련법령 : 운영규정 제13조제2항

## 2-4 낙찰자 결정방식 결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선정(계약심의회 자문 구함)하고 입찰공고시 명시
-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제85조, 제102조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예규 제322호

## 2-5 입찰공고

- 발주청 입찰안내서 및 방침사항 등을 반영하여 발주방침 결정 후 현장설명일 등을 포함하여 입찰 공고(조달청, 발주기관)
-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 2-6 분과위원회 구성

- 중앙심의위원회(지방위, 특별위, 기술자문위)는 일괄·대안·기본설계기술제안·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지방위원, 특별위원, 기술자문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방위, 특별위, 기술자문위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진법 시행령에 정한 범위에서 인원을 추가하여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일시 임명 또는 위촉 가능

☞ 관련법령 : 건진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운영규정 제4장

## 2-7 위원회 구성전 사전협의

- 각 발주청은 심의기관 특성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실시
- 주요 협의내용
  - 분과위원회 구성 전
    - 설계심의 분과위원 자격기준 완화 적용방안, 공개일시 조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소위원회 구성 전
    - 중앙위원 일시 위촉방안, 소위원 선정 및 관리방안, 합숙심의 등 심의기간(일정) 조정방안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협의시기 : 위원회별 위원선정 15일 전
  - 다만, 심의계획 미확정 등 기한 내에 협의가 곤란한 경우 제한적으로 위원선정 최소 10일 전까지 협의

☞ 관련법령 : 건진법 시행령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제3절 설계심의 절차

### 3-1 설계심의

<p>① 입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 및 설계도서 제출(입찰사 → 조달청, 발주청)</li> <li>■ 설계심의 의뢰(발주청 → 심의기관)</li> </ul>
<p>② 심의계획 수립 (D - 20일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li> <li>■ 소위원회 구성(안)</li> <li>■ 지원반 구성 및 운영(발주청 협의)</li> <li>■ 온라인 턴키 마당 사용방법 및 절차 등</li> </ul>
<p>③ 심의계획 설명회 (D - 15일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 심의운영방안 설명(심의기관 → 입찰사)</li> <li>■ 세부평가지표별 배점표 제출(입찰사 → 심의기관)</li> <li>■ 공동설명회 운영 및 심의위원 질문항목 답변서, 입찰사간 질문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 설명</li> <li>■ 분과위원 제척대상 확인</li> <li>■ 온라인 턴키 마당 사용방법 및 절차 등</li> <li>■ 업체간 설계토론회 방법 설명</li> </ul>
<p>④ 심의위원 선정 및 공개 (D - 10일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 선정 및 명단 공개 (홈페이지, 온라인 턴키 마당 등에 공개)</li> <li>■ 심의자료 온라인 턴키 마당 등록(발주청, 심의기관)</li> <li>■ 설계도서 배포</li> </ul>
<p>⑤ 현장답사 및 공동설명회 (D - 8~9일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 심의운영 방안 설명(심의기관 → 심의위원) - 기술검토서 및 질문서 등 작성방법 설명</li> <li>■ 소위원 대상 온라인 턴키 마당 사용방법 설명</li> <li>■ 심의위원에게 설계내용 설명(입찰사 → 심의위원)</li> <li>■ 입찰업체 설계 설명 이후, 간단한 질문 및 답변</li> <li>■ 심의위원 현장답사(발주청 수행)</li> </ul>
<p>⑥ 기술검토서, 질의서, 설계 검토서 등 심의자료 제출 및 등록 (D - 6일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턴키 마당 이용 위원 질의 및 업체 답변</li> <li>■ 입찰참가자별 설명자료 등록</li> <li>■ 위원 공통질문서 및 업체간 질문서 제출</li> </ul>
<p>⑦ 기술검토회의 (D - 5일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질문 및 업체간 질문항목 확정</li> <li>■ 설계검토서 검증 및 기준위반사항 심의</li> <li>■ 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 결정</li> </ul>
<p>⑧ 설계평가회의(D - da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심의 토론회</li> <li>■ 설계평가</li> <li>■ 평가결과 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업체 설계 설명 이후, 간단한 질문 및 답변 - 배점위원회 별도 개최</li> <li>■ 업체간 설계토론회 개최, 보충·추가질의 및 입찰사 답변</li> <li>■ 입찰사 답변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심의위원)</li> <li>■ 설계도서 검토 및 토론(심의위원)</li> <li>■ 설계점수 채점(심의위원), 설계적격여부 심의(심의위원)</li> <li>■ 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홈페이지, 온라인 턴키 마당)</li> </ul>

### 3-2 설계심의(단축심의)

<p>① 입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 및 설계도서 제출(입찰사 → 조달청, 발주청)</li> <li>■ 설계심의 의뢰(발주청 → 심의기관)</li> </ul>
<p>② 심의계획 수립 (D - 15일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li> <li>■ 소위원회 구성(안)</li> <li>■ 지원반 구성 및 운영(발주청 협의)</li> <li>■ 온라인 턴키 마당 사용방법 및 절차 등</li> </ul>
<p>③ 심의계획 설명회 (D - 14일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 심의운영방안 설명(심의기관 → 입찰사)</li> <li>■ 세부평가지표별 배점표 제출(입찰사 → 심의기관)</li> <li>■ 공동설명회 운영 및 심의위원 질문항목 답변서, 입찰사간 질문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 설명</li> <li>■ 분과위원 제척대상 확인</li> <li>■ 온라인 턴키 마당 사용방법 및 절차 등</li> <li>■ 업체간 설계토론회 방법 설명</li> </ul>
<p>④ 심의위원 선정 및 공개 (D - 7일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 선정 및 명단 공개 (홈페이지, 온라인 턴키 마당 등에 공개)</li> <li>■ 심의자료 온라인 턴키 마당 등록(발주청, 심의기관)</li> <li>■ 설계도서 배포</li> </ul>
<p>⑤ 현장답사 및 공동설명회 (D - 6일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 심의운영 방안 설명(심의기관 → 심의위원) - 기술검토서 및 질문서 등 작성방법 설명</li> <li>■ 소위원 대상 온라인 턴키 마당 사용방법 설명</li> <li>■ 심의위원에게 설계내용 설명(입찰사 → 심의위원)</li> <li>■ 입찰업체 설계 설명 이후, 간단한 질문 및 답변</li> <li>■ 심의위원 현장답사(발주청 수행)</li> </ul>
<p>⑥ 기술검토서, 질의서, 설계 검토서 등 심의자료 제출 및 등록 (D - 4일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턴키 마당 이용 위원 질의 및 업체 답변</li> <li>■ 입찰참가자별 설명자료 등록</li> <li>■ 위원 공통질문서 및 업체간 질문서 제출</li> </ul>
<p>⑦ 기술검토회의 (D - 4일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질문 및 업체간 질문항목 확정</li> <li>■ 설계검토서 검증 및 기준위반사항 심의</li> <li>■ 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 결정</li> </ul>
<p>⑧ 설계평가회의(D - da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심의 토론회</li> <li>■ 설계평가</li> <li>■ 평가결과 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업체 설계 설명 이후, 간단한 질문 및 답변 - 배점위원회 별도 개최</li> <li>■ 업체간 설계토론회 개최, 보충·추가질의 및 입찰사 답변</li> <li>■ 입찰사 답변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심의위원)</li> <li>■ 설계도서 검토 및 토론(심의위원)</li> <li>■ 설계점수 채점(심의위원), 설계적격여부 심의(심의위원)</li> <li>■ 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홈페이지, 온라인 턴키 마당)</li> </ul>

## 제4절 설계심의분과위원회

### 4-1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 가.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 구성 :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
  - 분과위원장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간사 : 소관업무 담당 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
  - 서기 : 소관업무 담당 해당부서 6급 공무원
- ☞ 관련법령 : 건진법 시행령 제9조, 운영규정 제24조

#### 나. 지방심의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 구성 :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
    -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위원 정수의 2/5(1/2)범위내 추가하여 중앙위 설계심의 분과위원 일시적 임명·위촉 가능
  - 분과위원장 : 지방심의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간사 및 서기 : 분과위원장이 임명
- ☞ 관련법령 : 건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운영규정 제3장 및 제4장

#### 다. 특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 구성 :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
    - 필요시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2/5범위내 추가)
  - 분과위원장 :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간사 및 서기 : 분과위원장이 임명
- ☞ 관련법령 : 건진법 시행령 제18조

## 4-2 분과위원 자격기준

- 행정기관 : 4급 이상 기술직, 5급+기술사·건축사·박사
- 공공기관 : 기술직 임원, 2급+기술사·건축사·박사
- 연구기관 :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기술분야 교수 또는 기술관련 학과(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교수

☞ 관련법령 : 건진법 시행령 별표2, 운영규정 제24조

## 4-3 분과위원 선정

- 위원임기 : 분과위원회 위원은 비상근으로 임기는 1년(기본역량 평가를 통해 연임 결정)
- 위원분야 : 토목부문, 건축부문, 공통부문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전문분야로 구분(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위원추천 : 공사의 종류, 특성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전문분야별 후보자를 관련 기관으로 추천 받음
  - 발주기관 및 연구기관에 소속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 대학에 소속한 교수의 경우에는 관련 학회장 추천
- 위원선정 : 중앙위(지방·특별) 및 기술자문위 위원장은 분과위원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근무 또는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이나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검증을 걸쳐 최종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확정
  - 지방위·특별위·기술자문위 분과위원은 소속 직원을 과반수이상 포함 선정

☞ 관련법령 : 건진법 시행령 제17조 ⑥항, 제18조 ⑥항, 제19조 ⑥항

〈표 1〉 전문분야 분류(예시)

구분	전문분야	세부전공분야
토목부문 (7개 분야)	도로 및 교통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철도	철도계획, 철도설계, 철도노반, 궤도, 관제, 전철전력, 신호통신, 측량 및 측지, 교량
	토목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토질 및 기초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토류 구조물
	수자원, 상하수도	댐,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 구조물,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수처리
	항만 및 해안	항만, 연안계획, 해안시공, 해양물리, 해양지질, 해양수공
	토목시공 건설관리	토목시공, 건설관리(토목),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부문 (4개 분야)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전시기획
	건축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건축시공 건설관리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설관리(건축),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설비, 통신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통신설비, 전자통신, 전자응용, 통신전자제어
공통부문 (1개 분야)	조경·환경	도시계획·설계, 단지계획·설계, 지역계획, 경관계획, 조경계획·설계, 조경식재,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환경평가
계	12개 분야	

※ 운영규정 제32조, 별표3, 별표6, 별표7 전문분야 참고

## 4-4 위원 제척·회피·기피

### ● 제척사유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척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친족 :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최근 5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제척 : 관련법령에 의해 당연히 심의위원에서 제외되는 것

### ● 회피의무

1. 위원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

\* 회피 : 설계 심의에 대하여 심의위원 스스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

- 기피신청

1.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못함)

\* 기피: 제척사유 이외의 사유로 해당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입찰참가자, 발주청)의 신청에 의해 제외하는 것

2.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이전 위원 제척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고지(이 경우 심의기피신청위원은 당해 안건 심의 배제)

-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촉 가능

☞ 건진법 시행령 제20조, 운영규정 제24조

#### 4-5 위원 면직·해촉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함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상기 제척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 건진법 시행령 제22조, 운영규정 제24조, 별표2

## 제5절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 5-1 소위원회 구성

- 구성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40인 이내의 심의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함)으로 구성
- 소위원장 :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설계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 미참여)
- 사전협의 : 특별위·지방위·기술자문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전에 중앙위와 심의운영계획, 심의위원 선정 및 관리방안, 중앙위원 일시위촉[정원의 2/5(기술자문위는 1/2) 이내] 계획, 합숙심의 등 심의시기 조정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

☞ 관련법령 : 건진법 시행령 제10조, 운영규정 제25조

### 5-2 소위원회 선정 및 자격기준

-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심의 요청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함)으로 임명 또는 위촉
1. 소위원은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자를 선정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주된 전문분야는 2인 이상 선정 원칙

2. 소위원의 선정 시기는 심의일 전 10일 이내에 선정하고 홈페이지·온라인 토크 마당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 공개

- 중앙위와 사전 협의하여 위원의 선정 및 공개일수 조정 가능
- 심의위원의 당해연도 설계심의 2회 이상 참여를 지양하고,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대학교 출신이 전체 30%, 분야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 선정시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설계심의 건에 참여하는 입찰 참가 업체별로 1인을 입회시켜야 함

- 분과위원장은 소위원 임명 위촉시 심의기피·회피 규정에 관한 사항을 분과위원에게 고지(이 경우 심의기피·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소위원에 임명 못함)

☞ 관련법령 : 건진법 시행령 제22조, 운영규정 제25조

### 5-3 소위원회 개최

- 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2/3 이상 출석시켜 소위원회 개최
  -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음
-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의 심의 가능

☞ 관련법령 : 운영규정 제25조

## 소위원회 구성시 국토교통부와 협의절차

### ■ 필요성

- (현황) 건진법시행령 제9조 ⑥항 별표2에 따라 심의기관(특별위·지방위·기술자문위)에서 소위원회 구성 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토록 함
  - \* “별표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 기준” 3.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
- (필요성) 소위원회 구성 협의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 필요

### ■ 소위원회 구성 협의 절차(안)

① 협의대상 :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인 소기관\*

- \* 28개 기관 : 정부 5개(조달청 등), 광역지자체 16개(서울시, 부산시 등)  
공사·공단 7개(LH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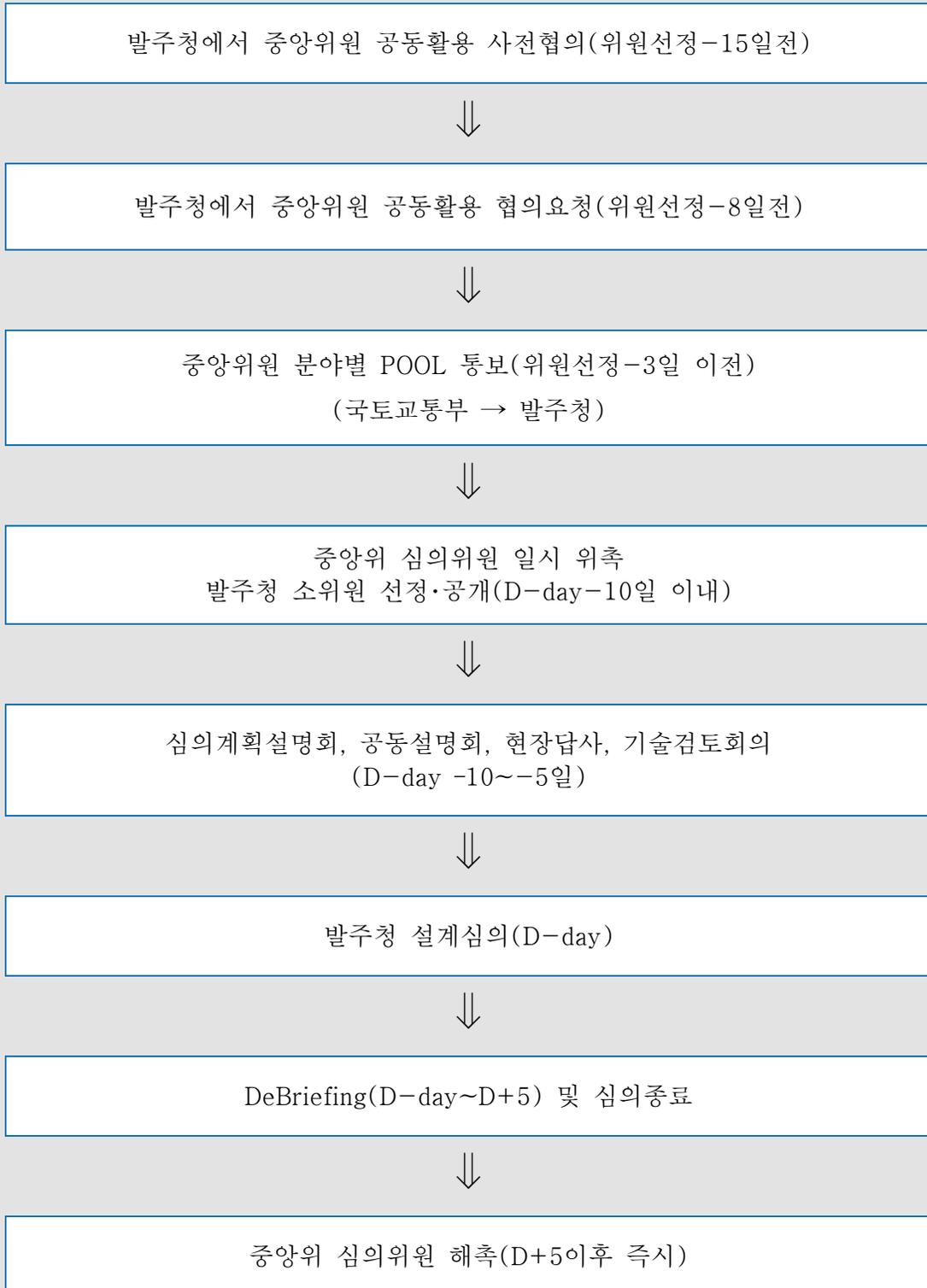
② 협의내용

- 소위원 선정 및 관리방안, 중앙위원 일시위촉 계획, 심의기간 조정계획 등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운영 계획
  - ※ 중앙위원 활용 확대(기술자문위 정원의 1/2 이내, '19.4월 건진법시행령 개정)

③ 협의시기 및 방법

- 심의위원 선정 15일전까지 심의계획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사전 협의
  - 다만, 심의계획 미확정 등 기한 내에 협의를 곤란한 경우 제한적으로 위원선정 최소 10일 전까지 협의
  - ※ 자격기준 외 설계심의분과위원 위촉은 정원의 1/5 이내(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

###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 공동활용 업무처리 절차







# 설계심의 단계별 수행업무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제1절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제2절 입찰안내서 심의
- 제3절 심의계획 수립
- 제4절 심의위원 선정 및 공개
- 제5절 공동설명회 및 현지답사
- 제6절 소위원회 기술검토회의
- 제7절 온라인 질의·답변
- 제8절 설계평가 및 채점 등
- 제9절 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 제10절 심의 후속단계



## II. 설계심의 단계별 수행업무

### 제1절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1-1 입찰방법 심의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도, 고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대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방법 심의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중앙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로 집행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제출
  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3.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 발주기관은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미달하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 턴키·대안·기술제안입찰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1.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
  2.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 3.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난이도 높은 기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 4.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 관련규정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3조(국토교통부 고시)

## 1-2 입찰방법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하여야 함.

## 1-3 입찰실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제8조, 시행령 제33조, 제80조, 제99조

## 제2절 입찰안내서 심의

### 2-1 입찰안내서 작성(발주청)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별표11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
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당해 사업내용을 나타내는 자료

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
  4. 설계항목 배점표, 세부평가지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
  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
  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사전조사 실시) 발주청은 기초자료 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
    - 노선의 미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질조사 생략은 가능하나 그 외 공동 활용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 실시
  - (입찰서) 발주청은 입찰서 제출 목록은 운영규정 별표12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내용이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의한 기본설계의 내용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 범위내로 한정
  - (감점사항) 발주청은 입찰참가자가 상기 입찰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

## 2-2 입찰안내서 협의(발주청→심의기관)

- 운영규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 목록, 감점기준 (비리감점 포함),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 국토교통부장관(또는 해당 심의기관)과 협의

## 2-3 입찰안내서 심의(발주청 또는 심의기관)

-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요청 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심의
- 기술자문위원회가 없는 심의요청 기관의 경우,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기관에 요청 가능

### 제3절 심의계획 수립

#### 3-1 설계심의운영 종합계획 수립(심의기관)

-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착수에 앞서 발주청과 협의,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설계심의운영 종합 계획」 을 수립
  1. 설계심의 대상공사 개요
  2. 심의일정 계획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 구성(전문분야별 위원구성 및 배점)
  4. 설계심의 지원반 운영계획
  5. 심의진행 공개설명회 개최계획
  6. 소위원을 상대로 한 입찰업체 설계내용 공동설명회 계획
  7. 소위원의 현장답사 계획
  8. 소위원회의 기술검토 추진계획

9. 설계평가회의 개최계획
10. 설계심의결과 발표계획
11. 설계심의결과 이의제기 및 설명계획
12. 온라인 턴키 마당 사용방법 및 절차
13. 입찰참가자간 설계토론회 방법 및 절차
14. 배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

■ 입찰참가자간 설계토론회 운영방안 예시

1. 시행배경

- 설계평가회의시 공통 및 업체간 질의·답변이 제출된 답변서의 낭독·운영으로 답변의 진위여부 확인 어려움 등 심의 효율성 저하
- 따라서, 설계의 충분한 비교·검토, 진위여부 확인 등 심의내실화를 위해 입찰참가자 상호간 설계 내용을 토론하는 방안 시행

2. 토론회 운영방안

< 토론개요 >

- 토론방법 : 질의토론
- 토론시기 : 설계평가회의 당일 기존의 ‘공통 및 업체간 질의·답변’ 서면대체 및 활용
- 참석자 : 소위원장, 각 컨소시엄별 대표자(PM 및 분야별 담당자)
  - \* 전문분야별 고려 토목 6인, 건축 9인 운영
  - \*\* 토론시간 : 1회당 7 → 9분, 토론참석자는 입찰참가회사로 제한

< 토론진행 방법 >

- 진행(좌장) : 소위원장
- 토론참석 : 전체 3개 업체중 2개 업체씩 입장하여 토론
  - \* 심의위원은 참관만 하며, 업체 회의참여 순서는 심의계획 설명회시 결정
- 토론범위 : 심의위원 공통질의 + 업체간 질의 내용
- 토론시간 / 질의개수 : 1회 54분(총 3회 162분) / 상대 업체별 3개 질의
- 토론실시
  - 질의순서 : A, B업체 번갈아 질의(A질의→B질의→A→B→A→B)
  - 토론방법 : 각 질문건별로 질의 및 답변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질의 건당 최대8분)
  - ☞ A업체 질의(1분)→B업체 답변(2분)→A업체 추가질의(1분)→B업체 답변(3분)→A업체 마무리(2분)

- \* 추가질의는 선택사항, 질의성격의 답변은 지양
- \* 토론 소요시간(안) : 162분
- \* 토론 1회당 소요시간 : (2개 업체 × 3개 질의) × 9분(질의당 토론시간) = 54분
- \* 한 업체당 토론시간 : 상대업체별 27분 × 2회 = 54분
- \* 총 토론시간 : 54분 × 3회 = 162분
- \* 주제를 벗어나거나 상대방 비방 등 토론범위를 벗어날 경우 소위원장이 즉시 중단 및 해당업체 주의조치(심의위원 평가시 반영가능)
- \* 토론시간 초과시 즉시 중단
- \* 기술검토 회의를 기존보다 앞당겨(평가회의 5일전) 실시하고, 공통 및 업체간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설계평가회의 1일전 책자 및 파일(PDF)을 심의운영기관에 제출하면, 심의관리 시스템에 등재(심의위원 및 업체 열람)

### 3. 기타 적용방안

- 입찰자가 4개사 이상일 경우, 토론방법·장소·시간에 제약이 있으므로 별도 설계토론회 시행 후 서면 제출 등 각 심의기관별 특성에 따라 토론회 운영방안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 3-2 심의운영 지원반 구성 및 운영계획

- 소위원장은 심의진행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른 지원 인력을 산정 하여 심의요청 기관에 협조 요청
- 심의요청 기관은 심의 진행에 따른 소요인원을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을 소위원장과 협의하여 수립

### [심의지원반 운영]

#### - 범 위

심의계획 설명회, 공동 설계설명회, 현장답사, 기술검토회의, 설계평가회의 등 설계 심의 단계별로 진행되는 회의와 행사운영을 지원

- 구 성

내부 회의를 도울 진행요원, 회의장 출입을 제어 확인하는 통제요원 및 출입인원에 대한 동선 안내요원 등 회의나 행사의 규모에 따라 적정인원을 산출하여 심의요청 기관의 직원 등으로 구성

- 임 무

- 운영계획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
- 지원요원은 설계심의 관련사항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주어진 임무를 사전에 점검·확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지원요원은 소위원에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일체 할 수 없으며, 소위원이 평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각 지원요원 개인별 임무(생략)

### 3-3 소위원 심의비용(기술검토비, 여비 등) 소요자금 조달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 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는 단순한 위원회 참석이 아닌 설계도서의 검토 및 비교평가 등 고난도의 전문적 기술검토가 수반됨.
  - 따라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당·여비뿐만 아니라,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비 등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소위원에 대한 심의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참고하여 산정함.
  - 기술검토비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 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적용하되, 설계도서 검토시간과 현장방문, 설계평가 참석 등 실제 심의시간을 고려하여 적정비용 산정
  - 여 비 : 실비 지급을 기준으로 하되, 공무원 여비규정 등 관련규정 준용 가능
  - 기술검토비, 일비 및 교통비는 심의 종료 후 심의요청 기관에서 심의위원에게 직접 지급
  - 근거규정 : 건진법 시행령 제15조 1항(수당, 여비) 및 3항(기술검토비)
- 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심의요청기관이 부담

### 심의비용 산정기준(예시)

■ 입찰참가 업체가 4개사 이하일 경우

● 심의비용 : 여비 + 기술검토비

- 여비 :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지급

- 기술검토비 : [(검토일 \* 4/8) + 소집회의일수] \* 기술사 노임단가

$$6 * 4/8 * 367,654 + 5 * 367,654$$

$$1,102,962 + 1,838,270 = 2,941,232('19년 기준)$$

● 기술검토일 : 검토일 + 소집회의일

- 검토일 : 6일(소집회의 일, 일요일 제외, D-8~D-6, D-4~D-1)

- 소집회의일(일당 적용) : 현장답사, 공개설명회, 기술검토회의, 설계평가회의  
(D-9일), (D-9일), (D-5일), (D-0일~D+2일)

※ 심의 여건에 따라 설계평가회의 일수(2박3일) 조정이 가능하며, 특히 입찰참가자가 5개사 이상일 경우 평가회의 일수 연장 가능

## 제4절 심의위원 선정 및 공개

### 4-1 심의위원 선정 및 공개(심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조 6항 별표2 규정에 의거 설계심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이하 “소위원”)을 선정하고 홈페이지, 온라인 턴키 마당 등을 통해 공개
  - \* 공개내용 : 전문분야, 소속, 성명 등만 공개(개인정보 보호 원칙)

### 4-2 심의 추진시 주요 고려사항

- 소위원장은 설계심의운영 종합계획에 의거 심의 추진.
- 소위원장은 심의진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독립된 장소가 필요한 경우, 장소 선정과 진행을 위한 업무협조 등을 심의요청기관(발주청)에 요청 가능
  - 설계평가회의 개최 장소는 통신수단, 식사 및 음료제공,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숙박 및 평가기간 동안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회의실이 구비된 곳이어야 함
  - 집결 또는 이동 시간이 적고, 보안 유지에 유리한 곳으로 선정
- 심의요청 기관장은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심의요청 기관의 단계별 협의 및 행정지원 사항]

- 입찰공고일 이전
  - 전문분야별 평가항목 및 설계배점기준, 세부평가지표, 자료목록, 입찰서 목록, 감점기준
  -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서류 접수 및 관리단계
  - 입찰서류 보관 및 보안관리
  - 입찰서류 검토 및 감점사항 점검

- 발주청의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 운영요원 파견
- 설계도서 등 배포단계
  - 심의위원에 대한 설계도서 배포
  - 기술검토서 및 질문서 배포 및 작성방법 설명
- 사전 공동(설계)설명회, 현장답사 등 단계
  - 설명회 장소 선정, 설명회 필요 물품 및 장비 등 준비
  - 현장답사 일정, 차량 준비 등 일체
- 평가 사전단계
  - 평가운영지원반 구성 및 운영계획(심의기관과 협의)
  - 평가 장소 선정 및 예약
- 평가일
  - 평가 관련 물품 및 장비 등 일체 준비
  - 평가관련 설계도서 등 운반 및 회의장 운영준비
  - 발주청의 기술검토 보고
- 평가실시 이후
  - 평가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
- 소위원장은 소위원이 선정되면 즉시 설계심의 요청기관(발주청)으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소위원에게 배포 조치

## 제5절 공동설명회 및 현장답사

### 5-1 공동설명회(심의기관)

- 소위원 및 입찰참가자를 소집하여 심의진행 절차 및 협조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회의 개최
- 심의기관 : 입찰참가자가 소위원을 상대로 설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공동(설계)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
  - \* 소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징구
  - 설명 참여인원과 순서는 발주청과 입찰참가자간 협의에 의해 정함
  - 설명은 업체별 같은 시간으로 제한, 초과시 강제 중단(전원차단 등)
  - 문자, 도면, 사진(그림)에 한함(애니메이션, 동영상, 음향 등 불가)
  - 설명도중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인정사항 발견시 설명을 강제 중단(전원차단 등) 조치 후, 입찰참가자의 의견을 들어 설명 제한시간 잔여분을 구두로 설명하게 하거나, 타 입찰참가자의 설명이 끝난 후 즉시 삭제·수정토록 하고 잔여시간만큼 재설명
  - 입찰참가자 설계 설명 이후, 간단한 질문 및 답변
- 발주청 : 설명 자료에 운영규정 제34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금지 조치
  - 입찰참가자에게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 조치

### 5-2 현장답사(발주청)

- 소위원의 설계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답사를 시행하며, 심의요청기관(발주청)은 소위원을 상대로 현장설명 실시
  - \* 단,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동영상 등으로 대체 가능

## 제6절 소위원회 기술검토회의

### 6-1 기술검토 제출자료

- 공동설명회 및 현장답사 후 소위원, 발주청, 입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간내에 소위원장에게 제출함
  - 소위원 : 서식에 의한 기술검토서, 심의의견서, 공통질문서(평가회의 6~10일전)
  - 발주청 : 설계검토서(평가회의 6~10일전)
    -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도서 부합여부 등 설계도서 검토결과
    - 각 입찰업체가 제출한 입찰도서에 대하여 입찰안내서 제시(요구)내용의 위배여부, 최소 시설기준 미달 등 부적격한 설계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적 사항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사항 등의 검토내용 설명
    -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시에는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시 지적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
  - 입찰참가자 : 상대업체의 설계내용을 검토한 후, 서식에 의한 질문사항(평가회의 6~10일전)

### 6-2 기술검토 회의

-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를 소집하여 소위원의 기술검토서와 입찰업체의 질문서, 발주청 제출서류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정한지 여부를 설계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
  - 같은 날 설계평가회의의 운영방법·절차 등을 정한 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서(소위원 및 업체의 질문순서와 횟수, 질문 및 답변시간 등)에 대하여 적정한지를 심의하고, 필요시 설계평가회의 당일까지 발주청장, 심의위원, 입찰참가자가 협의하여 조정

### 6-3 기술검토 결과 통보

-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기술검토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공통질문서, 입찰참가자 질문서 및 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4일전까지 입찰참가자에게 통보
  - 발주청 검토서류에 대한 지적사항과 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서를 발주청에 통보하며, 발주청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설계평가회의시 제출

## 제7절 온라인 질의·답변

### 7-1 온라인 심의

- 입찰참가자의 음성적 로비 차단과 심의위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온라인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질의·응답과 설명기회를 보장하고 심의과정 상당 부분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문화 조성
- 설계 심의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 및 우수 설계·심의사례 공유

### 7-2 시스템 구축·관리

- 현행 건설 CALS\* 시스템에 “온라인 턴키 마당”을 구축하고 위원회 관리, 입찰방법심의 관리, 설계심의 관리 및 비리신고 센터로 구분 관리

\* 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수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와 관련업체 등이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공유하기 위한 정보화 체계

### 7-3 온라인 심의자료 등록

- 각 주체별 심의자료 등록
  - 심의기관 : 심의 관련자료 등록, 비리신고센터 운영
  - 발 주 청 : 설계도서 및 설계 검토서 등 등록
  - 입찰참가자 : 설계 및 추가 설명자료 등록

### 7-4 온라인 질의·답변

- 심의기관 : 입찰참가자간 질의서 등록
- 심의위원 : 설계 의문·궁금 사항 질의서 등록

- 발주청 : 심의위원 질의서 적정성 여부 검토
  - \*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참가자 열람 조치
- 입찰참가자 : 답변서 등록

## 제8절 설계평가 및 채점 등

### 8-1 설계평가회의 준비

- 소위원에게 설계도서, 소위원 기술검토서, 공통 및 입찰참가자 질문서, 입찰업체 답변서(설계의 보완 및 추가사항 포함), 발주청 기술(설계)검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공

### 8-2 설계평가회의 개최 등

- 설계평가회의 개최조건 성립여부 확인(소위원 및 입찰업체 참석여부 등)
- 설계평가회의 개최선언(소위원 정수의 2/3이상 참석(전문분야별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자의 출석으로 개최)
-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입찰업체의 답변순서 및 시간, 답변시간 초과시 제재방법 등 운영과 관련한 유의사항 전달
- 배점위원회 구성(일괄·대안입찰에 적용하되 필요시 기술제안입찰도 적용가능)
  - 소위원장을 배점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부득이한 경우 간사), 발주청 대표 1인, 입찰참여업체 대표 각 1인이 참여하는 배점위원회 구성·운영
  - 각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은 발주청 및 입찰업체에서 설계심의 설명회 시 밀봉하여 제출하고 심의기관에서는 설계평가회의까지 보관
  -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은 설계평가회의 당일 발주청 및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세부평가지표별 순위를 토대로 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세부배점을 결정

○ 세부평가지표 배점 산정식

$$\text{세부배점} = \frac{(\text{평가지표의 배점} \times \text{배점위원별 세부평가지표(a) 점수의 합})}{(\text{모든 배점위원별 세부평가지표 점수의 합})}$$

\* 세부평가지표 배점은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배점의 합이 평가항목 배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는 세부평가지표 배점이 가장 낮은 지표(동점이 있는 경우 목차 후 순위) 배점에서 감하고, 작은 경우는 세부평가지표 배점이 가장 높은 지표(동점이 있는 경우 목차 선 순위) 배점에 가한다.

○ 세부평가지표 배점 산정 예)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세부 배점	세부 항목 수	배점위원회 가중치(입력)			가중치 합계	항목별 가중치 합계	비중	세부 배점 합계
				○○ 건설	○○ 건설	발주청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5점)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0.83	3	1	1	1	3	18	1/6	5.00
	• 측량, 골재원, 지반조사 및 지장물 등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1.67		2	2	2	6		1/3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기준 등	2.50		3	3	3	9		1/2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8점)	• 평면 및 종단 선형의 조화성	4.00	3	3	3	3	9	18	1/2	8.00
	• 절토 및 성토의 균형	1.33		1	1	1	3		1/6	
	• 용지편입, 민원발생 최소화 등	2.67		2	2	2	6		1/3	
포장 및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6점)	• 포장단면 및 형식, 평탄성 확보 등	1.80	4	3	3	3	9	30	3/10	6.00
	• 교통안전을 고려한 노면배수 용이성	2.40		4	4	4	12		2/5	
	•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시설 규격의 적정성	1.20		2	2	2	6		1/5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	0.60		1	1	1	3		1/10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세부 배점	세부 항목 수	배점위원회 가중치(입력)			가중치 합계	항목별 가중치 합계	비중	세부 배점 합계
				○○ 건설	○○ 건설	발주청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5점)	• 구조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0.83	3	1	1	1	3	18	1/6	5.00
	• 구조물의 독창성, 조형미 등	1.67		2	2	2	6		1/3	
	• 경관시설 도입의 적정성	2.50		3	3	3	9		1/2	
스마트 건설기술 (신기술· 신공법 포함) 도입의 적정성 (3점)	• 스마트 건설자동화,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2.00	2	2	2	2	6	9	2/3	3.00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1.00		1	1	1	3		1/3	
계		27.00								27.00

\* 배점위원은 각 평가지표별 세부평가지표의 개수를 최대값으로 하고 각 세부평가지표에 배점을 부여(예: 세부평가지표가 5개일 경우, 5,4,3,2,1로 배점)

\* 배점은 자연수로 하며 동 배점은 없고, 최대값부터 1씩 감하여 최소값이 1이 되도록 하고 숫자가 클수록 높은 배점임

● 발주청의 설계내용 검토서 제출

- 발주청은 소위원회 기술검토 내용을 반영한 설계검토서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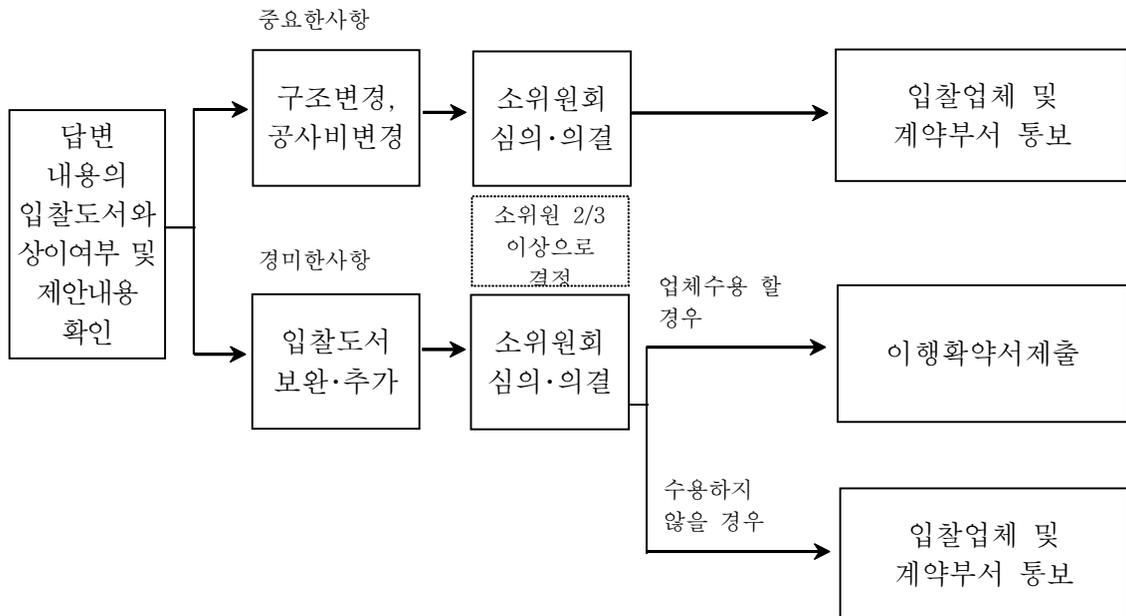
- 운영규정 제34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여부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위원들의 평가(채점)가 끝난 후 소위원회에 제출

● 소위원 심의

- 소위원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입찰업체 질의 내용 검토

-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 입찰업체 질문사항과 답변내용
-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 기타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 소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질문 및 답변사항을 전문분야 그룹별로 내용을 검토, 입찰업체에게 질의할 건수와 내용 확정 가능
  - 소위원의 질문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답변서
  - 상대입찰업체의 질문 및 입찰참가자의 답변서
- 소위원은 입찰참가자의 답변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거나 입찰시 제출한 설계를 보완·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제안내용의 처리의견 및 수용여부 결정
  - 입찰참가자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먼저 당해분야 소위원이 입찰도서와의 상이여부와 입찰시 제출한 설계를 보완·추가하고자 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
  - 당초와 상이하거나 보완 할 내용이 구조의 변경 또는 공사비 변경을 수반하는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의견을 당해 입찰참가자, 계약부서,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시 발주청은 의견 제출 가능
  - 당초와 상이하거나 보완 할 내용이 단순히 입찰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용시에는 사전에 보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징구하고, 입찰참가자가 이행확약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업체, 계약부서에 통보



### 8-3 설계토론회 개최 등

- (소위원 및 업체간 질문·답변) 소위원장은 소위원 및 입찰참가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전문분야의 연장자 순 또는 이름 가나다 순 등)에 따라 소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소위원 및 입찰업체의 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됨
  - \* 업체간 설계토론회를 실시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여 생략 가능
- (업체간 토론회) 소위원장은 토론 방법을 사전 고지한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간 토론을 진행 하고, 토론 주제는 사전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 (보충·추가질문) 소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자의 제안·질문·답변내용 및 입찰참가자간 설계토론회 개최결과와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소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 소위원장은 위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참가자간 질문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소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
  - 입찰참가자의 전문분야별 기술자의 답변 청취
  - 입찰참가자의 답변이 끝나면 퇴장조치
  - \* 입찰업체 전문분야 답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귀가조치
- 입찰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이 끝나면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소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간 토론회 필히 시행

### 8-4 설계평가 및 채점 등

#### ○ 소위원의 등수 결정 및 채점 절차

① 업체별 채점(등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위원은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후 결과를 순위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수기입 불가, 중복순위 불가, 자연수로만 기입</li> </ul> </li> <li>■ 등수(순위) 결정후 채점표(등수표) 양식에 사인한 뒤 수정 불가</li> </ul>
② 등수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위원이 결정한 등수의 입력 및 출력</li> </ul>
③ 업체별 채점(등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위원은 본인이 결정한 업체별 채점(등수)를 옮겨 입력한 컴퓨터파일(혹은 프로 그래)에 입력된 채점(등수)값이 소위원이 결정한 채점(등수)와 차이 없음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위원 전원이 채점(등수)를 확인한 뒤 밀봉되었던 배점표 개봉</li> </ul> </li> </ul>
④ 위원별 점수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위원은 확인된 채점(순위)표와 배점을 반영한 최종 점수표를 출력하여 업체별 최종 점수표에 반드시 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수(순위)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배제</li> </ul> </li> </ul>

- 소위원장은 소위원만 소집하여 평가사유서 작성방법, 점수채점방법 등 설계평가에 필요한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평가토록 함
  - 소위원은 발주청장이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심의당일 소위원장이 배포한 「설계 평가지표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함
    - 소위원은 자신이 입력한 업체의 등수를 최종점수 입력 전에 확인해야 함
    - (가중치 기준방식) 차등폭은 기술과 가격 비중에 따라 차등방법 구분, 차등폭은 업체수와 관계없이 고정
      - \* 항목별 10%, 위원별 10%, 총점 7%(발주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평가방식 및 차등폭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터키공사 기술적 난이도에 따른 가격경쟁유도(고가투찰 방지)를 위해 설계점수 채점 시 차등 평가 폭 탄력적 운용
- 국토교통부 평가방법(2016.3) : 총점차등 적용대상 확대(기술70%→60%)

기술 : 가격	차등방법
70% : 30% 60% : 40%	항목별(10%), 위원별(10%) 차등 후 총점차등(7%) * 기술vs가격 60%vs40%는 총점차등 폭 5% 적용  (단, 항목별, 위원별 차등 후 합산한 점수차가 총점차등폭 이상인 경우 합산 점수차를 그대로 적용)
그 외 (기술비중 60%미만)	항목별차등(10%) 후 위원별차등(10%)

- 기타 가중치 기준방식 외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한 경우, 업체수와 관계없이 항목별 차등 (10%) 후 위원별 차등(10%)

○ 총점차등 적용 예시(3개업체 참여, 항목별10%, 위원별10%, 총점 7% 차등)

평가항목			배점	A 사	B 사	C 사	차등폭
1. 도로 및 교통(40점)	1.1 평가항목 (10점)	1.1.1 세부항목	3	3.0	2.7	2.4	0.3
		1.1.2 세부항목	3	2.7	3	2.4	0.3
		1.1.3 세부항목	4	4	3.2	3.6	0.4
	1.2 평가항목 (15점)	1.2.1 세부항목	5	5	4.5	4	0.5
		1.2.2 세부항목	5	5	4	4.5	0.5
		1.2.3 세부항목	5	4.5	5	4	0.5
	1.3 평가항목 (7점)	1.3.1 세부항목	2	2	1.8	1.6	0.2
		1.3.2 세부항목	2	2	1.6	1.8	0.2
		1.3.3 세부항목	3	2.7	3	2.4	0.3
	1.4 평가항목 (8점)	1.4.1 세부항목	1	1	0.8	0.9	0.1
		1.4.2 세부항목	4	3.6	4	3.2	0.4
		1.4.3 세부항목	3	3	2.4	2.7	0.3
계			40	38.5	36.0	33.5	
도로분야 위원 차등			40	38.5	34.5	30.5	4.0

평가항목			배점	A 사	B 사	C 사	차등폭
2. 토목구조 (30점)	2.1 평가항목 (10점)	2.1.1 세부항목	3	2.7	3	2.4	0.3
		2.1.2 세부항목	4	4	3.6	3.2	0.4
		2.1.3 세부항목	3	2.4	3	2.7	0.3
	2.2 평가항목 (8점)	2.2.1 세부항목	1	0.9	1	0.8	0.1
		2.2.2 세부항목	4	4	3.6	3.2	0.4
		2.2.3 세부항목	3	2.7	3	2.4	0.3
	2.3 평가항목 (7점)	2.3.1 세부항목	1	0.9	1	0.8	0.1
		2.3.2 세부항목	1	0.9	1	0.8	0.1
		2.3.3 세부항목	5	4	4.5	5	0.5
	2.4 평가항목 (5점)	2.4.1 세부항목	2	2	1.8	1.6	0.2
		2.4.2 세부항목	2	1.8	2	1.6	0.2
		2.4.3 세부항목	1	0.8	1	0.9	0.1
계			30	27.1	28.5	25.4	
구조분야위원 차등			30	25.5	28.5	22.5	3.0

평가항목		배점	A 사	B 사	C 사	차등폭	
3. 토목시공 (20점)	3.1 평가항목 (8점)	3.1.1 세부항목	1	0.9	1	0.8	0.1
		3.1.2 세부항목	2	1.8	2	1.6	0.2
		3.1.3 세부항목	5	4.5	5	4	0.5
	3.2 평가항목 (4점)	3.2.1 세부항목	1	1	0.9	0.8	0.1
		3.2.2 세부항목	1	1	0.9	0.8	0.1
		3.2.3 세부항목	2	1.8	2	1.6	0.2
	3.3 평가항목 (6점)	3.3.1 세부항목	2	1.8	2	1.6	0.2
		3.3.2 세부항목	2	1.8	2	1.6	0.2
		3.3.3 세부항목	2	1.8	2	1.6	0.2
	3.4 평가항목 (2점)	3.4.1 세부항목	1	0.9	1	0.8	0.1
		3.4.2 세부항목	0.5	0.45	0.5	0.4	0.05
		3.4.3 세부항목	0.5	0.45	0.5	0.4	0.05
계		20	18.20	19.8	16.0		
시공분야위원 차등		20	17.8	19.8	15.8	2.0	

평가항목		배점	A 사	B 사	C 사	차등폭	
4. 조경·환경 (10점)	4.1 평가항목 (3점)	4.1.1 세부항목	1	0.8	0.9	1	0.1
		4.1.2 세부항목	1.5	1.35	1.2	1.5	0.15
		4.1.3 세부항목	0.5	0.5	0.45	0.4	0.05
	4.2 평가항목 (3점)	4.2.1 세부항목	2	1.6	2	1.8	0.2
		4.2.2 세부항목	0.6	0.6	0.54	0.48	0.06
		4.2.3 세부항목	0.4	0.32	0.36	0.4	0.04
	4.3 평가항목 (2점)	4.3.1 세부항목	1	0.9	1	0.8	0.1
		4.3.2 세부항목	0.7	0.56	0.63	0.7	0.07
		4.3.3 세부항목	0.3	0.3	0.24	0.27	0.03
	4.4 평가항목 (2점)	4.4.1 세부항목	0.7	0.7	0.63	0.56	0.07
		4.4.2 세부항목	0.8	0.64	0.8	0.72	0.08
		4.4.3 세부항목	0.5	0.45	0.4	0.5	0.05
계		10	8.72	9.15	9.13		
환경분야 위원 차등		10	7.15	9.15	8.15	1.0	

평가항목	배점	A사	B사	C사	차등폭
도로분야 위원 차등	40	38.5	34.5	30.5	4.0
구조분야 위원 차등	30	25.5	28.5	22.5	3.0
시공분야 위원 차등	20	17.8	19.8	15.8	2.0
환경분야 위원 차등	10	7.15	9.15	8.15	1.0
계	100	88.95	91.95	76.95	

↓ (총점차등 적용)

	업체	점수	총점차등	차등폭 결정	최종점수	비고
1위	B사	91.95	91.95	-	91.95	
2위	A사	88.95	84.95	3.0 < 7 → 7	84.95	
3위	C사	76.95	77.95	12.0 > 7 → 12.0	76.95	

○ 항목별 차등평가 : 항목별 차등률을 10%로 정하였을 경우

○○분야, ○○○위원

평가항목	배점	A사	B사	C사	비고 (차등점수)
가. 기초자료 조사·계획 검토	2	1.8	1.6	2.0	0.2
나. 계획의 적정성	2	2.0	1.8	1.6	0.2
다. 수리·수문 분석	2	1.6	2.0	1.8	0.2
라. 보	12	12.0	10.8	9.6	1.2
마. 준설	6	6.0	4.8	5.4	0.6
바. 친환경 하천정비	6	4.8	6.0	5.4	0.6
계	30	28.2	27	25.8	

○ 위원별 차등평가 : 위원별 차등률을 10%로 정하였을 경우

○○분야, ○○○위원

평가항목	배점	A사	B사	C사	비고 (차등점수)
가. 기초자료 조사·계획 검토	2	1.8	1.6	2.0	항목 차등
나. 계획의 적정성	2	2.0	1.8	1.6	
다. 수리·수문 분석	2	1.6	2.0	1.8	
라. 보	12	11.6	10.4	9.2	
마. 준설	6	6.0	6.0	5.4	
바. 친환경 하천정비	6	6.0	5.4	4.8	
계	30	29	27.2	24.8	
위원별 평가점수(1안)	30	29.0	26.0	23.0	위원차등
위원별 평가점수(2안)	30	30.0	27.0	24.0	위원차등

※ 발주기관 특성에 따라 위원별 평가점수 1안 또는 2안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소위원은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와 설계평가회의 질문 및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설계점수를 채점해야 함
  -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참가자간 질문사항 및 답변
  - 설계평가회의(소위원 및 입찰참가자간의 질의·답변)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 온라인 턴키 마당 등록자료
  - 입찰참가자간 설계토론회 참관결과
  - 전문분야별 소위원간 토론회 실시결과
  - 기타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 소위원은 설계채점과 더불어 평가사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소위원장은 평가항목별로 업체간 점수 차이에 대한 근거를 적시 하도록 사전에 소위원에게 주지
- 발주청은 입찰참가자의 수와 공사여건을 감안 소위원이 평가사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충분히 적시할 수 있도록 준비  
(쪽수번호는 1/7면 또는 7쪽 중 1쪽 등으로 표시)

[전문분야별 설계평가 사유서(예시)]

● 안전명 :

도로전문분야에 대한 평가사유서
<p>1. 도로노선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사는 ----- 등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경제적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타사의 계획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며,</li> <li>- B사는-----</li> </ul> <p>2. 종단선형부분</p> <p><input type="checkbox"/> 종합평가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사는 -----보아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였고,</li> <li>- B사는 -----사유로 2위로 평가하고,</li> <li>- C사는 -----사유로 3위로 평가하였음.</li> </ul>
<p>소위원 : ○ ○ ○ 서명</p>

● 설계점수 채점방법

- 설계점수 채점은 전문분야별로 시행하고,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
- 전문분야별 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집계, 산술평균하여 산출
- 업체별 점수는 채점 총괄표에 전문분야별 점수를 이기하여 총점을 산출

[위원별·전문분야별 평가표 예시(3개 업체, 10% 차등 적용시)]

◆ 토목시공분야 ○○○위원

평가항목	배점	A사	B사	C사	차등폭
1.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5	4.80	4.30	3.80	0.5
2.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4	3.70	2.90	3.30	0.4
3.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3	2.20	2.50	2.80	0.3
4.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3	2.40	3.00	2.70	0.3
5. 예상 민원처리계획의 적정성	2	1.50	1.70	1.90	0.2
6.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2	2.00	1.80	1.60	0.2
7. 공사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1	0.95	0.85	0.75	0.1
<b>항목별 차등평가 계</b>	<b>20</b>	<b>17.55</b>	<b>17.05</b>	<b>16.85</b>	<b>-</b>
<b>항목별 + 위원별 차등평가 계</b>	<b>20</b>	<b>17.55</b>	<b>15.55</b>	<b>13.55</b>	<b>2.0</b>

● 전문분야별 점수 집계

[전문분야별 평가점수 집계표 ( 분야)]

구분	배점	○○○공사명				비고
		A사	B사	C사	D사	
○○○위원						
○○○위원						
○○○위원						
계						
평균						

● 발주청이 검토 작성한 감점사항 반영(기타감점 반영)

- 설계도서의 고급용지 사용 등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입찰참가자간에 공평한 조건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찰안내서에서 공고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 감점의 적용은 감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점수의 합계를 「위원별·입찰참가자별 총점 집계표」의 합계(전문분야별 평균 점수의 합)를 총점차등 한 후에 적용
- 발주청장은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하는 경우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 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 공고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
-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범위를 정하되 운영규정 제27조 제3항, 제34조, 제39조 제2항과 관련한 감점한도는 총 감점 한도는 3점 이내로 정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발주청장은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점에 대하여는 전항과는 별도로 운영규정 별표10의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 감점 함
-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27조 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 관리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에서는 평가시 감점사항을 중앙위원회(온라인 터키 마당)에 확인해야 함.
  - 심의대상 공사에 비리·감점 적용시,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설계평가 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함

### [심의관련 비리감점]

####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 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 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 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2. 적용방법

- 가.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 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나.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함.
- 다.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함.
- 라. 제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함.
- 마.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함.
- 바.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건설기술심의 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함.
- 사.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함.

-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산정

[업체별 설계평가점수 총괄집계표(예시)]

전 문 분 야 별	배 점	0 0 0 공사명				비 고
		A사	B사	C사	D사	
도로						
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환경						
조경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계	100.0					
비리감점						
계						
총계(총점차등 후)						
기타감점	100.0					
종합 평가점수						
순 위						

위 총점 집계표는 소위원별 채점표와 일치함을 서명합니다.

작성자 :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 소위원장은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설계적격, 대안채택 등 심의의결)

## 제9절 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 9-1 평가결과 공개

- 심의기관은 심의 시작전 소위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혀 공정한 평가 유도
- 소위원장은 위원 및 입찰참가자 대리인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
  - \* 발표내용 : 설계(제안서) 적격여부, 대안 채택여부, 입찰참가자별 점수
  - \*\* 공개내용 : 입찰참가자별 전문분야 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입찰참가자별 세부감점내용

### 9-2 설계평가회의 폐회

- 소위원장은 결과 공개 후 설계평가회의를 폐회
-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의기관에 Debriefing 요청가능, 심의기관은 서면요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Debriefing를 실시

#### □ 해명시 포함해서는 안 되는 내용

- 
- 다른 제안서들과 입찰자 제안서의 항목별 비교
  - 거래처 비밀
  - 특권이 있거나 비밀인 기술
  - 가격분석, 이윤, 직접비 비율 그리고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는 특권이 있거나 비밀인 재정정보
  - 입찰자의 과거 수행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의 이름
  - 제3자 정보제공에 저촉되는 개인정보 등
- 

- 소위원장은 3일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해명이 끝나면 소위원회를 종료

## 제10절 심의 후속단계

### 10-1 심의결과 통보

- 소위원장은 낙찰자 결정 등의 행정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요청 기관에 심의결과와 위원별 심의의견 통보 조치
- 심의기관은 심의·평가에 소요되는 행사비용과 위원별 기술검토비 등을 심의요청 기관에 지급 요청

### 10-2 평가내용 공개

- 심의기관은 3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해명이 끝나면 평가집계표, 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세부 감점내용 등을 홈페이지, 온라인 토크 마당 등에 15일간 공개



# 설계심의 · 운영 특별규정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제1절 설계심의 분과위원 관리

제2절 설계심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 강화

제3절 비리·감점관련 업무처리 절차



## Ⅲ. 설계심의·운영 특별규정

### 제1절 설계심의 분과위원 관리

#### 1-1 상시 관리체계 유지

- 분과위원의 공정성과 청렴수준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정기 워크숍·간담회를 개최하여 윤리의식을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함
  - 연 2회(상/하반기)이상 전체 분과위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워크숍·간담회를 개최, 심의경험 토론 및 청렴노하우 공유
- 설, 추석, 연말 등 청렴 취약시기(연 4회)에 장·차관님 등의 명의로 윤리행동강령 준수요청 서한 발송 등 다각적인 조치
  - 입찰공고 이후 심의대상 사업의 개요 및 사전심사신청 업체현황 안내 (전체위원 대상, 심의 2~4개월전)
  - 입찰 이후 개략의 심의일정 및 입찰참가업체 현황 안내 (전체위원 대상, 심의 1개월전)
  - 심의종료 후 결과에 대한 업체반응 등 특이사항 안내 (전체위원 대상, 심의종료 후 2주 이내)

#### 1-2 윤리행동강령에 의한 위원 청렴관리

- 분과위원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 강령의 교육·상담,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이권개입, 금전차용 및 알선·청탁 등 행동강령 준수여부 확인

-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점검 실시 등
-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에게 보고

### 1-3 소위원 맞춤형 관리

- 소위원 명단 확정공개와 동시에 분과위원장 명의로 투명하고 건전한 심의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한 발송
  - 발주기관 또한 입찰참가자에게 성숙한 심의문화 정착 및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
- 공동설명회 등 위원 소집시 소위원 및 입찰참가자에게 행동강령 준수를 강조하고 청렴서약서, 보안각서 등을 징구
  - 선정된 소위원에게 입찰참가자 현황과 심의일정을 정리, 재고지하여 건전한 심의문화 사전 유도 (최종심의 10일전)
  - 최종 설계평가회의장 입장시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자에게 사전설명여부 확인서 및 심의위원 미접촉 확인서 징구

### 1-4 유관기관 및 감찰팀과 공조체계 구축

- 중앙위, 지방위, 특별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등으로 설계심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 각 발주기관과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분기별)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개선된 제도 정착 및 발전방안 등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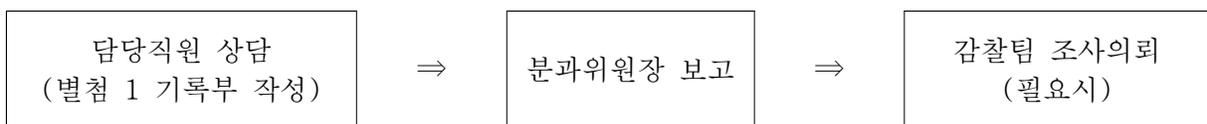
#### [주요 협의내용]

- 심의분과위원 구성 및 운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심의운영사례 공유 및 제도 발전방안 토의
  - 행동강령 위반 위원 제척 및 비위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토의 등
- 매건 심의시 선정된 소위원 명단, 입찰참가업체 현황 및 심의진행 상황을 감찰팀에 수시 통보하여 특별감찰 협조

- 국내 건설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전한 심의제도 정착과 공정한 경쟁 당부
  -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특별 감찰계획, 위원접촉 및 사전설명 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 설명
  -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에 개선된 심의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도록 독려

### 1-5 윤리성 확보 및 저해시 조치방안

- 부패발생 방지를 위한 청렴·윤리교육 시행 및 윤리각서(청렴서약서) 징구
    -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 준수 고지
  - 심의위원 등의 신고·상담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담 및 신고전화 24시간 개방 운영(야간은 핸드폰 전환)
    - 업체의 접촉시도에 따른 심의위원 상담신청과 경쟁업체 등의 신고사항 접수
  - 업체의 심의위원 접촉사례, 심의위원의 윤리행동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방안
    - 업체의 사전설명 금지위배 등은 평가시 감점 (감점기준)
    - 금품·향응 제공 등 윤리행동강령 위반사항은 감찰팀에 조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위원 해촉 등 조치
- ※ 발주청 입찰안내서 작성시 윤리행동강령 위반을 조장하는 행위시 특별감찰, 고발 등 불이익 조치계획을 명기토록 협의



① 단순한 사전설명 행위 등은 해당업체 감점

\* 해당 심의위원은 사전설명 불가피성 등을 판단하여 해촉여부 결정

②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감찰팀에 조사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건진법 제84조에 따라 공무원 의제 처리)

③ 비위행위 업체에 대하여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부정당 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요구

\* 신고자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 별첨 2)에 따라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내용에 따라 장관표창 또는 국민권익위 포상 등 추진

- 분과위원의 윤리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를 정기적(연 1회)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기록관리

\* 휴가철, 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필요시 수시 점검 실시

### 1-6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고취

- 연 2회(상/하반기) 감사관 또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기술안전정책관)의 반부패·청렴 교육 또는 상담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및 우리부 반부패·청렴 교육자료 등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 등 실시

### 1-7 심의 공정성 강화

- 발주기관 별로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적 평가 실시

- 심의위원 평가를 의무화하여 위원별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 중간평가 결과는 위원 연임여부 판정 등에 활용

※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건진법 제84조)

중앙위원회(지방위, 특별위, 설계자문위)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관련 조항]

○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0조(제3자 뇌물 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 수뢰)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2절 설계심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강화

### 2-1 투명성 강화

- 심의·평가를 전담하는 분과위원을 소수 정예로 구성하고 사전 명단 공개
-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탈락자 해명 요구시 Debriefing 실시
- 설계평가회의는 회의장소 등 각 기관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관계자 참관, CCTV 영상 등 공개여부 결정

### 2-2 심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 설계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지방위, 특별위, 설계자문위)내에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분과위원에 발주청 소속직원 과반수 참여와 민간 심의위원 비리발생시 공무원 의제 처벌을 통해 심의위원 책임성 강화
- 심의위원과 입찰업체와의 사전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일 10일 전에 소위원 선정 공개
- 심의위원의 설계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설명 및 답사를 시행하고 전문분야만 평가

### 2-3 참여기술인 근로관리

- 발주청은 적합한 설계기간을 검토하여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를 방지하고, 이행여부 상시 관리 필요
- \* 발주청은 고강도 근로 점검을 통해 기타감점 범위내에서 벌점 부과 가능

### 제3절 비리·감점관련 업무처리 절차

#### 3-1 입찰업체 감점행위시 감점부과 기준

- 필요성 : 턴키·대안·기술제안 입찰시 시공사와 설계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가
- \* 턴키,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 시공사+설계사 / 실시설계기술제안 : 시공사
  - 이들 컨소시엄 중, 일부 업체에게 비리 등으로 인한 감점부과시 컨소시엄내 타업체에 대한 감점부과 등 세부내용 규정 필요

[비리감점(운영규정 별표10)]

#### ■ 적용기준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 적용방법

- 가.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나.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함.

- 다.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함.
- 라. 비리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함.
- 마.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함.
- 바.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함.
- 사.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 감점 적용방법

- 가.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른 위원회의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 감점기간 등은 감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함.
-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다.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함.
- 라.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함.

#### ■ 감점취소

- 가. 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나.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함.

- (감점계산) 컨소시엄별 감점은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
-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며,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 “예” : 사전접촉 2건 적발시 감점 6점 부과

※ 타 심의기관의 비리·감점사항을 적용하고 온라인 툰키 마당에서 확인 가능

※ 심의대상 공사 적용방법 :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 모두 적용

### 3-2 감점행위 신고시 처리절차

- 필요성

- 부정·비리 등 신고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속하고 공정한 후속조치 이행 필요

- 주요내용

- 신고 대상 : 심의와 관련된 모든 부정·비리 등 감점행위

- 적용기준

-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방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신고접수 : 심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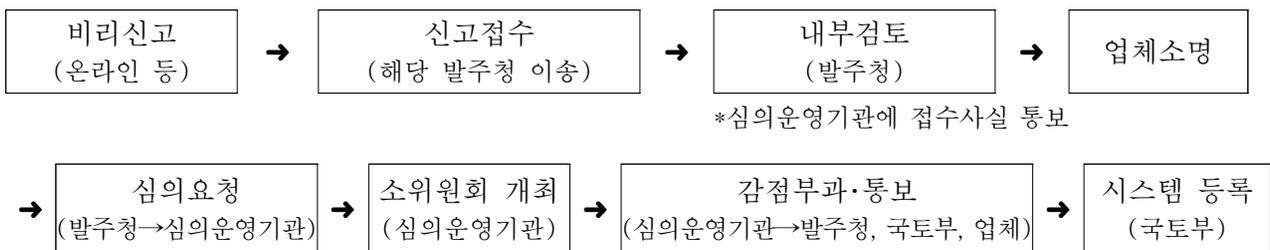
- \* 발주청에서 접수시 심의기관에 통보하며, 타 심의기관 관련 안건에 대한 접수시 해당 심의기관으로 이송

- 신고방법 : 방문, 온라인 심의시스템, 방문, 팩스 등

- \* 신고자가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할 경우 신고자 요청으로 직접 방문

- \*\* 비리신고는 기명의 문서로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 불가

- 부정·비리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 발주청 : 비리신고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내부검토), 업체소명, 심의운영기관에 감점부과를 위한 심의요청

- \* 타기관, 온라인 등으로 비리내용 접수시 해당 발주청에 이송하여 처리하며, 발주청에서는 비리신고 접수사실을 해당안건 심의운영기관에 통보

- \* 내부검토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보완필요 여부 검토
  - 익명신고 및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실명확인이 어렵거나, 증빙서류 미비 등 신고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신고서 보완요구 및 반려조치
- 심의운영기관 : 감점부과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상정
- 비리감점부과 소위원회 개최로 심의절차를 단일화
  
- \* 비리감점부과 소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안(중앙위)
  - 소위원장 : 기술안전정책관
  - 위원 : 중앙위 위원 6명(민간위원 3명 포함)
  - 의결내용 : 감점부과 여부 및 부과기간 등
  - 의결기준 : 과반이상 참석, 과반이상 찬성으로 의결(의결결과 동수일 경우 소위원장이 결정)
  
- 입찰업체 소명기간 연장기준 명확화
  - 업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회(5일, 제출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한하여 소명기간 연장
  
- 필요시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 조사의뢰(담합신고 등)
  - \*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보호하며, 신변보호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의 부패·공익신고 유도

[설계심의 비리사실 등 신고서]

신 고 서

신 고 자	성 명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회 사 명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신고취지 및 이유				
증거서류				
비 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비리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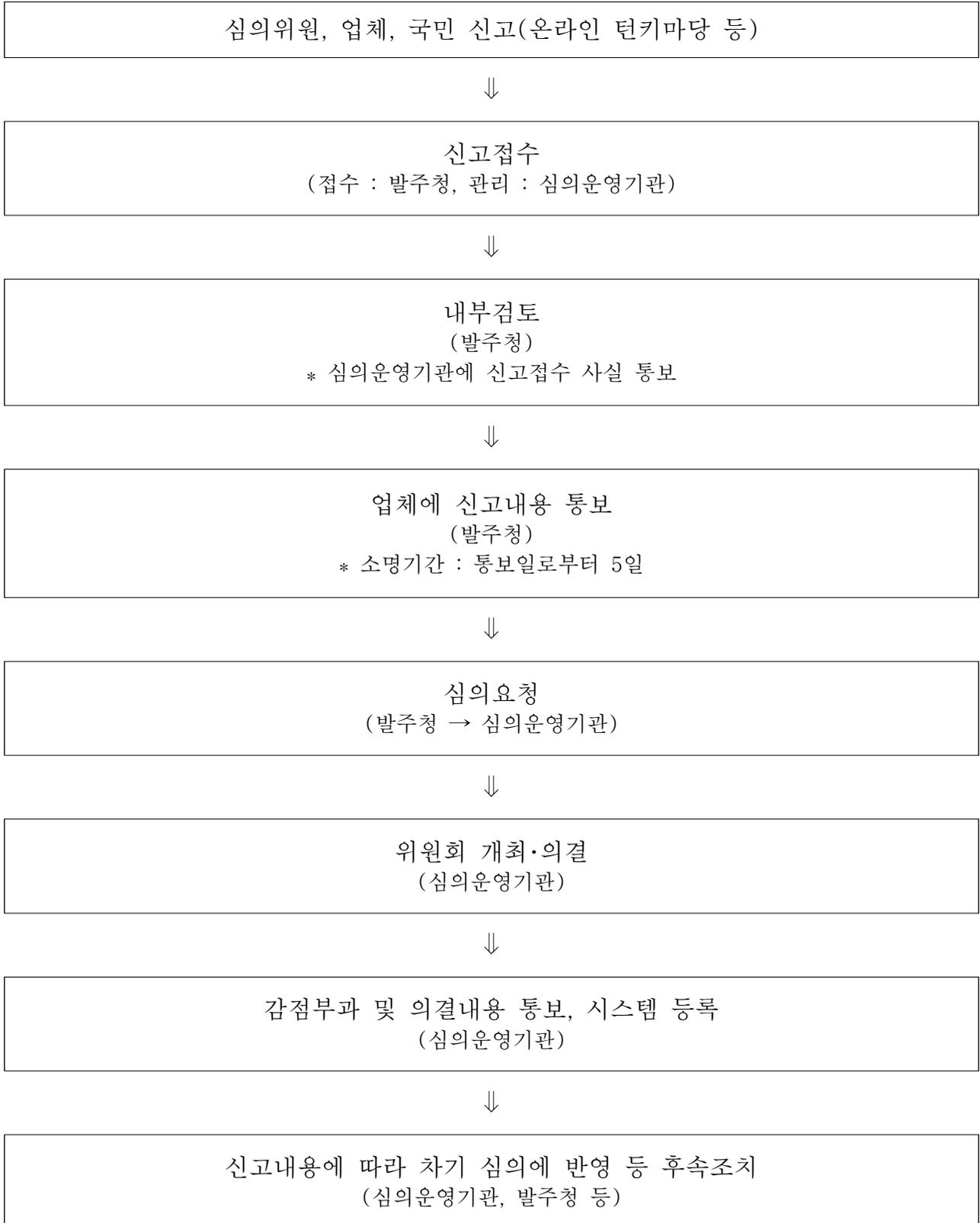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000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피신고자(신고대상) 및 신고내용을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의 실명확인이 어렵거나 증빙서류 불충분 등 신고내용 사실확인이 어려울 경우 신고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1

비리감점 신고시 처리절차



참고 2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 요청서

##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

건 명	
-----	--

심의요청인	
제출연월일	

## < 건 명 >

###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총공사비 :

### 2. 추진경위

- 턴키 등 기술형입찰 발주 및 심의 완료시까지 주요일정 등 작성
- 

### 3. 비리신고 내용

- 신고접수일 :
- 신고대상 :
- 신고내용 :

### 4. 발주청(기관) 검토내용

- 사실여부 확인내용

발주청에서 신고서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 조사내용을 작성

- 검토결과 : 비리감점 대상 여부 및 부과감점·감점기간 작성

### 5. 기타 참고사항

신고서 원본(신고자 인적사항은 제외),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참여업체 현황 및 접수 등 참고사항

참고 3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의견서 양식

## 심 의 의 견 서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건명	심의요청 기관	심의대상 업체	비리신고내용	감점부과	
				심의요청	심의의결
				10점(2년)	

<심의 검토의견>

20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참고 4**      설계심의 비리감점 부과내용 통보양식

## 설 계 심 의 비 리 감 점 부 과 내 용

감점대상 업체	업체명		사업자번호	
업체소명 기간	~			
감점부과 심의	위원회		심의날짜	
비리감점 내용	관련 심의안건명		심의기간	
	< 내용작성 >			
부과감점	점			
감점 관리기간	~			

### 3-3 심의 참여위원 용역 등 의뢰신고 및 확인

- 필요성

- 운영규정에 따라 낙찰업체(컨소시엄 전체)에서 심의후 1년 이내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할 경우 심의기관에게 사전신고토록 함

[비리감점(운영규정 별표10)]

-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 심의계획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신고방법을 입찰업체에 설명 및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신고접수 및 처리

- 주요내용

- (사전신고) 낙찰업체에서는 해당 사전신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위원이 속한 심의 기관에 신고

- \* 신고방법(안)

- 신고대상 : 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용역, 연구, 자문 등
- 신고업체 : 낙찰업체(컨소시엄 구성 업체 모두)
- 신고(접수)기관 :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기관
- 신고양식 : 붙임 양식 참조(온라인 심의관리시스템에 등재)
- 신고시기 : 용역 등 의뢰(계약)시

- (신고관리) 사전신고를 접수한 심의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중앙위에 보고하고, 중앙위에서는 설계심의 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심의시 위반여부 확인) 설계평가회의시 입찰업체로 하여금 사전신고 실적 및 위반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내용을 제출토록 함

- (감점신고) 사전미신고 등 훈령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사항 신고 접수시 “감점행위 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심의위원 용역 등 의뢰 사전신고 양식]

### 용역등 의뢰 사전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관련 심의안건	안전명			
	심의기관		심의기간	~
	낙찰자 선정일			
	낙찰사 (컨소시엄)			
의뢰대상 (심의위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사전신고 내용	의뢰내용 (용역명 등)			
	의뢰기간	0000.00.00~0000.00.00		
비 고				

위와 같이 심의위원에 대한 용역 등 의뢰계획을 사전에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업체 대표 (인 또는 서명)

000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심의위원 용역 등 의뢰 사전신고 위반사항 신고 (업체용)]

용역 등 의뢰 사전신고 위반사항 확인서

업체명	위반사항 유,무 (○표시)	있음, 없음		
위반내용*	관련 심의안건명			
	심의기관		심의기간	~
	의뢰대상 (심의위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의뢰내용			

\* “위반내용”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위와 같이 심의위원에 대한 용역 등 의뢰 사전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위 신고업체 대표 (인 또는 서명)

000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3-4 감점내용 수집 방법 및 절차 양식

- 필요성

- 운영규정에 따라 모든 심의기관의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기 위한 절차, 신고양식 등을 규정할 필요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5조(금지행위 및 감점)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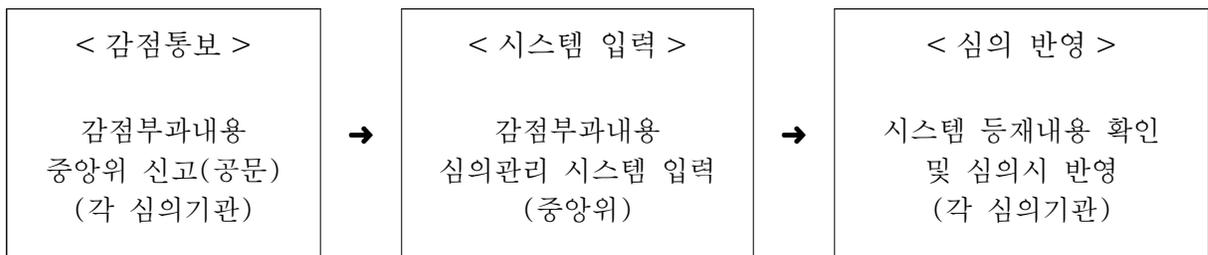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27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감점내용) 심의위원 사전접촉,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사전신고 없이 낙찰후 1년 이내 심의위원에게 용역 등 의뢰, 기타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 주요내용

- 감점부과 및 통보 : 전국 심의기관

- 감점관리 절차



- (감점통보) 모든 심의기관은 감점부과후 즉시 중앙위에 공문으로 감점점수 및 기간 등을 통보(붙임 양식)
- (시스템 입력) 중앙위는 신고된 내용을 “온라인터키 마당”에 입력·관리(관련 문서도 함께 등록)
- (심의반영) 모든 심의기관은 “온라인터키 마당”에 등재된 감점내용을 심의에 반영토록 조치

참고

설계심의 비리감점 부과내용 통보 양식

[설계심의 비리감점 부과내용 통보 양식]

설계심의 비리감점 부과내용

감점대상 업체	업체명		사업자번호	
비리감점 내용	관련 심의안건명		심의기간	
	< 내용작성 >			
부과감점	점			
감점 관리기간	~			





# 부 록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 대형공사 업무 흐름도
2. 설계토론회 운영방안
3. 온라인 턴키 마당 소개
4. 세부 업무처리 절차
5. 설계평가 사유서
6. 세부평가지표
7.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8.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9. 참고자료(관련법령)



---

# 대형공사 업무 흐름도

[턴키, 대안입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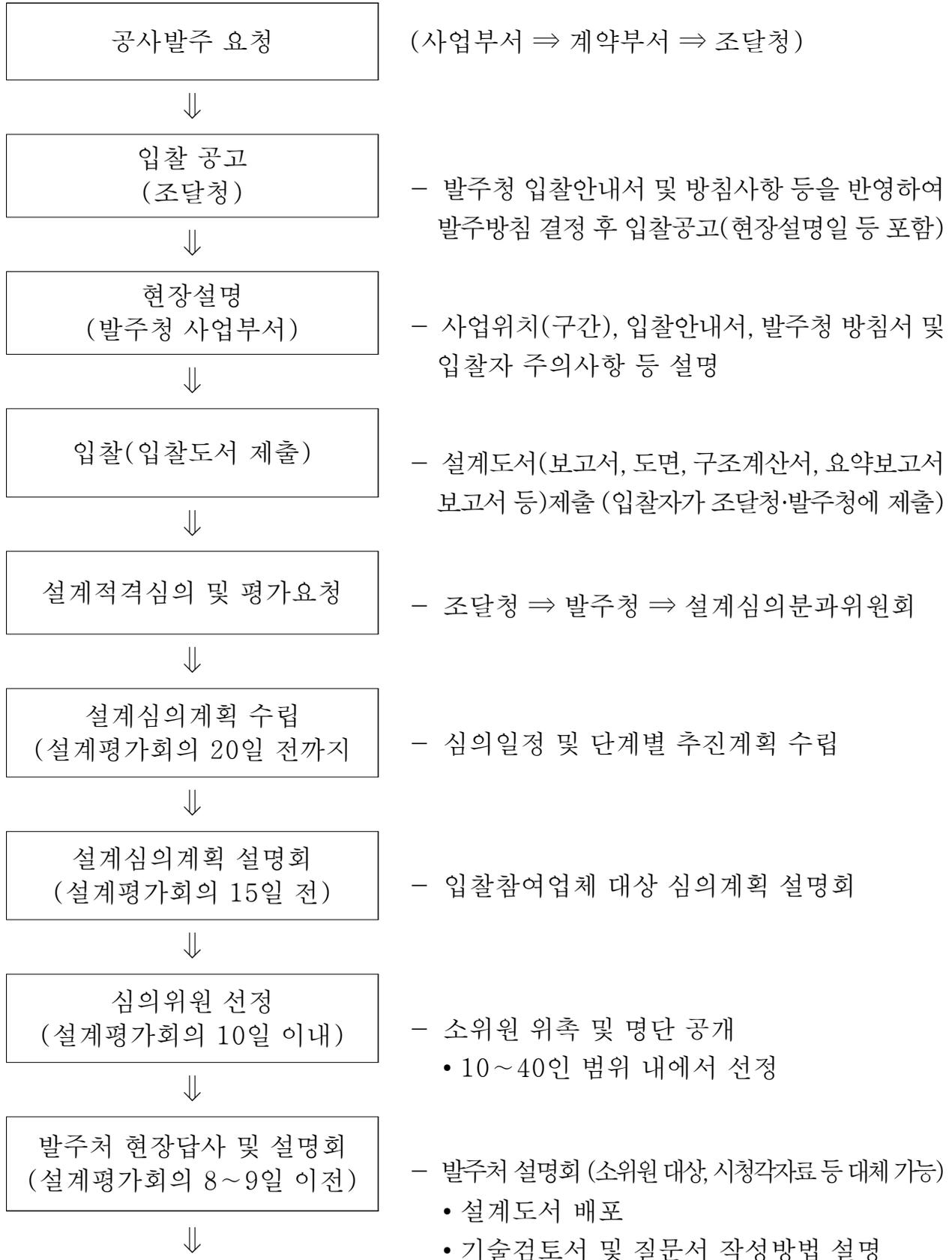
# 1 대형공사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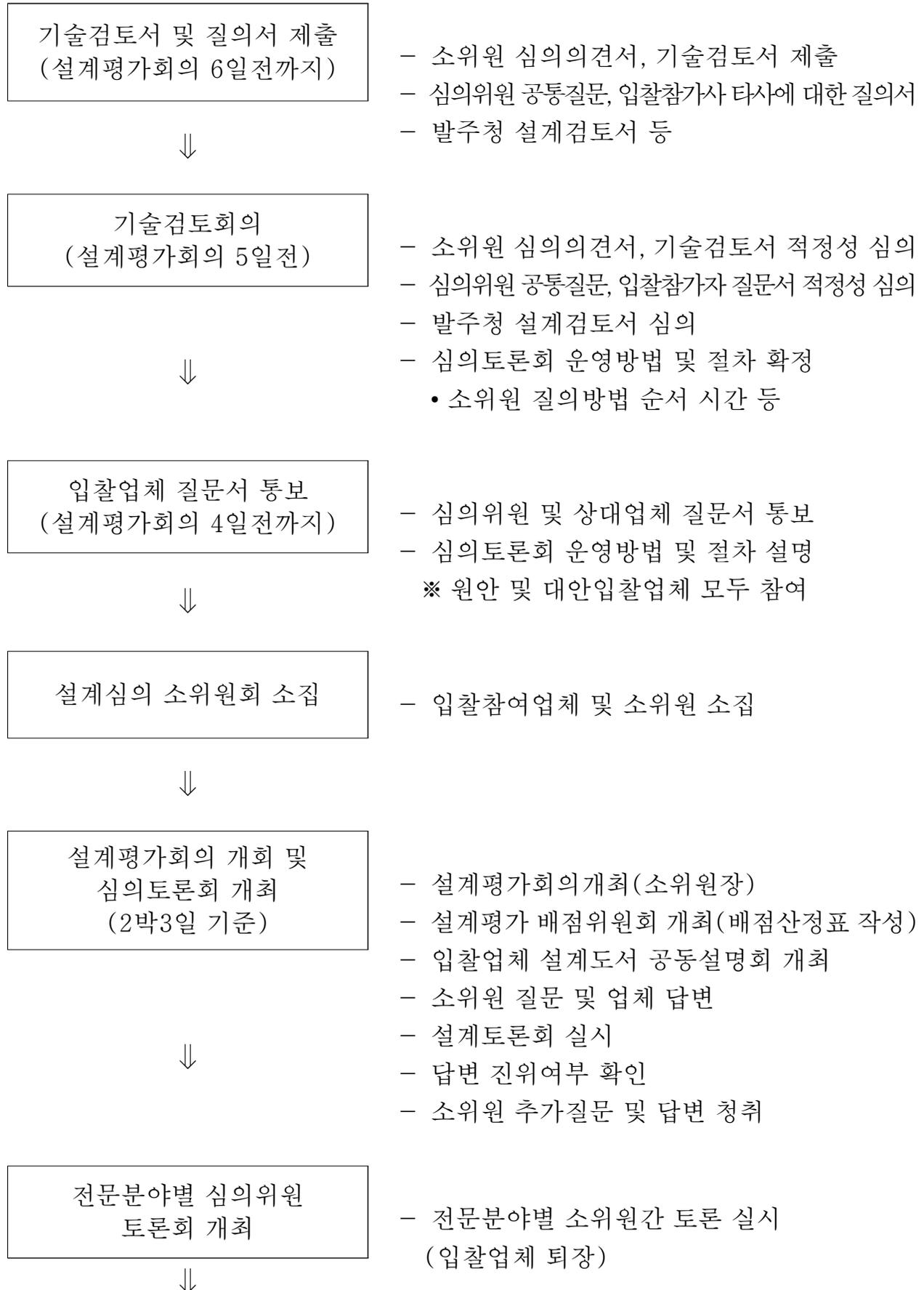
## □ 일괄·대안입찰 사업 발주절차



※ 1. 일괄입찰과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추진방식은 기본설계 시행 주체가 상이  
 2. 대안입찰과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추진방식은 동일

## □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절차





설계평가 및 채점



설계평가결과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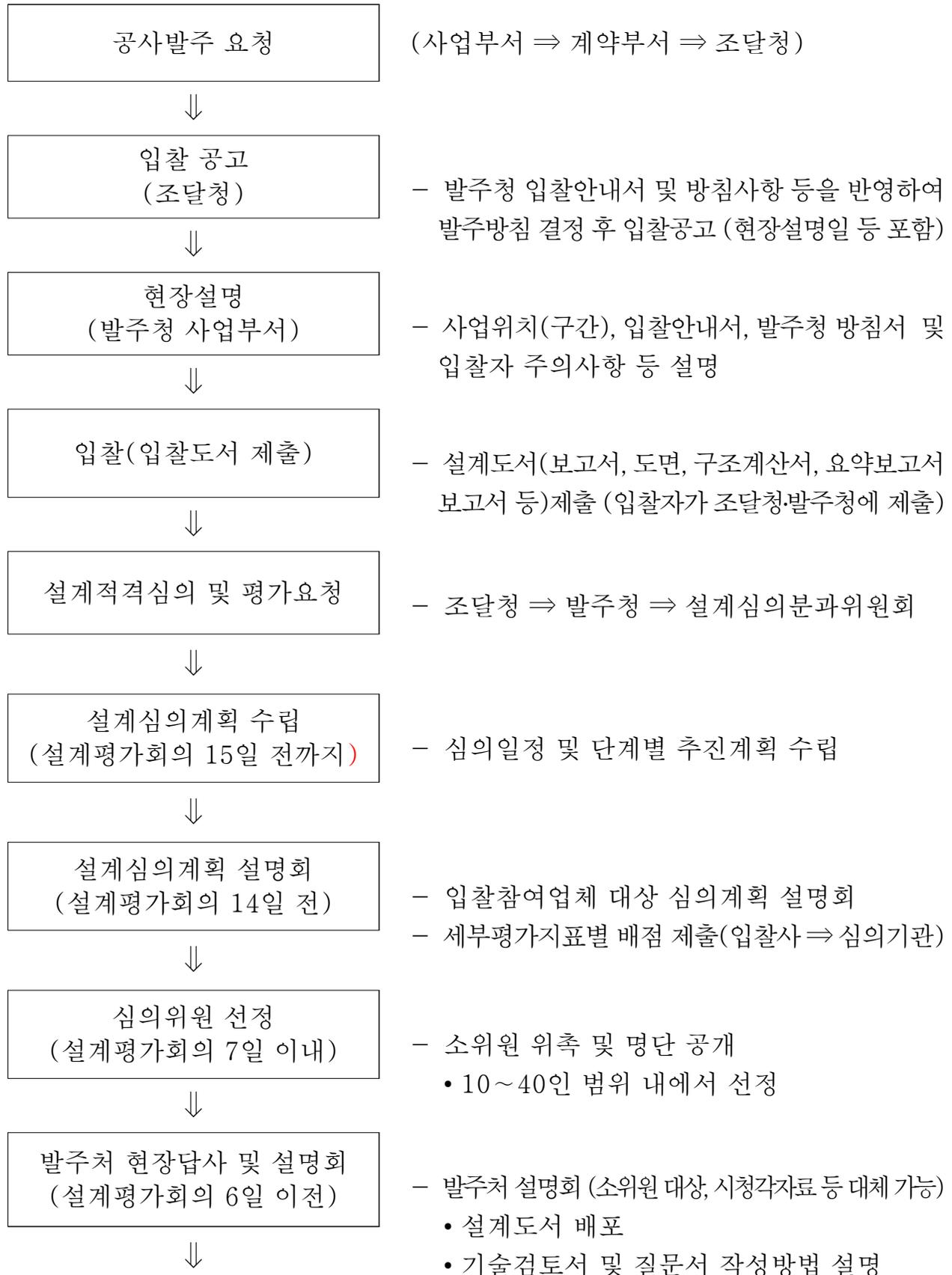
설계적격여부 및  
평가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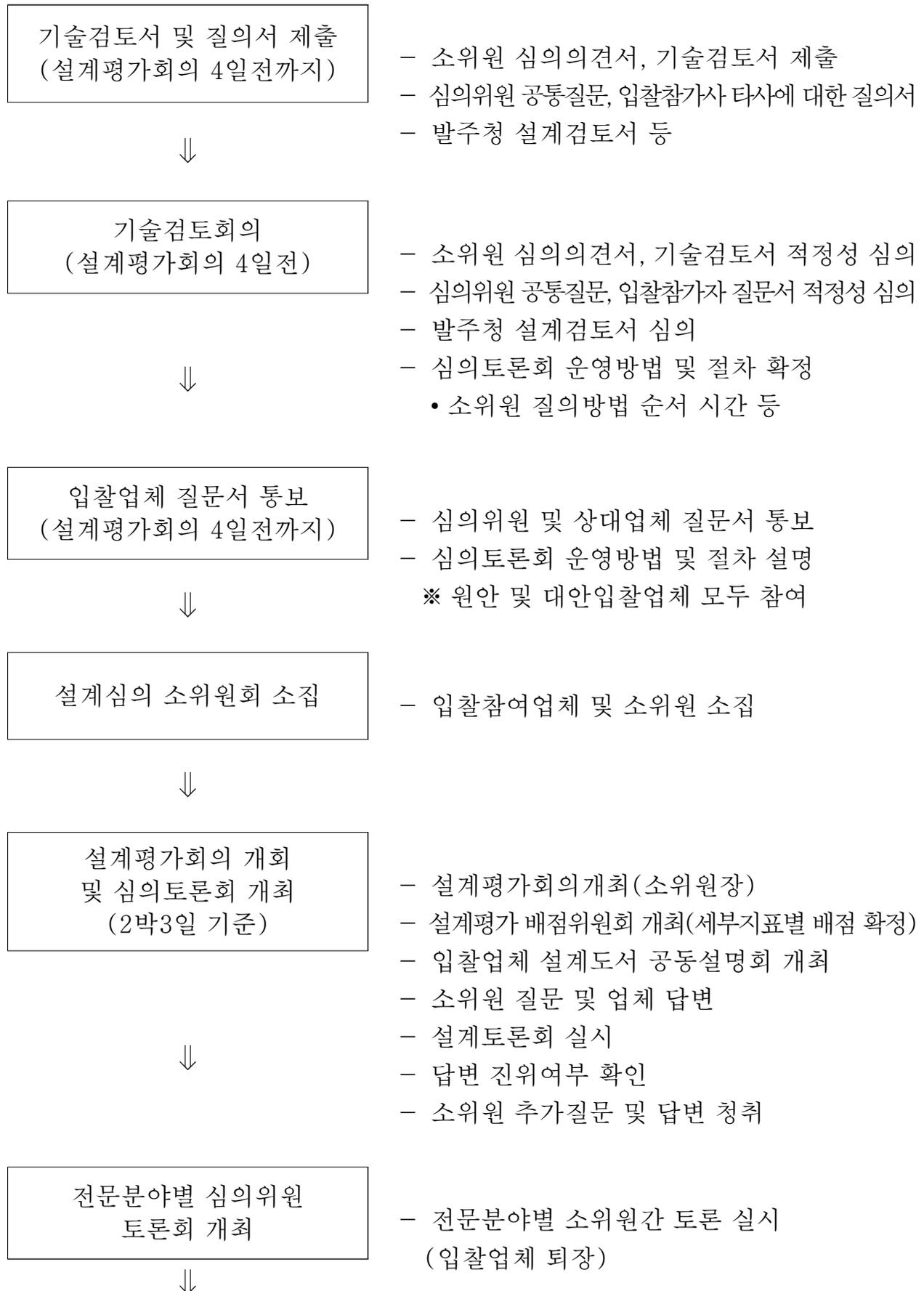
- 설계평가
  - 항목별 평가사유서 작성
  - 업체별 설계점수 채점 및 조정
- 설계점수 집계 및 감점사항 반영
- 소위원회 확인

- 평가결과 공개
  -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공개
  - 감점사항 공개

-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발주청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 조달청 )

## [ 단축심의 ]





설계평가 및 채점



설계평가결과 공개



설계적격여부 및  
평가결과 통보

- 설계평가
  - 항목별 평가사유서 작성
  - 업체별 설계점수 채점 및 조정
- 설계점수 집계 및 감점사항 반영
- 소위원회 확인
  
- 평가결과 공개
  - 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공개
  - 점사항 공개
  
-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발주청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 조달청 )



# 설계토론회 운영방안



## 1 입찰참가자간 설계토론회 운영방안

### □ 시행배경

- 설계평가회의시 공통 및 업체간 질의·답변이 제출된 답변서의 낭독·운영으로 답변의 진위여부 확인 어려움 등 심의 효율성 저하
- 따라서, 설계의 충분한 비교·검토, 진위여부 확인 등 심의내실화를 위해 입찰참가자 상호간 설계내용을 토론하는 방안 시행

### □ 토론회 운영방안

#### < 토론개요 >

- 토론방법 : 질의토론
- 토론시기 : 설계평가회의 당일 기존의 '공통 및 업체간 질의·답변' 서면대체 및 활용
- 참석자 : 소위원장, 각 컨소시엄별 대표자(PM 및 분야별 담당자)
  - \* 전문분야별 고려 토목 6인, 건축 9인 운영
  - \*\* 토론시간 : 1회당 7 → 9분, 토론참석자는 입찰참가회사로 제한

#### < 토론진행 방법 >

- 진행(좌장) : 소위원장
- 토론참석 : 전체 3개 업체중 2개 업체씩 입장하여 토론
  - \* 심의위원은 참관만 하며, 업체 회의참여 순서는 심의계획 설명회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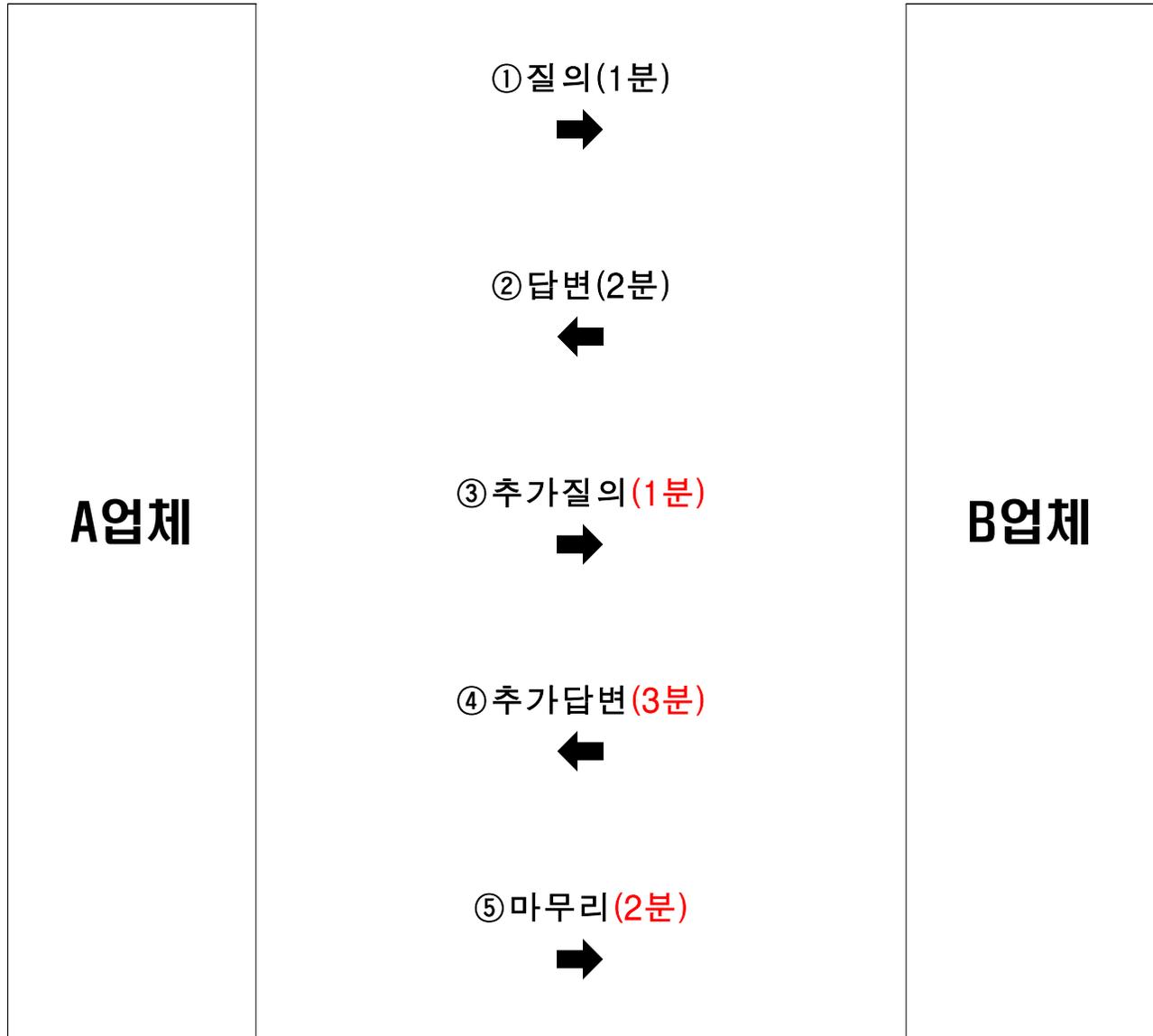
- 토론범위 : 심의위원 공통질의 + 업체간 질의 내용
- 토론시간 /질의개수 : 1회 54분(총 3회 162분) /상대 업체별 3개 질의
- 토론실시
  - 질의순서 : A, B업체 번갈아 질의(A질의→B질의→A→B→A→B)
  - 토론방법 : 각 질문건별로 질의 및 답변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질의건당 최대8분)
  - ☞ A업체 질의(1분)→B업체 답변(2분)→A업체 추가질의(1분)→B업체 답변(3분)→A업체 마무리(2분)
  - \* 추가질의는 선택사항, 질의성격의 답변은 지양
  - \* 토론 소요시간(안) : 162분
    - 토론 1회당 소요시간 : (2개 업체 × 3개 질의) × 8분(질의당 토론시간) = 54분
    - 한 업체당 토론시간 : 상대업체별 24분 × 2회 = 48분
    - 총 토론시간 : 54분 × 3회 = 162분
  - \* 주제를 벗어나거나 상대방 비방 등 토론범위를 벗어날 경우 소위원장이 즉시 중단 및 해당업체 주의조치(심의위원 평가시 반영가능)
  - \* 토론시간 초과시 즉시 중단
  - \* 기술검토 회의를 기존보다 앞당겨(평가회의 10→5일전) 실시하고, 공통 및 업체간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설계평가회의 1일전 책자 및 파일(PDF)을 우리부에 제출하면, 심의관리시스템에 등재(심의위원 및 업체 열람)

□ 기타 적용방안

- 입찰자가 4개사 이상일 경우, 토론방법·장소·시간에 제약이 있으므로 별도 설계토론회 시행 후 서면 제출 등 각 심의기관별 특성에 따라 토론회 운영방안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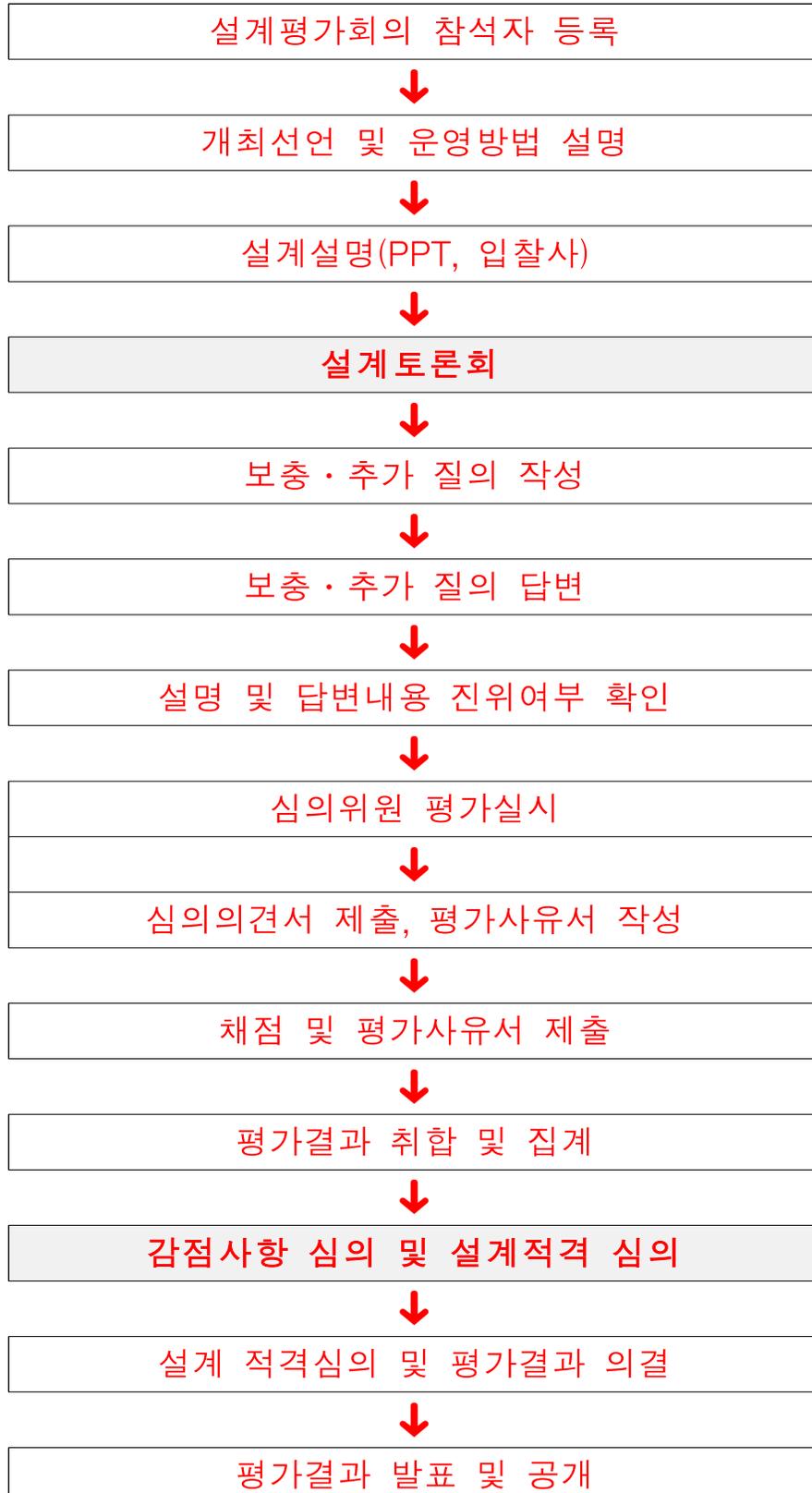
## 설계토론회 진행방법(질의 1건당)



\* 최대 5번의 질의 · 답변만 가능

**참고 2**

**설계평가회의 진행순서**





# 온라인 텀키 마당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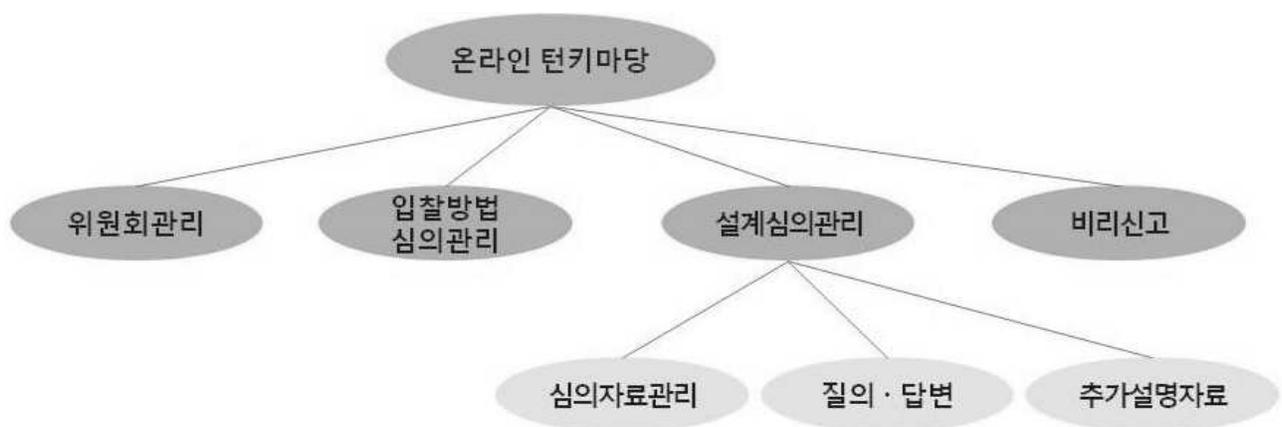
# 1 온라인 턴키 마당

## □ 필요성

- 설계심의자료 DB화, 단계별 자료등록 등 심의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표준화, 자료 정보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음성적 로비차단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 설계설명 기회를 업체들에게 보장
- 설계심의 자료를 각 발주기관 및 심의기관에서 별도 관리하여 자료 확인 및 심의제도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 개선

## □ 정보화 추진방향

- 現CALS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턴키마당” 구축



- 위원회관리, 입찰자료, 심의자료 등록·관리를 통한 자료 공유

- 사전접촉 등 비리사실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감점관리 체계화
- 심의관계자(심의기관·발주청·업체)와 일반인에게 자료등록(신고) 및 열람 권한 부여

## □ 세부 운영방안

### ○ 위원회 관리

- 전국 심의기관(28개)의 위원명단, 심의실적 등 위원회 현황 등록

\* 등록 및 열람 권한

구 분	내 용
등록내용	위원명단, 위촉기간, 심의실적
등록기관	심의기관
열람권한	공개

### ○ 입찰방법 심의 관리

- 심의요청서, 심의결과 및 위원별 의견서 등 자료등록

\* 등록 및 열람 권한

구 분	내 용
등록내용	심의요청서, 위원별 심의의견서, 심의결과
등록기관	심의기관
열람권한	심의요청서 ⇒ 심의기관, 심의요청기관 심의의견서 ⇒ 심의기관 심의결과 ⇒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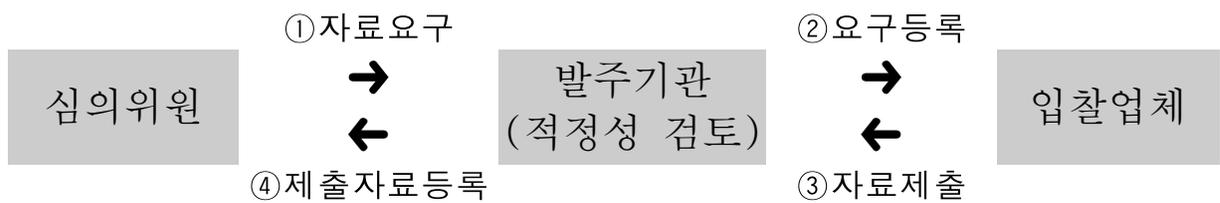
○ 설계심의 관리

- (심의자료 관리) 평가위원 명단, 입찰서류 및 심의단계별 생성자료 등록

\* 등록 및 열람 권한

구 분	내 용
등록내용	위원명단 등 일반현황,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위원 검토자료(기술 검토서, 심의의견서), 설계검토서, 평가결과(평가사유서, 평가채점표) 등
등록기관	입찰사 : 설계도서 발주청 : 입찰안내서, 설계검토서 심의기관 : 심의 일반현황, 위원 검토자료, 평가결과
열람권한	일반현황, 설계도서, 설계검토서 등 ⇒ 심의기관, 요청기관, 심의위원 평가결과 ⇒ 공개

- (질의·응답) 심의위원이 업체에 설계내용 확인 및 자료요구



\* 필요시 최종 설계평가회의시까지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문서 제출조치

\* 등록 및 열람 권한

구 분	내 용
등록내용	설계심의 관련 자료, 설계내용 확인요청 등
요청기관	심의위원
제출기관	입찰업체
관리기관	발주청(요청 및 제출내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
열람권한	심의기관, 발주청, 심의위원, 입찰업체(해당 업체 관련 자료만 가능)

- (추가 설계설명) 입찰업체에서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고 싶은 설계 내용(장점, 타사와의 차별점 등)에 대한 자료를 등록

\* 양식 및 분량 등은 “심의계획설명회”시 안내

## \* 등록 및 열람 권한

구 분	내 용
등록내용	각 업체별 설계내용(장점, 타사와의 차별점 등)
등록기관	입찰업체
열람권한	심의기관, 발주청, 심의위원, 해당업체(해당 업체 관련 자료만 가능)

## ○ 비리신고

## - 사전접촉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사실 등록·신고

\*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는 감찰요청, 감점부과, 수사의뢰 등 조치

## \* 등록 및 열람 권한

구 분	내 용
등록내용	비리사실(사전접촉, 담합사실 등)
등록기관	심의관계자, 일반인
열람권한	심의기관, 발주청

## ○ 기타

## - (등록 및 열람기간) 심의기간동안 등록 및 열람을 원칙

## - 일반인 공개자료

· 위원회관리, 입찰방법 심의결과, 비리신고 : 기한없음

· 자료목록, 설계심의결과 : 심의완료후 15일

## - “질의·응답”은 심의위원 선정~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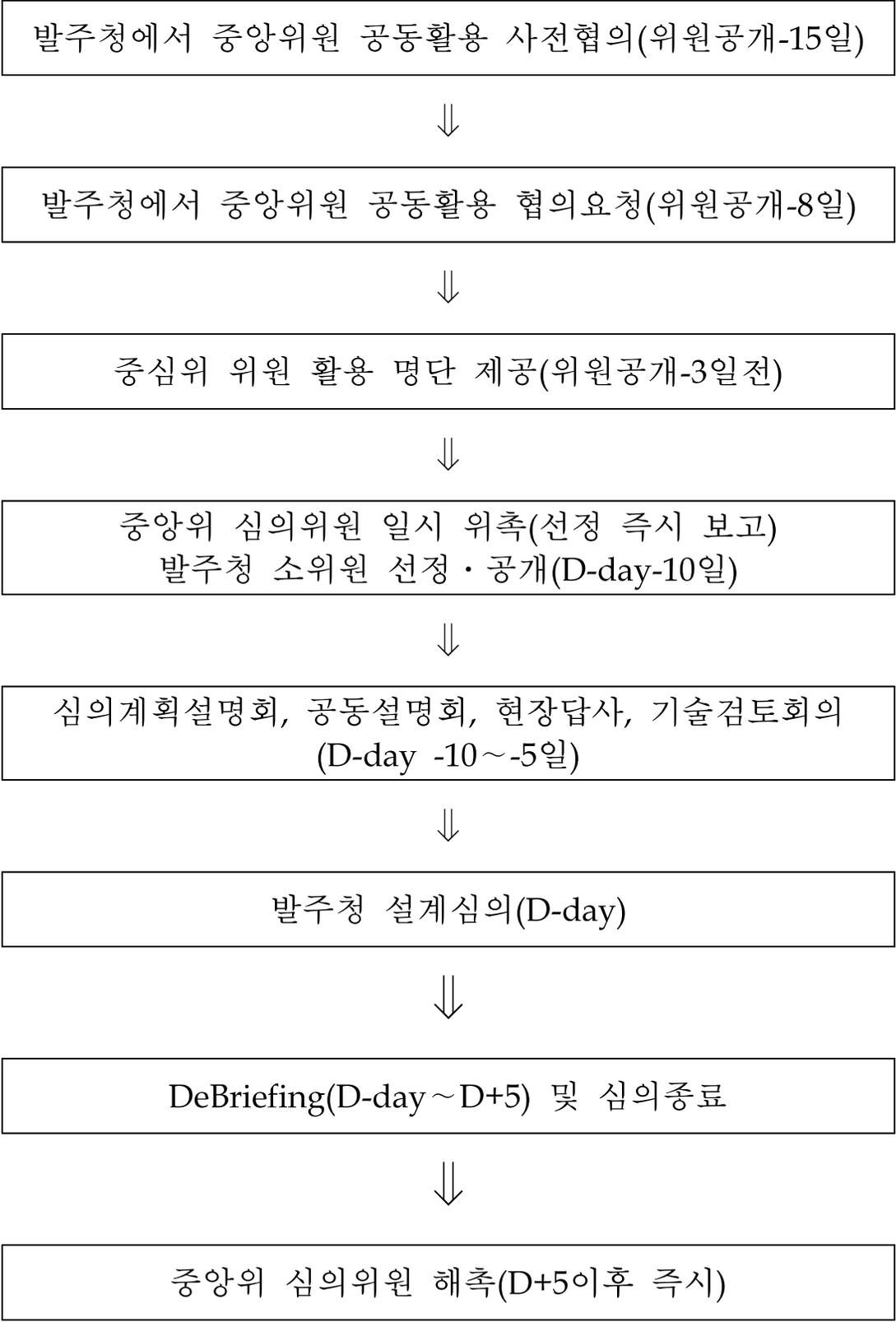
\* 제출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간확보

## - (보안) 공공IPIN등록자에 한하여 로그인 및 권한을 부여

# 세부 업무처리 절차



# 1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 공동활용 업무처리 절차



## [ 단축심의 ]

발주청에서 중앙위원 공동활용 사전협의(위원공개-15일)



발주청에서 중앙위원 공동활용 협의요청(위원공개-8일)



중심위 위원 활용 명단 제공(위원공개-3일전)



중앙위 심의위원 일시 위촉(선정 즉시 보고)  
발주청 소위원 선정·공개(D-day-7일)



심의계획설명회, 공동설명회, 현장답사, 기술검토회의  
(D-day -7~ -4일)



발주청 설계심의(D-day)



DeBriefing(D-day~D+5) 및 심의종료



중앙위 심의위원 해촉(D+5이후 즉시)

## 2 소위원회 구성시 중앙위 협의절차

### □ 필요성

- **(현황)** 건진법시행령 제9조 ⑥항 별표2에 따라 심의기관(특별위·지방위·기술자문위)에서 **소위원회 구성 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토록 함**
  - \* “별표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 기준” 3.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
- **(필요성)** 소위원회 구성 협의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 필요**

### □ 소위원회 구성 협의 절차(안)

#### ① 협의대상 :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인 **쏘기관\***

- \* 28개 기관 : 정부 5개(조달청 등), 광역지자체 16개(서울시, 부산시 등)  
공사·공단 7개(LH 등)

#### ② 협의내용

- 소위원 선정 및 관리방안, 중앙위원 일시위촉 계획, 심의기간 조정 계획 등 위원회 구성 및 심의운영 계획

※ 중앙위원 활용 확대(기술자문위 정원의 1/2 이내, '19.4월 건진법시행령 개정)

#### ③ 협의시기 및 방법

- 심의위원 선정 15일전까지 심의계획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사전 협의
  - 다만, 심의계획 미확정 등 기한 내에 협의가 곤란한 경우 제한적으로 위원선정 최소 10일 전까지 협의

※ 자격기준 외 설계심의분과위원 위촉은 정원의 1/5 이내(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

작성양식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 심의 계획

- 심의기관명 : 000
- '00년 심의계획 : 00건 000억원
- \* 상세 계획 붙임

### □ 심의운영계획(심의절차)

- < 심의요청부터 최종 설계평가 회의시 까지 심의절차 작성 및 절차별 운영계획 작성 >

### □ 소위원회 구성

- 위원선정
  - < 내·외부 위원 비율, 분야별 위원수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작성 >
- 위원 관리방안
  - < 위원 청렴교육, 감찰 등 관리방안 등 작성 >

### □ 기타

-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신규 구성계획 및 중앙위원 일시위촉 등 작성 >
- \* 자격미달 설계심의 분과위원 위촉방안 협의 포함

**【 불임 】 '00년 심의계획(엑셀로 작성)**

연번	심의 기관	사업명	발주청 (수요기관)	입찰 방법	사업비 (억원)	사업개요	입찰공고 (예정)일	최종심의 (예정)일	낙찰자 결정방법
1									
2									
3									
4									

## 3

## 입찰방법 시설기준 미달사업 사전협의 절차

## □ 필요성

-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대상시설 기준미달 사업에 대하여 심의요청전 **중심위와 협의토록 함**
-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협의절차 등을 미리 규정할 필요**
- \* 기준미달 사업 협의대상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3조 제7항
  1.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
  2.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3.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난이도 높은 기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4.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 □ 주요내용

- **협의대상** : 심의대상시설 기준 미달사업을 턴키·대안·기술제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 **협의기관** : 입찰방법 심의요청을 계획중인 **숏발주청**(국방부, 지자체 등)
- **협의시기** : 집행기본계획서 제출前
- **협의방법** : 협의요청 사유(양식 참고1)를 작성하여 해당 심의기관을 경유하여 **중앙위에 요청**
- **협의회신** : 중앙위 심의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해당 발주청과 심의 기관에 **통보**
- \* 각 심의기관(국방부, 지자체)에서는 소속 발주청으로 하여금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토록 지도·감독
- \* 향후 설계심의관리시스템(온라인 턴키마당)에 입찰방법 심의결과 입력시 협의여부 확인 추진

**참고 1**

**협의 요청 양식**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심의 협의**  
**(심의대상 시설기준 미달사업)**

**1. 사업개요**

- 공사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 주요 시설물 현황 :
  - \* 교량·터널 등 구조물, 건물 총수·연면적 등 심의대상 시설기준 항목위주로 작성 (필요시 별첨으로 처리)
- 총공사비/공사기간 : /
- 발주기관 :

**2. 사업 필요성 및 효과**

**3. 추진경위**

**4. 입찰방법 협의요청 내용**

- 입찰방법 요청(안) :
  - 입찰방법 요청사유
    - 1) 공기단축 필요성
      - 
      - \* 공기단축 목표 개월수, 당초 대비 단축내용 비교설명 등 정량적으로 작성
    - 2) 신기술·신공법 적용 필요성
      -
- 붙임 : 참고자료(위치도, 도면 등)

## 참고 2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⑦ 발주청장은 별표1의 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전에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한다.

1.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
2.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3.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난이도 높은 기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4.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 [별표 1]

##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이상) 및 경간장 100m이상 (철도교량은 70m이상)인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li> <li>▪ 일반터널(3,000m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li> <li>▪ 댐(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배수갑문</li> <li>▪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li> <li>▪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li> <li>▪ 철도(철도차량기지)</li> <li>▪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li> </ul>
건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항에 따른 초고층건축물만 해당)</li> <li>▪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li> <li>▪ 연면적 3만㎡이상인공용청사</li> </ul>
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li> <li>▪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li> <li>▪ 가스공급시설</li> <li>▪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li> </ul>

※ 상기 시설기준에 미달되나 특수한 현장 여건으로 신기술·신공법 등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상세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요청 가능

[별표 3]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1)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 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2)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1)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 단축의 정도(준공시점 설정사유,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등) 2)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자계획 3)Fast-Track 실시 및 가능성 여부 4)기타공사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세부적인 공기산출 내역제출, 실적공정 자료 포함)

## [별표 3의 2]

## 스마트 건설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 ①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설계와 시공단계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1)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을 설계 및 시공단계 전 과정에 적용하는 경우 2) 시공 전 과정에 자동화된 건설기계 운용 및 통합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시설물 점검·진단의 자동화,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단계에 기술 적용이 필요한 경우	1)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필요성 (해당기술 채택 사유) 2) 설계와 시공단계 전 과정에 적용하는지 여부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인 적용은 제외) 3)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시 예상되는 변화 및 효과 검토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품질, 안전, 유지관리 경제성 등) 4) 시설물 유지관리 고도화 및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를 위해 설계 및 시공과정에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5) 설계와 시공 분리발주시, 해당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이 불리한지 여부

## ② 스마트 건설기술의 주요 대상기술

스마트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M기반 스마트 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BIM설계 자동화)</li> <li>▪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건설기계 자동화, 건설기계 통합 운영 및 관제)</li> <li>▪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ICT기반 현장 안전 사고 예방기술, BIM기반 공사관리, 모듈화 또는 프리패브방식에 의한 시공)</li> <li>▪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기반 시설물 진단)</li> <li>▪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및 표준화, AI기반 최적 유지관리)</li> </ul>
--------	---

# 설계평가 사유서



# 1 설계평가 사유서

□ 건 명 :

□ 전문분야 : 수자원·상하수도

평 가 사 유
<p>1. 평가항목 : 사전조사 및 설계지표 설정의 적정성</p> <p>○○컨소시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현황, 기상개황, 풍향 및 풍속, 토지이용 현황, 천기일수, 지진발생 등 기초자료 조사, 환경기초시설 현황을 조사함.</li> <li>• 측량 및 토질조사, 재료원조사, 교통량조사, 방류수역 수질 및 환경 질조사, 토양 및 지하수수질조사, 유사하수처리시설조사, 특화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li> <li>• 관련 상위계획 검토시 ○○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과 관련계획 검토시 XX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제4공구) 조성공사 실시설계, XX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안), ○○항 신항 XX 항만배후단지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계획 등의 관련 계획을 검토함.</li> <li>• 계획목표연도 및 처리구역, 하수처리인구, 계획하수량 산정, 계획수질 산정 및 방류수질 결정 등을 간략하게 언급함.</li> <li>• 유입하수 특성 검토, 생물학적 하수처리 설계인자 검토, 설계신뢰도 확보를 위한 처리성 실험을 실시함.</li> <li>• 일찰안내서 지침 준수사항에 대하여 검토항목별(하수량 및 수질산정의 적정성, 방류수 보증수질, 유량조정조, 일차침전지 및 이차침전지, 수처리공정, 소독 시설, 하수찌꺼기 처리공정, 탈취설비, 가동초기 및 빈부하 처리대책, 종합 시운전 및 교육훈련등)로 설계에 적용함.</li> </ul>

## 평 가 사 유

### □□콘소시움

- 지리적위치, 강수량, 풍향 및 풍속, 기온, 천기일수, 지진발생 등 기초자료 조사, 환경기초시설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현황과 연계한 시설계획을 수립함.
- 측량 및 토질조사, 재료원조사, 방류수역 수질 및 환경질조사, 유사하수처리 시설조사, 최적설계를 위한 실험 및 분석결과를 수록함.
- 관련 상위계획 검토시 ○○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과 관련계획 검토시 XX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제4공구) 조성공사 실시설계, XX지구 1단계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안), ○○항 신항 XX 항만배후단지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계획 등의 기타 관련계획을 검토함.
- 기초설계 지표(목표연도, 처리구역, 하수처리인구 포함), 계획하수량 검토(오수량 원단위 검토, 하수량 원단위 적정성 검토), 계획수질 검토를 통한 기본설계 지표를 설정하고, 최적공정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함.
- 공정선정을 위한 사전검토사항은 ○○콘소시움과 내용이 유사함.
- 입찰안내서 지침 준수사항에 대하여 검토항목별(시설물배치, 계열화운전, 유량 조정조, 일차침전지, 생물반응조, 이차침전지 및 잔류부유물제거, 재이용 공급 수질, 하수찌꺼기 처리공정, 탈취설비, 방류수 보증수질)로 설계에 적용함.

### 종합 평가 의견

- □□콘소시움은 기본계획에 제시된 항만배후단지 뿐만아니라 배후단지 확정 예정지 및 컨테이너 부두를 하수처리구역 계획에 포함하여 설계지표를 수립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 (○○콘소시움은 배후단지 확정예정지 및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음).
- □□콘소시움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한 오수량 원단위의 적정성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한 하수량 원단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등 유사단지 현장조사를 통해 계획하수량 및 수질의 적정성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반영시킴 (○○콘소시움은 분류식 지역 등의 유입수질 등을 검토하였으나, 원단위 적정성 검토를 통한 기본계획의 계획하수량 및 하수수질의 적정성 검토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평 가 사 유

### 2. 평가항목 :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

#### ○○컨소시움

- 사업부지 현황분석, 방류해역 현황 및 지층구성 현황 등을 검토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영역을 해당지역 서쪽으로 배치하였고, 부지이용 효율성과 유지관리비 저감을 위하여 단복개 방식으로 채택함.
- 유지관리 차량 동선의 최소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지관리 동선과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함.

#### □□컨소시움

- 부지내 토질(지층)분석과 방류해역(XX만)의 현황분석을 통한 시설물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처리시설을 주변시설과 이격시킴으로써 향후 민원 제기 가능성 최소화 및 장래증설 용이성을 고려한 평면배치를 실시함. 또한 부력작용 및 연약지반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을 부분 지하화함
- 유지관리 차량동선 최소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지관리 동선과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함.

#### 종합 평가 의견

- □□컨소시움은 하수처리장 구조물을 인접부지 성토재하구간과 상당 부분 이격시킴으로써 측방유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처리시설을 주변 시설과 이격시킴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민원제기 가능성도 최소화 할 수 있고 장래증설 용이성을 고려한 평면배치가 되었다고 판단됨 (○○콘소시움은 측방유동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함).
- □□컨소시움은 부력작용 및 연약지반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처리장 구조물을 부분지하화 함 (○○콘소시움은 부지이용 효율성과 유지관리비 저감을 위하여 단복개 방식으로 채택함).

## 평 가 사 유

### 3. 평가항목 : 부지정지 및 토공계획의 적정성

#### ○○컨소시움

- 입찰안내서상 하수처리 시설 부지계획고 (DL.(+) 4.5~5.1)에 기준하여 수리적 안전성과 토공발생량을 최소로 하기 위해 계획고를 DL.(+)5.1로 계획수립함.
- 토공유용계획을 통하여 합리적 토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극조위를 고려한 부지계획고를 수립함.

#### □□컨소시움

- 입찰안내서상 하수처리 시설 부지계획고 (DL.(+) 4.5~5.1)에 기준한 계획고 DL.(+)4.8로 계획 수립함.
- 터파기토의 유용화와 부지내 가적치장을 운영하여 사토량 및 토공 운반거리를 최소화 하였으며, 고극조위를 고려한 부지계획고를 수립함.

#### 종합 평가 의견

- 양 컨소시움 모두 입찰안내서상 하수처리 시설 부지계획고 (DL.(+) 4.5~5.1)에 기준하여 부지조성고를 선정하였으나, 기상이변 등의 극한상황에 대비하는 차원과 사토 최소화 차원 관점에서 볼 때 ○○컨소시움의 부지정지 및 토공계획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됨.

### 4. 평가항목 : 주요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컨소시움

- 주요시설물(종합협잡물처리기, 유량조정조, KIMAS, 3차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저류조, 재이용수조)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함.
- 주요구조물(전처리시설, 생물반응조, 3차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시설 계획의 기능, 시설규모, 설계적용 내용을 제시함.

## 평 가 사 유

- 방류계획은 XX만으로 자연유하시키는 방식을 채택함.
- 장내용수 및 장외용수 400m<sup>3</sup>/일을 공급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구내배관계획도 관거별 특성에 따라 제시함.

### □□콘소시움

- 전처리시설(침사설비, 유량조정조), 주처리시설(생물반응조; KSMBR), 3차처리시설(용존오존가압부상조, 처리수조, 활성탄흡착시설), 재이용수 저류조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함.
- 주요시설물(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3차처리시설, 재이용수 저류조, 하수 찌꺼기 저류조) 시설계획의 기능, 시설규모, 설계반영 내용을 제시함.
- 방류계획은 방류맨홀까지 압송후 인접 우수관로에 연결하여 자연유하 시키는 압송+자연유하 방식을 채택하여 조위 상승에 따른 영향을 고려함.
- 장내용수 및 장외용수 438.3m<sup>3</sup>/일을 공급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구내배관 계획도 관거별 특성에 따라 제시함.

### 종합 평가 의견

- 양 콘소시움 모두 유량침두율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야 하는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 □□콘소시움은 초기저유량 및 저부하 발생 등 비상시 운전계획은 반영하였으나 저유량에 따른 계열화 운전은 반영하지 못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콘소시움의 계획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 ○○콘소시움은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 설치, 일차침전지 미설치, 시설집약형 고도처리공정 도입으로 소형화 및 집약화 계획을 반영하였으나 슬러지처리의 경우 농축 및 탈수를 분리하여 처리시설의 소형화 및 집약화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방류계획에서도 □□콘소시움이 압송+자연유하 방식을 사용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조위 상승에 따른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판단됨.
- 양 콘소시움의 장단점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주요시설물 계획의 적정성면에서는 □□콘소시움이 다소 우수하다고 판단됨.

## 평 가 사 유

### 5. 평가항목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콘소시움

- 진입 및 구내도로를 통한 유지관리와 이용자 차량간의 동선을 분리하고, 회전반경을 고려한 구내도로 계획을 수립함. 또한 오·우수배제계획도 체계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 공동구에 대한 공간계획, 유지관리, 환기시설,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시설 상부에 자연채광 계획을 수립함.
- 지하시설물 환기대책(결로방지)을 환기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수립함.

#### □□콘소시움

- 진입 및 구내도로 계획으로 이용자와 근무자간 동선분리를 통한 공간의 독립성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진출입 계획과 회전반경을 고려한 구내도로 계획을 수립함. 또한 상수도 및 오·우수배제계획도 동일한 수준으로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 채광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공동구에 대한 공간계획, 유지관리, 환기 시설,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구 배수계획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언급함.
- 지하시설물에 대한 환기, 탈취, 결로,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함.

#### 종합 평가 의견

- 양 콘소시움 모두 다 구내도로, 포장계획, 상수도 및 오·우수배제계획은 비슷하며, ○○콘소시움은 채광계획에 대하여 언급한 반면, □□콘소시움은 공동구의 배수계획, 지하시설물에 대한 탈취 및 침수방지대책을 추가로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콘소시움이 다소 우수하다고 판단됨.

평 가 사 유

6. 평가항목 : 처리공법 선정의 적정성

○○컨소시움

- 대상처리구역 특성고려 및 경제성분석을 통하여 주 처리공법으로 염분유입 및 지하화 등을 고려한 MBR 계열의 KIMAS 공법을 선정하여 부지 최소화 및 시설집약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인근 하수처리 시설과 상이한 공법 선정으로 연계성이 떨어지고, 생물반응조에도 T-P 제거를 위한 응집제를 주입하여 약품사용량이 과다할 우려가 있음.
- 3차처리공정은 상향류식 여과흡착을 도입하여 T-P의 성능보증 수질 준수가 가능하나, COD 10mg/L 및 재이용수질의 색도 20을 보증하기 위한 시설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신기술 인증 및 처리실험을 통한 공법의 안정성을 제시하였으나 국내 유사 규모 하수처리장의 가동실적이 거의 없고 시공 및 설계실적만 제시함.

□□컨소시움

- 주 처리공법의 경우 연약지반인 대상처리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집약화가 가능하고 인근 ○○XX하수처리장 및 ○○북면하수처리장 등과 동일한 KSMBR 공법을 선정하여 인접시설과 연계가 우수한 처리공법을 선정하였다고 판단됨.
- 3차처리공정의 경우 화학적응집, 오존처리, 활성탄 시설 등을 계획하여 성능보증 수질인 COD 10mg/L 및 T-P 0.3mg/L 가 안정적으로 준수될 수 있고, 재이용수질의 색도 20이하 준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시설집약화가 우수한 용존오존 가압부상 도입으로 설계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주처리공법인 KSMBR공법은 다수의 정상가동사례 및 공인기관 인증이 있고, 각 유입조건별 가동사례 조사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국내 가동중인 시설이 27개소(해외포함하여 156개소 실적 보유)로 공법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판단됨.

## 평 가 사 유

### 종합 평가 의견

- ○○콘소시움이 제안한 공법은 염분유입에 대한 처리성능 저해를 고려할 수 있고 부지최소화, 시설집약화 및 T-N제거효율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콘소시움이 제안한 공법은 주변 인접시설과의 연계성, COD 및 T-P제거효율, 재이용수 색도 준수 그리고 국내외 가동 실적도 많고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 등 공법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콘소시움의 공법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됨.

### 7. 평가항목 :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

#### ○○콘소시움

- 단위 공정별 기능별 선정방향(침사 및 협잡물 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생물 반응조, 3차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탈취시설)에 대한 내용을 검토함.
- 하수처리공정으로 전처리공정, 주처리공정, 3차처리공정이 체계적으로 제안 되어 있음.
- 하수찌꺼기 처리방식으로 기계농축+탈수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하수찌꺼기 발생량과 처분계획도 제시함.
- 재이용수는 보증수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장내용수 및 장외용수(조경용수) 포함하여 400m<sup>3</sup>/일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함.
- 악취포집 및 처리공정에서 탈취시설로는 호기조 탈취(저농도 탈취)와 미생물 탈취기(고농도 탈취)로 분리 선정함.
- 단위공정별 용량계산 및 물질수지에서는 계획하수량, 계획유입수질 및 보증수질, 시설물 설계기준, 시설물 용량계산과 물질분석을 실시함.
- 공정간 연계성 확보를 통한 처리공정 운전방안을 수립하고 비상시 대책도 수립함.
- 부하변동에 따른 공정운영방안에서는 가동초기 낮은 입주율과 저농도/고농도하수 발생업체 시나리오에 따른 대처방안과 시뮬레이션결과를 수록하였으며, 초기 강우 처리계획도 수록하였음.

## 평 가 사 유

### □□콘소시움

- 수온, 유량, 수질특성을 반영한 공정계획 수립으로 설계적정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위공정별(전처리공정, 고도처리공정, 3차처리공정, 하수찌꺼기처리 공정) 설계조건 선정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제시하고 있음.
- 하수처리공정으로 전처리공정, 주처리공정, 3차처리공정이 체계적으로 제안 되어 있으며, 고도처리공정에서 부하조건별 운전계획도 제시하고 있음.
- 하수찌꺼기 처리공정에서는 처리방식으로 농축·탈수방식을 선정하여 함수율 80% 이하의 안정적인 운영을 제시함.
- 재이용수는 보증수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장내용수 및 장외용수(조경용수) 포함하여 438.3m<sup>3</sup>/일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함.
- 탈취공정에서는 미생물 탈취기를 선정하였으며, 고농도 및 저농도 악취분리 포집 및 탈취시설을 이중화함.
- 단위공정별 용량계산 및 물질수지에서는 계획하수량, 계획유입수질 및 보증수질, 단위공정별 설계기준, 단위공정별 용량계산과 동절기 및 하절기를 고려한 물질수지분석을 실시함.
- 부하변동에 따른 공정운영방안에서는 일간 및 장기간 유량변동에 따른 공정 운영방안과 일간 및 장기간 수질변동에 따른 공정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운영 초기부터 최종목표년도까지의 부하변동에 대한 장기적 운영방안을 수립함.

### 종합 평가 의견

- 콘소시움 모두 침사 및 협잡물처리시설 선정의 적정성, 유량조정조의 필요성, 생물반응조 설계인자 검토 등을 통하여 처리공정계획 최적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콘소시움의 경우에는 탈취시설로 저농도탈취와 고농도탈취로 분리한 것과 단위공정별 운전방안에서 유형별 비상시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이며, □□콘소시움에서는 농축·탈수 일체화 방식선정, 고농도 및 저농도 악취분리 포집 및 탈취시설 이중화,

## 평 가 사 유

동절기 및 하절기를 구분한 물질수지분석, 일간 및 장기간으로 구분한 유량 및 수질변동 운영방안, 그리고 고도처리공정과 3차처리공정에서의 전산 유체해석에 의한 구조물 계획 적정성 검토 내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최종적으로 □□콘소시움의 제시 내용이 좀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8. 평가항목 : 수리계획의 적정성

#### ○○콘소시움

- 수리동선 직선화에 따른 손실최소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방류관로의 경우 자연유하방식을 채택하고 XX만 고극조수위를 고려한 적정방류계획을 반영함.

#### □□콘소시움

- 시설물 집약화에 따른 수리동선 최소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방류관로의 방류계획으로는 압송+자연유하방식을 채택하고 XX만 고극조수위를 고려한 적정방류계획을 반영함.

#### 종합 평가 의견

- 양 콘소시움 모두 수리동선 최소화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방류관로의 방류계획상 압송+자연유하방식이 위기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콘소시움의 제안사항이 좀 더 우수하다고 판단됨.

## 평 가 사 유

### 9. 평가항목 : 근무자 및 이용자의 위생, 보건 등 안전대책

#### ○○컨소시움

- 근무자에 대한 위생, 보건안전대책에서 실내 공기질계획, 환기설비계획 그리고 지하토목구조물에 대한 환기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함.
- 이용자 및 방문자의 안전대책에서는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전층에서 98초 내 대피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제안함.

#### □□컨소시움

- 근무자에 대한 위생, 보건안전대책에서 환기설비, 위생설비를 제안하였으며, 스테인레스 저수조 및 배관을 통한 생활용수 위생성 향상과 저수조 및 BY-PASS설치를 통한 비상시 공급계획을 제안함.
- 이용자 및 방문자의 안전대책에서는 소화설비, 실내·외 공간 안전대책, 방재계획을 수립함.

#### 종합 평가 의견

- 양 컨소시움 모두 근무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보건 등의 안전대책을 제안함. ○○컨소시움이 환기 시뮬레이션 분석과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분석 내용을 제시하여 □□컨소시움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평 가 사 유

## 10. 평가항목 : 종합시운전 및 기술이전계획의 적정성

## ○○컨소시움

- 입찰안내서 검토를 통한 무부하, 부하, 신뢰성시험 운전 시행으로 종합시운전 계획수립 및 공법 그리고 정상운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순차적 시운전 절차를 반영하여 각 단위공정별 부하시운전 및 성능시험운전 절차를 수립함.
- 운영 및 유지관리기술자의 조기 자립화 계획과 유사공법처리시설 운영인원 교류를 통해 기술이전과 운영관리 노하우 전수가 용이토록 하였으며,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관련조직간 유기적인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 □□컨소시움

- 입찰안내서에 근거하여 시운전 대상시설, 범위 및 절차를 수립하였고, 종합시운전 기간 중 각 단위공정별 세부시행 계획 수립으로 각 단위공정별 부하시운전 및 성능시험운전 절차를 수립함.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술과 제어기술습득으로 종합적인 기술지원 체제를 구축하였고, 이론 및 실무교육 중심으로 현장견학 및 시운전 병행교육을 통한 관련조직간 유기적인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 평가 의견

- 종합시운전 및 기술이전계획의 적정성 분야는 양 컨소시움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됨. 단지 □□컨소시움의 종합시운전 일정계획표상의 공정이 보다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약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평 가 사 유

### 11. 평가항목 : 유지관리비에 대한 적정성

#### ○○콘소시움

- 유지관리비 산출근거와 연간 유지관리비 산출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유사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금회 사업 유지관리비 292.9월/톤으로 산정함.
-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에서는 처리공정, 자동화요인, 설계요인, 운영요인에서의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고효율전동기, 기자재선정, 처리수재이용, 건축설비, 하수찌꺼기처리비에서의 절감효과를 분석 제시함.
- 20년간 유지관리비를 제시함.

#### □□콘소시움

- 유지관리비 산출근거와 연간 유지관리비 산출결과를 제시하여 금회 사업 유지관리비 291.2원/톤으로 산정함.
- 단위공정별(전처리공정,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3차처리공정, 재이용공정, 농축탈수공정)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정계획에 따른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으로 시설집약화, 공정자동화, 약품최소화를 통한 절감방안도 제시하여 연간 유지관리비 0.776억을 절감하는 것으로 제시함.
- 20년간 유지관리비를 제시함.

#### 종합 평가 의견

- 양 콘소시움 모두 처리공정선정 및 최적운영계획 등을 통하여 유지관리비에 대한 적정성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됨. ○○콘소시움에서는 처리수 재이용 5.7억을 포함하여, □□콘소시움과의 형평성상 처리수 재이용 금액을 제외하면 0.65억을 절감하는 결과이므로 □□콘소시움보다 절감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처리공정과 부하조건별 운영방안을 수립한 □□콘소시움이 다소 우수하다고 판단됨.

## 평 가 사 유

## 12. 평가항목 :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컨소시움

- 고효율 시스템 도입에 의한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함.
-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의 에너지 절감계획 제시함.

## □□컨소시움

- 주요 기자재에 대한 고효율 시스템 도입으로 에너지 절감 극대화함.  
(삼분할포기, 다용도 공기세정, 하수찌꺼기 최소화, 오존순환수 가변운전, 부상하수찌꺼기 최소화)
- 수질조건별 능동적 운영계획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함.

## 종합 평가 의견

- ○○컨소시움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의 에너지 절감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컨소시움이 상하수도 분야의 에너지 절감계획과 수질조건별 능동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소 우수하다고 판단됨.

## 13. 평가항목 : 성능보증 내용의 적정성

## ○○컨소시움

- 방류수질기준 및 보증수질에서 KIMAS 적용으로 미생물활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수온 12℃에서 수질보증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지침 및 상위계획을 고려한 방류수질 및 재이용수질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 재이용수는 보증수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장내용수 및 장외용수(조경용수) 포함하여 400m<sup>3</sup>/일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함.
- 하수찌꺼기 함수율과 악취배출기준 개략적 언급하였으며, 소음과 진동에 대한 내용 언급함.

## 평 가 사 유

### □□컨소시움

- 방류수질기준 및 보증수질에서 KSMBR+DOF+활성탄의 공정조합으로 관련 지침 및 상위계획을 고려한 방류수질 및 재이용수질기준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 악취배출기준에서 지정 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를 고려함
- 재이용수는 보증수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장내용수 및 장외용수(조경용수) 포함하여 438.3m<sup>3</sup>/일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함.
- 하수찌꺼기 함수율과 악취배출기준 언급함.

### 종합 평가 의견

- 양 컨소시움 모두 방류수질기준 및 보증수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단 세부적인 사항(하수찌꺼기 함수율과 악취배출기준 등)에서 □□컨소시움이 제안한 내용이 다소 우수하다고 판단됨.

#### 14. 평가항목 : 경제성분석(LCC, VE)의 적정성

### ○○컨소시움

- 처리공정(고도처리공법, 3차처리공법), 적용설비 및 기타 부대시설(침사기형식, 탈취기, 송풍기, 농축탈수기)에 대한 VE/LCC 평가 분석을 실시함.
-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에서는 처리공정, 자동화요인, 설계요인, 운영요인에서의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고효율전동기, 기자재선정, 처리수재이용, 건축설비, 하수찌꺼기처리비에서의 절감효과를 분석함.

## 평 가 사 유

### □□콘소시움

- 경제성분석의 방향, 프로세스, 설계 VE평가, VE/LCC 분석기준 등을 제시하고, 처리공정(KSMBR, 3차처리공법), 적용설비 및 기타 부대시설(분리막, 3차처리시설,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열원설비, 급탕설비)에 대한 VE/LCC평가를 수행함.
- 단위공정별(전처리공정,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3차처리공정, 재이용공정, 농축탈수공정)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정계획에 따른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으로 시설집약화, 공정자동화, 약품최소화를 통한 절감방안도 제시함.

### 종합 평가 의견

- 양 콘소시움의 VE/LCC 분석결과에 의하면 각 콘소시움에서 채택한 공정의 VE/LCC 결과값이 상대 콘소시움이 채택한 공정 결과보다 크게 산정하는 등의 주관성이 보여 분석결과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평가 분석 수행 및 평가 기법상에서 □□콘소시움의 분석기법이 다소 우수하다고 판단됨.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 세부평가지표



### 도로분야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 세부평가지표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도로 및 교통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측량, 골재원, 지장물 등 기초자료 조사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기준 등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교차로 계획 - 최적 노선의 경제성(B/C) - 용지편입, 민원발생 최소화 등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평면선형 설계의 적정성 -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평면 및 종단선형의 조화성	
	토공계획의 적정성	- 절토 및 성토의 균형 - 사토처리 계획의 적정성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의 적정성	-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시설 규격의 적정성 - 교통안전을 고려한 노면배수 용이성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포장단면 및 형식, 평탄성 확보 등 - 편의성 증대를 고려한 부대시설 - 교통안전시설 배치, 교통사고 방지대책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나들목/분기점 형식 및 접속계획의 적정성	- 나들목/분기점 형식의 교통효율성 - 접속도로 진·출입 용이성	
	교통수요 분석의 적정성	- 교통조사 및 교통량 예측의 적정성 - 본선/연결로 차로수 계획의 적정성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VE/LCC 분석기준, 절차의 적정성 -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을 통한 가치개선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토목구조	구조설계의 적정성	- 구조물 내구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기준 수립 - 구조계산 적정성 - 구조물 부재 및 재료설계 적정성 - 관련 기준과의 부합성
구조물계획(교량, 지하차도 등) 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구조물 연장 및 경간구성의 적정성 - 교량 상·하부 형식 적정성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가교/가도계획의 적정성	
부대시설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		- 교량받침 형식 - 신축이음장치 형식 - 기타 부대시설(난간, 방호책 등) - 교면포장공법 선정의 적정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구조물계획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수리, 수문분석, 세굴방지 대책의 적정성	- 수리, 수문분석의 적정성 - 세굴방지 대책의 적정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토질 및 기초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지반조사 - 토질정수 산정 - 활동 및 지지력 - 침하 및 변위			
		가시설 설계의 적정성	- 가시설 공법 선정의 적정성 -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의 적정성 - 가시설 구조물의 안정성 및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	-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처리공법의 적정성 - 내진설계 적정성 - 액상화 평가 적정성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	- 깎기 비탈면 설계의 안전성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	- 쌓기 비탈면 설계의 안전성 - 보호공법 선정 및 적용구간의 적정성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 교량기초 형식의 적정성 - 교량기초 시공법의 적정성 -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성			
		터널형식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 터널형식의 적정성 - 단면계획의 적정성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	- 터널굴착공법 선정의 적정성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	- 소음·진동 등 발파영향 최소화 - 시공 중 안전성 향상 방안 등			
	터널 지보설계의 적정성	- 지보재 선정 - 표준지보패턴 설계			
		갱문형식, 위치의 적정성	- 환경훼손 최소화를 고려한 갱문 위치 - 안정성을 고려한 갱문형식 - 경관성을 고려한 갱문형식		
	터널 방·배수 및 부대시설의 적정성		- 방수공법의 적정성 - 배수시설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적정성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	- 계측항목, 수량, 배치의 적정성 - 자동화계측 등 계측관리의 용이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물 계획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구조물계획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토목시공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토공, 기초공, 교량공, 포장공 등 주요 공종 시공계획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 수립의 적정성 -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 -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장비투입 및 양중계획의 적정성 - 인력, 자재투입계획의 적정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BIM을 활용한 시공관리 방안	
	사회적 가치실현	-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	
건축·설비·통신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계획 - 수·변전설비 배치 및 규모의 적정성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	- 비상전원설비 구축의 적정성 - 소화, 피난, 구난시설 계획 등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	-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비 배치계획 -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효율적 조명방식	
	터널 환기시설 계획의 적정성	- 환기방식 및 형식의 적정성 - 환기효율을 고려한 배치계획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자동화 등 설비 조작의 용이성 - 내구성 확보 및 유지보수 용이성	
	에너지 절감계획	-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적정성	
조경·환경·경관	조경계획의 적정성	-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식재계획 - 조경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도로설계의 적정성	- 구조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친환경 설계 도입의 적정성 -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효과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터널 등)	- 구조물의 독창성, 조형미 등 - 경관시설 도입의 적정성	

## 철도분야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 세부평가지표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철도계획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측량, 골재원, 지장물 등 기초자료 조사	
		- 입찰안내서 요구조건 및 설계기준 반영의 부합성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효율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 최적 노선의 경제성(B/C) 분석	
		- 용지편입, 민원발생 최소화 등	
		- 환경을 고려한 노선계획의 적정성	
	철도 기능에 부합한 설계의 적정성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후 접속의 적정성	
		- 토공설계의 적정성	
	철도 기능에 부합한 설계의 적정성	- 본선부속(옹벽, 용·배수, 길내기, 개천내기, 사면 등) 설계의 적정성	
		-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등 인터페이스 적정성	
		- 연계교통시설계획의 적정성	
	열차운행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	- 회차선 등 정거장 배선계획의 적정성	
- 선형 계획에 대한 적정성			
- 안전시설 및 운영시 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운행선 지장공사 및 단계별 시공계획의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설치의 적정성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설치의 적정성		
공사용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임시도로 및 우회수로의 적정성		
	- 공사중 교통처리대책의 적정성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	- VE/LCC 분석기준, 절차의 적정성		
	-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을 통한 가치개선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토목구조	구조설계의 적정성	- 구조물 내구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기준 수립	
		- 구조계산 적정성	
		- 구조물 부재 및 재료설계 적정성	
		- 관련 기준과의 부합성	
	구조물계획(교량, 정거장, 지하구조물 등) 수립의 적정성	- 현지어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구조물 연장 및 경간구성의 적정성	
		- 교량 상·하부 형식 적정성	
		- 정거장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 지하구조물 공법 선정 및 설계 적정성	
		- 수리, 수문분석 및 세굴방지 대책의 적정성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	- 교량, 정거장, 지하구조물 등 가설공법의 적정성 - 가교/가도계획의 적정성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교량받침 형식 - 신축이음장치 형식 - 기타 부대시설(난간, 방호책 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공사 중, 공용 중 민원을 고려한 구조물 설계	- 과업구간 내 민원발생요인 분석 - 공사 중, 공용 중 민원저감을 고려한 구조물 설계 반영			
	관련계획 및 관련분야를 고려한 구조물 설계	- 관련계획을 반영한 구조물 계획 - 궤도, 전기, 통신, 기계 등 관련분야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 수립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토질 및 기초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지반조사 - 토질정수 산정 - 활동 및 지지력 - 침하 및 변위			
		가시설 설계의 적정성	- 가시설 공법 선정의 적정성 -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의 적정성 - 가시설 구조물의 안정성 및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	-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처리공법의 적정성 - 내진설계 적정성 - 액상화 평가 적정성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	- 깎기 비탈면 설계의 안전성 - 쌓기 비탈면 설계의 안전성 - 보호공법 선정 및 적용구간의 적정성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 교량기초 형식의 적정성 - 교량기초 시공법의 적정성 -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성			
		터널형식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 터널형식의 적정성 - 단면계획의 적정성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	- 터널굴착공법 선정의 적정성 - 소음·진동 등 발파영향 최소화 - 시공 중 안전성 향상 방안 등	
	터널 지보설계의 적정성	- 지보재 선정 - 표준지보패턴 설계			
		갱문형식, 위치의 적정성		- 환경훼손 최소화를 고려한 갱문 위치 - 안정성을 고려한 갱문형식 - 경관성을 고려한 갱문형식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터널 방.배수 및 부대시설의 적정성	- 방수공법의 적정성	
		- 배수시설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적정성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	- 계측항목, 수량, 배치의 적정성 - 자동화계측 등 계측관리의 용이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물 계획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구조물계획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토목시공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토공, 기초공, 교량공, 포장공 등 주요 공종 시공계획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 수립의 적정성 -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	
		-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장비투입 및 양중계획의 적정성	
		- 인력, 자재투입계획의 적정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BIM을 활용한 시공관리 방안	
	사회적 가치실현	-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			
궤도	노선 특성을 반영한 배선계획 수립 여부	- 차량기지 등 구내 배선계획의 적정성	
		- 단계별 운행선 변경계획의 적정성	
		- 노반/궤도 인터페이스 적정성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궤도재료의 적정성	
		- 기존선과의 연계성	
		- 궤도구조의 적정성	
		- 소음·진동 저감방안	
		- 궤도공사 주요공종 시공계획의 적정성 - 궤도 절체 및 열차운행을 고려한 단계별 시공계획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 수립 여부	- 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 열차운행 안전 확보에 대한 적정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건축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기존시설 조사,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 사전조사를 통한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 및 균형성	
	건축물 설계의 작품성 및 창의성	- 건축물의 조형미, 창의적 예술성	
		- 시설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출입구 위치의 합리성 및 규모의 적정성	
		- 기능, 이용자 동선 및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 구조형식 선정의 적정성	
		- 구조계산의 적정성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골조, 마감, 방수 등 주요 공법 선정의 적정성		
	- 안전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자재 선정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	- 토목, 기계, 전기공사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단계별 시공계획		
	- 공조, 열원, 자동제어, 소방설비 등 기계설비 설계의 적정성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수·변전, 동력, 조명설비 등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조경·환경·경관	조경계획의 적정성	-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식재계획	
		- 조경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철도설계의 적정성	- 구조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친환경 설계 도입의 적정성		
경관설계의 적정성	-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효과		
	- 구조물의 독창성, 조형미 등		
		- 경관시설 도입의 적정성	
전철·전력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기존시설 조사, 관련법규 및 제기준 적용의 적정성	
		- 전철·전력분야 설계기준의 적정성	
	전철·전력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	- 전차선, 수·변전설비 및 급전설비 계획의 적정성	
		- 변전실, 전기실 설비계획의 적정성	
		- 전력간선, 조명, 동력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적정성	
		- 기존시설 운영간섭 및 인터페이스 조정의 적정성	
	전철·전력분야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관리계획 및 보수대책의 적정성	
		- 인력, 자재 및 장비투입계획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 품질, 공정,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계획	
		- 기능을 고려한 친환경적 설계 적용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신호·통신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기존시설 조사, 관련법규 및 제기준 적용의 적정성	
		- 신호·통신분야 설계기준의 적정성	
	신호·통신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	- 분야별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신호방식, 기기 배치 등의 적정성	
		- 통신방식, 용량, 기능, 기기배치 등의 적정성	
		- 기존시설 연계 운영계획 및 운영간섭과 인터페이스 조정 적정성	
		- 유지관리계획 및 보수대책의 적정성	
	신호·통신분야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성	- 운행선 인접공사 및 열차운행 안전 확보에 대한 적정성	
- 통신관로 설치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의 적정성			
- 안전성을 고려한 장비 선정의 적정성			
기계·소방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기존시설 조사, 관련법규 및 제기준 적용의 적정성	
		- 기계·소방분야 설계기준의 적정성	
	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 공조, 환기, 열원, 자동제어 설계의 적정성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설비 계획의 적정성	
	방재(소화, 피난, 구난 등) 계획의 적정성	- 소화, 소방설비 계획의 적정성	
		- 피난, 구난설비 계획의 적정성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계획	
- 기능을 고려한 친환경적 설계 적용			

### 수자원분야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 세부평가지표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수자원	사전조사의 부합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입찰안내서 요구조건 및 설계기준 반영의 부합성	
	수리·수문 분석의 적정성	- 강수량 분석의 적정성	
		- 홍수량 및 홍수위 검토의 적정성	
		- 홍수량 설계빈도의 적정성	
	시설물(댐, 하구둑 등) 설치계획의 적정성	- 시설물(댐, 하구둑 등) 위치, 형식 및 규모 선정의 적정성	
		- 주요 시설물 배치계획의 적정성	
		- 준설계획 및 수질오염 방지계획, 취수원 보호계획의 적정성	
		- 비상방류시설의 적정성	
	하천정비계획의 적정성	- 이수 활용능력 증대를 위한 수심 및 수량 확보 계획	
		- 치수안정성 고려한 제방계획의 적정성	
		- 주변여건, 친수기능 및 생태환경을 고려한 고수부지 조성계획의 적정성	
	주변시설물 및 주민의 안전성 고려 여부	- 시설물 주변지역 방재 및 안전성 확보계획	
		- 비상대처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	- VE/LCC 분석기준, 절차의 적정성		
	-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을 통한 가치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토목구조	주요구조물 구조설계 기준 수립 적정성	- 구조 설계기준 수립의 적정성	
		- 하중·산정조합, 설계방법, 안전율적용 등 구조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주요구조물 안전성 및 내구성 등	- 주요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의 안정성 확보 적정성	
		-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한 내구성 설계의 적정성	
		- 내진 등을 고려한 구조물 해석 및 거동분석의 적정성	
	구조재료 특성평가 및 적용의 적정성	- 콘크리트의 특성평가 최적 배합계획의 적정성	
		- 수화열해석 등을 통한 콘크리트 균열제어 및 대책 수립의 적정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토질 및 기초	지반특성을 반영한 주요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 지질 및 기초지반의 등에 지반특성 분석의 적정성	
		- 지반특성을 고려한 주요시설물의 배치, 형식 선정의 적정성	
	토질 특성 분석의 적정성	- 토질특성 분석 및 설계정수 산정의 적정성	
		- 재료원별 매장량, 품질평가의 적정성	
	주요시설물 기초 처리계획의 적정성 등	- 주요시설물 기초 안정성 검토 및 기초지반 처리의 적정성	
		- 주요 비탈면의 안전성 검토 및 대책수립 적정성	
		- 가시설 안정성 검토 적정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	- 계측항목, 수량, 배치의 적정성		
	- 자동화계측 등 계측관리의 용이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토목시공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토공, 기초공, 교량공, 포장공 등 주요 공종 시공계획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 수립의 적정성	
		-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	
		-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장비투입 및 양중계획의 적정성		
	- 인력, 자재투입계획의 적정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BIM을 활용한 시공관리 방안		
사회적 가치실현	-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		
기계 및 전기	사전조사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	- 기존 설비 현황조사 및 연계 적정성	
		- 수력발전계획의 적정성	
		- 설비계획의 적정성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운영계획의 적정성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에너지 절감방안,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적정성	-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자동화 등 설비 조작의 용이성	
		- 내구성 확보 및 유지보수 용이성	
환경 및 조경	사전조사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 이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의 적정성	
	경관 계획의 적정성	- 기본구상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지형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경관계획의 적정성	
		- 야간경관 연출계획의 적정성	
	조경 및 생태환경 시설계획의 적정성	- 주변환경과 조화된 생태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	
		- 지역주민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환경 친화적인 설계의 적정성	- 친환경 설계 도입의 적정성	
		-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효과	

## 항만분야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 세부평가지표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항만 및 해안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수심 및 지형측량, 수중 위험물, 지장물 등 기초자료 조사	
		- 항만기능에 부합한 설계기준 등	
	평면계획의 적정성 (필요시)	- 해역특성 및 이용관리를 고려한 시설 계획의 적정성	
		-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 장래 계획의 적정성	
		- 경관계획의 적정성	
	단면선정의 적정성	- 구간별 단면선정의 적정성	
		- 상부시설 계획의 적정성	
	구조물 세부설계의 적정성	- 설계 외력 및 구조물 세부설계	
		- 피복재 및 세굴방지공 등 기타 설계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의 적정성	- 수리모형실험의 적정성(필요시)	
		- 수치모형실험의 적정성	
		- 실험결과 분석의 타당성	
준설 및 매립계획의 적정성	- 준설계획의 적정성		
	- 매립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VE/LCC 분석기준, 절차의 적정성		
	-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을 통한 가치개선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 항만자동화 등 항만운영 여건을 고려한 시설계획의 적정성		
토목구조	설계기준의 적정성	- 구조물 설계법 적용기준	
		- 구조물 내구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기준	
	구조물 단면계산의 적정성	- 설계하중 및 단면력 계산의 적정성	
		- 구조물 안정성 확보의 적정성	
		- 단계별 해석 과정의 적정성	
	구조물 부재 및 재료설계의 적정성	- 부재 및 재료선정의 적정성	
		- 내구성 확보의 적정성	
		- 구조물 단면설계의 적정성	
		- 구조물 국부(응력 집중부) 상세설계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가시설물의 안전성	- 제작장 및 가설기초 안전성 등	
		- 시공시 가설구조물 등의 안전성 확보 계획	
	인접 구조물 안전성	- 인접 구조물 영향 검토	
		- 인접 구조물의 접속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토질 및 기초	지반조사 및 토질정수 산정의 적정성	- 지반조사 항목, 수량의 적정성	
		- 지질 및 지반 특성분석	
		- 지반특성에 부합한 토질정수 산정	
		- 공사용 재료원 특성 분석	
	설계기준의 적정성	- 관련법규 및 최신설계기준 적용	
		- 침하, 변위 및 내진 등 기준설정	
		- 설정기준에 따른 안전율 산정	
	기초지반처리의 적정성	- 기초지반처리 필요성 검토	
		- 기초지반처리 공법 선정	
		- 기초지반 안정성 검토	
		- 내진설계 및 내진안정성 검증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유지관리 편의성 및 효율성	
		- 유지관리비 절감효과	
	계측계획의 적정성	- 계측항목 및 계측기 배치의 적정성	
		- 계측관리계획의 적정성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토목시공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주요 공종별 시공계획의 적정성	
		- 수중공사계획의 적정성	
		- 장래 상부 및 인접시설과 호환성	
		-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성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 수립의 적정성	
		-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수중 품질확보계획의 적정성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	
		-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부대시설의 적정성	- 시설별 설치계획의 적정성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장비투입 및 양중계획의 적정성	
		- 인력, 자재투입계획의 적정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BIM을 활용한 시공관리 방안	
	사회적 가치실현	-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	
	공사관련 계약관리의 적정성	- 관급 및 도급자재구매 및 공급방안	
- 직영 및 하도급공사 구분계획의 적정성			
- 현장 시공관련 기술검토 계획의 적정성			
- 각종 대금 지급계획의 적정성			
해상교통 및 안전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해역특성 등을 고려한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조사	
		- 해상교통시설 기능에 부합한 설계기준 등	
	해상교통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해상교통 및 항적 조사의 적정성	
		- 사업지 및 인근의 통항 분석의 적정성	
	공사 중 해상교통 안전성 확보 방안	- 해상공사 안전확보 계획의 적정성	
		-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조사의 적정성	
		-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해상교통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	- 해상교통 혼잡도 평가의 적정성	
		- 해상교통 안전성 향상 방안의 적정성	
해상사고 대책방안의 적정성	- 해상교통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방안의 적정성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해양환경	해양.해저 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수리현상 및 생태계 변화의 대응성	
		- 해양환경영향 최소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의 적정성	
	해양 보존을 고려한 시설계획의 적정성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구조물계획 수립	
		- 해양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해양환경 보전의 적정성	- 해양생태환경조사	
		- 해양환경보전·복원	
		- 해양환경영향평가	
	해양 구조물 및 자원 이용의 적정성	- 해양 구조물 설치의 적정성	
- 해양 에너지 및 자원 개발, 해양 이용 기술의 적정성			
환경 및 조경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 환경영향 협의결과 반영계획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친수성 시설계획의 적정성	- 친수.경관 계획의 적정성	
		- 환경 및 조경시설물 계획 적정성	
	환경 친화적인 항만설계의 적정성	- 친환경 설계 도입의 적정성	
		-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효과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 공항분야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 세부평가지표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공항계획	사전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설계기준 및 평면배치의 적정성	- 공항기능에 부합한 설계기준 등	
		- 시설규모 산정 및 평면배치계획	
		- 활주로(유도로, 계류장 포함) 중·횡단계획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적정성	
		- 친환경 공항계획	
	포장계획의 적정성	- 구역별 포장구조 및 포장공법의 적정성	
		- 포장 내구성 확보의 적정성	
	배수계획의 적정성	- 공항 운영계획 및 지형 특성을 고려한 배수계획의 적정성	
		- 통수단면 및 공법선정의 적정성	
	공항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	- 공항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의 적정성	
	토공계획의 적정성	-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부지조성계획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VE/LCC 분석기준, 절차의 적정성		
	-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을 통한 가치개선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토목구조	구조물계획 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구조설계의 적정성	- 구조물 내구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기준 수립	
		- 구조계산 적정성	
		- 구조물 부재 및 재료설계 적정성	
- 관련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구조물계획		
토질 및 기초	지반조사 및 토질정수 산정의 적정성	- 지반조사	
		- 토질정수 산정	
	설계기준의 적정성	- 활동 및 지지력	
		- 침하 및 변위 설정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기초지반(침하대책)의 검토 적정성	- 기초지반처리 필요성 검토	
		- 기초지반 처리공법의 적정성	
		- 연약지반 계층계획의 적정성	
		-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비탈면 계획의 적정성	- 비탈면 처리 및 안정의 적정성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토목시공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토공, 기초공, 교량공, 포장공 등 주요 공종 시공계획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 수립의 적정성	
		-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	
		-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장비투입 및 양중계획의 적정성	
		- 인력, 자재투입계획의 적정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BIM을 활용한 시공관리 방안	
사회적 가치실현	-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		
건축	건축물(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터미널 규모의 적정성	
		- 기능, 이용 동선 및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의 적정성	
		- 소방 및 방재계획의 적정성	
		- 기타 건축물 시설배치 계획의 적정성	
	건축구조의 적정성	- 구조형식 및 구조계획의 적정성	
		- 적용 하중, 강도 설정의 적정성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골조, 마감, 방수 등 주요공법 선정의 적정성	
		- 안전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자재, 장비 선정	
		- 토목, 기계, 전기공사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단계별 시공계획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	- 공조, 열원, 자동제어, 소방설비 등 기계설비 설계의 적정성	
- 수.변전, 동력, 조명설비 등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기계/전기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기존시설 조사, 관련법규 및 제반 기준 적용의 적정성	
		- 설계기준의 적정성	
	급유시설의 적정성	- 급유방식 및 용량 산정의 적정성	
		- 기기 및 공법 선정의 적정성	
	기계설비 설계의 적정성	- 시설규모의 적정성	
		- 설비계획의 적정성	
		- 설비의 내구성 및 안정성, 보증기간 명시	
		- 용량계산의 적정성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	- 설비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수·배전 및 동력설비의 구성과 방식	
		- 주요기기의 용량 및 부하산정의 적정성	
		- 기기선정 및 배치계획	
- 고조파 저감 및 서지 보호대책			
항공등화시설의 적정성	- 항공등화시설의 적정성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계획		
	- 기능을 고려한 친환경적 설계 적용		
정보통신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기존시설 조사, 관련법규 및 제반 기준 적용의 적정성	
		- 정보통신분야 설계기준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	- 통신방식, 용량, 기능, 기기배치 등의 적정성	
		- 유지관리계획 및 보수대책의 적정성	
정보통신시설 계획의 적정성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적정성		
항행안전무선시설 계획의 적정성	-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적정성		
환경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협의결과 반영계획	
		-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	- 친환경 설계 도입의 적정성	

### 상하수도분야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 세부평가지표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 하수관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기존시설물 현황 조사 및 분석	
	설계 기준의 적정성	- 계획하수량 산정의 적정성	
		- 계획유입 및 방류수질 산정의 적정성	
		- 설계기준(처리시설, 관로 등) 설정	
		- 연계처리의 적정성	
	처리공정 선정 및 시설물 계획	- 유입관로 계획의 적정성	
		- 부지계획 및 토공계획의 적정성	
		- 처리공정 선정,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	
		- 수리계획의 적정성	
		- 처리성능의 적정성	
		- 하수찌꺼기 처리계획의 적정성	
	부대시설계획	- 재이용수 계획의 적정성	
		- 근무자 위생 및 보건대책의 적정성	
		- 동선계획의 적정성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기술이전, 시운전계획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운영관리계획(인원, 유지보수방안 등)	
		- 시설물 자동화 운전계획	
		-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방안	
		- 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관로정비 개선방향	- 민원발생 처리방안	
		- 하수배제방식 개선방안	
		- 수집 및 수송시스템 개선방안	
		- 관종 및 수밀성 개선방안	
		- 사업지역 수세변소수 직투입 대책	
		- 배수설비 개선방안(악취 및 역류방지)	
	관로정비 계획수립의 적정성	- 불명수 저감방안	
		- 하수관로정비 기본방향 및 계획	
- 배수체계 정비계획			
- 개·보수 공법 선정의 적정성			
- 소규모 펌프장 계획			
- 우수 유출 배제계획			
- 우수토실 정비대책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정수장 / 상수관로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 경제성(VE/LCC) 평가의 적정성	
		- . 유지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저탄소 녹색성장 도입의 적정성	- .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 . 자원절감 및 재이용, 친환경설계 도입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 기존시설물 현황 조사 및 분석	
	설계 기준의 적정성	- . 계획급수량/사용량 산정의 적정성	
		- . 설계기준(정수장, 관로 등) 설정	
	처리공정 선정 및 시설물 계획	- . 부지계획의 적정성	
		- . 처리공정 선정,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	
		- . 수리계획의 적정성	
		- . 처리성능의 적정성	
	부대시설계획	- . 근무자 위생 및 보건대책의 적정성	
		- . 동선계획의 적정성	
		- . 진입·구내도로 및 포장계획	
		- . 우·오수 배제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기술이전, 시운전계획	- . 운영관리계획(인원, 유지보수방안 등)	
		- . 시설물 자동화 운전계획	
- .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방안			
- . 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관로계획의 적정성	- . 관로 계획의 적정성		
	- . 관종 및 수밀성 개선방안		
	- . 관로 갱생 계획의 적정성		
관로정비의 적정성	- . 상수도관망 정비의 적정성		
	- . 블록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 누수탐사 및 복구계획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 경제성(VE/LCC) 평가의 적정성		
	- . 유지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저탄소 녹색성장 도입의 적정성	- .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 . 자원절감 및 재이용, 친환경설계 도입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토목분야	토목구조	구조설계 제반기준 수립의 적정성	- 주요 시설물 설계기준	
			- 주요 구조물 시설계획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설계의 적정성	- 구조계획의 적정성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	
	- 내구성 및 내진설계			
	방수 및 방식계획의 적정성	- 구조재료 적용의 적정성		
		- 방수·방식공법 선정의 적정성		
		- 방근계획의 적정성		
	기타 시설물 계획	- 지하시설 결로 방지계획		
		- 공동구 및 채광계획		
	토질및기초	지반조사 계획 및 결과분석 (설계지반정수)의 적정성	- 지반조사 위치 및 항목의 적정성	
			- 지반조사 결과분석 및 설계지반정수 산정의 적정성	
		굴착방법 선정 및 가시설의 안정성	- 지반굴착공법 선정의 적정성	
			- 가시설공법의 안정성	
			- 토공계획의 적정성	
		구조물 및 관로 기초계획의 적정성	- 계측계획의 적정성	
	- 구조물 기초계획의 적정성			
	지하수 처리계획	- 관로 기초계획의 적정성		
		- 내진 안정성		
	지장물 및 인근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 지하수위 산정의 적정성		
- 지하수 배제계획의 안전성				
토목시공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지장물 및 인근구조물 조사 현황		
		- 지장물 보호 및 인근구조물 안정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주요 공종 시공계획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 수립의 적정성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 장비투입 및 양중계획의 적정성			
사회적 가치실현	- 인력, 자재투입계획의 적정성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BIM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기계	공정 및 설비 구성의 적정성	- 설비 구성의 적정성	
		- 설비 배치계획 및 장비 반·출입 동선의 적정성	
		- 소음·진동 방지대책의 적정성	
		- 악취방지 및 탈취 대책의 적정성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 시설규모의 적정성	
		- 기기선정의 적정성	
		- 설비의 내구성 및 안정성, 보증기간 명시	
		- 용량계산의 적정성	
	건축기계설비 설계의 적정성	- 설비 시스템 선정	
		- 위생, 냉·난방 설비계획	
		- 환기 및 급·배기 설비계획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설비 및 유지관리	
		- 방재 및 소방설비의 적정성	
	설비의 경제성 및 합리성	- 설비 유지관리의 경제성	
		- 설비 유지관리의 합리성	
- 배관의 경제성 및 합리성			
전기 및 계측제어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	- 설비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수·배전 및 동력설비의 구성과 방식	
		- 주요기기의 용량 및 부하계산서	
		- 기기선정 및 배치계획	
		- 고조파 저감 및 서지 보호대책	
		- 신재생에너지 도입 계획의 적정성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 감시제어설비 계획 및 구성의 적정성	
		- 감시제어설비 선정의 적정성	
		- 계측기기 선정의 적정성	
		- 단위 공정 운전제어방식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 방재설비(소방, 경보, 피뢰, 접지 등)	
		- 정보통신 설비 선정(전화, 방송 등)	
		- 옥내·외 조명설비	
	설비의 유지관리 및 안정성	- 운전 및 보수유지관리 편의성	
		- 비상시 운전관리대책의 적정성	
		- 설비의 내구성 확보 방안	
		- 장애 통합운영 방안의 적정성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건축	사전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의 적정성	- 기존시설 조사,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 사전조사를 통한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 및 균형성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대지분석	
		- 건축물 규모의 적정성	
		- 시설물 배치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 외관의 심미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관리시설 및 주민친화시설 계획의 적정성	
		- 평·입·단면 및 실내 동선계획의 적정성	
		- 마감재 선정의 적정성	
		- 방재계획의 적정성	
	건축구조계획의 적정성	- 구조형식 선정의 적정성	
		- 구조계획의 안정성	
- 내진계획의 적정성			
조경·환경·경관	조경계획의 적정성	- 주변 환경조사	
		- 관련법규 검토사항	
		- 식재계획의 적정성	
		- 조경시설물/포장 계획의 적정성	
		- 친환경적인 계획	
		- 유지관리계획(식생/시설물)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기존 환경관련기준 반영여부검토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경관설계의 적정성(건축 등)	- 구조물의 독창성, 조형미 등	
		- 경관시설 도입의 적정성	

## 건축분야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 세부평가지표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건축계획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설계기준의 적정성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배치계획의 적정성	
		- 동선계획의 적정성	
		- 평면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 입면계획의 적정성	
		- 인테리어, 색채, 사인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 방재계획의 적정성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	- 친환경 건축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	- VE/LCC 분석기준, 절차의 적정성	
		-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을 통한 가치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건축구조	구조계획의 적정성	- 설계기준 수립	
		- 구조형식 선정의 적정성	
		- 구조계획의 안전성	
		- 내진계획의 적정성	
		- 구조계산의 적정성	
	기초설계의 적정성	- 사전조사의 적정성	
		- 기초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건축시공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주요 공종 시공계획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 수립의 적정성	
		-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	
		-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장비투입 및 양중계획의 적정성	
		- 인력, 자재투입계획의 적정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BIM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사회적 가치실현	-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		
기계 및 소방	설비 시스템 계획	- 각종 현황조사 검토	
		- 설계기준의 적정성	
		- 기계 및 소방시스템의 적정성	
	위생, 냉난방 및 소방 설비계획의 적정성	- 위생 및 냉난방 설비	
		- 환기 및 급배기 설비	
		- 방재 및 소방설비	
		- 신재생에너지 적용 및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자동화 등 설비 조작의 용이성	
		- 내구성 확보 및 유지보수 용이성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전문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전기 및 통신	설비 시스템 계획	- 각종 현황조사 검토	
		- 설계기준의 적정성	
		- 전기 및 통신시스템의 적정성	
	방재, 통신 및 조명 설비계획의 적정성	- 방재설비	
		- 통신 및 방범설비	
		- 조명설비	
		- 신재생에너지 적용 및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자동제어, 원격제어 등 설비 조작의 용이성	
		- 내구성 확보 및 유지보수 용이성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및 향후 확장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토목 및 조경, 환경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검토	
		- 부지조성 계획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	- 급수 및 우수처리계획	
		- 배수 계획	
		-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흙막이 및 기초계획	- 흙막이 계획	
		- 계층계획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공간계획의 적정성	
		- 조경식재 계획의 적정성	
		- 조경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친환경 설계 도입의 적정성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정 2015.06.30. 훈령 제 547 호  
개정 2016.11.30 훈령 제 779 호  
개정 2016.12.08 훈령 제 783 호  
개정 2017.11.08 훈령 제 934 호  
개정 2017.12.19 훈령 제 950 호  
개정 2018.06.29 훈령 제 1044 호  
개정 2019.01.11 훈령 제 1152 호  
개정 2019.04.12 훈령 제 1179 호

##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편의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국토교통부 외의 기관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3편은 법 제14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에 적용한다.

④ 제4편은 법 제19조, 영 제41조제2항,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설정보표준,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 ⑤ 제5편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⑥ 제6편은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중앙품질안전관리단 및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및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요령과 건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6편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에 따르며, 제5장의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소속된 자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⑦ 제7편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 제2편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 제1장 정의

**제3조(정의)** 제2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제안공법”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공법·기자재 등(이하 “공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2.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책임기술인”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건설기술개발보상

**제4조(개선제안공법의 사용신청)** ①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4. 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 발주청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성립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방법
2.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서 구비서류
3.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제5조(사용결정 및 통보)** ① 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각시 이의신청방법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청은 하수급인이 신청한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발주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 ①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관련 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 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①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 및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 등의 사후조치)** ① 발주청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용승인된 개선제안공법의 신청인이 하수급인일 경우 발주청은 개선제안공법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시 개선제안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지된 하도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동 공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승인한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중앙관서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심의절차는 제5조 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
  - 나. 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 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
- 나.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 3. 영 제6조제3호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영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가.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 나. 기준의 적용상 타당성
  - 다. 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 라. 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 5.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 가. 건설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 나. 건설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 다. 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 6.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 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 나.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
  - 라. 지장물·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 마.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 사.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 7. 영 제6조제5호 라·마·바·사·아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 86조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 제 10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2010.1.1이후 입찰공고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단,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 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8. 영 제6조제5호 다·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제99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다.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라.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9. 영 제6조제5호 다·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와 같은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일괄입찰·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 기준의 적정성

나. 실시설계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10. 영 제6조제6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1. 영 제6조제7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2. 영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하“중앙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 관계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3조(심의요청)**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제안평가위원회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4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1조제7호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4. 제11조제7호 라항과 마항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만 첨부), 설계지침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단, 발주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한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할 수 있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1조제7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요청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과 관련된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요청기관에 행정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요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심의 요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의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⑥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 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다.

**제14조(소위원회 위원선정)** 11조 제1호부터 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심의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 중 당해 심의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다.
  - 가. 심의위원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을 선정
  - 나. 위원 선정 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으로 하되, 제11조제5호에 관하여는 15일 이전에 선정
  - 다. 심의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 라. 제11조제8호 관련 사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동일사안 재심의의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 배제

**제15조(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 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 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방법 등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16조(기술검토 등)**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심의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은 제11조제2호, 제4호, 제6호, 제9호 부터 제12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②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소집 및 개최)**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라 당해 안전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전의 성격·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전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사항의 설명)** 위원장(소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7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1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소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장(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가 제11조 제1호 부터 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심의결과 조치등)** ① 영 제11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출서류)** 발주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개정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2.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제22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 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자문위원회 운영)** ①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와 환경분야, 경관분야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본부)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다.
-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19조제2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1조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한다.
-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 다.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 차. 유지관리의 적정성
  - 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 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국가계약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 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 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마.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바.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
- 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제12조 부터 제22조 및 영 제9조 부터 제16조의 규정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 제4장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운영

- 제2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1조제7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영 제9조 제2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전문분야별(별표 1)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영 제22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 ⑤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
- 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된다.
- ⑦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별표 2)을 따라야 한다.
- ⑧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은 영 제20조 및 영 제22조를 따른다.

**제25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혁신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안 채택여부 및 제안서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가.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심의위원의 당해연도 설계심의 2회 이상 참여를 지양하고, 소위원회 구성시 특정 대학교 출신이 전체 30%, 분야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심의위원 선정시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설계심의 건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별로 1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라. 심의위원은 심의일 전 10일 이내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4.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5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30조의 설계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26조(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 ① 발주청장은 별표3의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를 참고하여 기술제안을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제안이 필요한 과제, 구간, 범위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장은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제안건수의 합은 최대 5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술제안범위와, 기술제안범위 내의 각 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 설명회, 공동 설명회, 기술검토회의, 평가회의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제7호의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에 대한 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절차 등은 별표4 ‘기술제안입찰의 소위원회 회의 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소위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심의위원에게 평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 또는 기술 제안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공동 설명회의 설명자료 제출 시 제34조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 또는 기술제안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

을 알게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3. 입찰업체의 설계 설명 청취 등
4. 설계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지표의 적정성 검토 등

②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30조에 따른 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11조제7호가목, 나목 및 다목에 대해서는 제34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제11조제7호라목 및 마목에 대해서는 별표8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발주청별로 정한 제한사항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또는 기술제안 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
2.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평가회의 개최 전 서면으로 제출

③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회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평가회의를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제28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장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상의 설계 중점사항 및 주안점 등에 대하여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단, 소위원장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

방지를 위해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문항목 및 추가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답변 과정 이후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2/3이상(기술제안입찰의 경우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한다.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 중 합의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단,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1. 부적격 제안 :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설계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2. 조건부적격 :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④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 심의사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 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또는 기술제안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을 적격으로 본다.
2. 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기술제안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이거나 설계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
  - ⑤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 ⑦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나목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제32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설계심의 또는 기술제안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 나.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 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 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 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 바. 당해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결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 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 다. 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
  - 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
  - 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 ② 제11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6 및 별표7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표8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별표9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을 참고하거나 필요시 공인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평가배점기준에 따라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결과 산정 등에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 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 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2. 심의위원회는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 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회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 참가업체별 우수 순위를 결정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39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7.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소위원회는 평가결과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 ④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 서류

제출일에 별지 제15의1호 서식을 활용하여 발주청 1인, 입찰참여업체 대표 각 1인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받아야 한다.

⑤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배점 산정표를 개봉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평가지표별 배점 산정식에 따라 배점을 확정하고, 배점과 심의위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별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text{세부배점} = \frac{(\text{평가지표의 배점} \times \text{배점위원별 세부평가지표 점수의 합})}{(\text{모든 배점위원별 세부평가지표 점수의 합})}$$

\* 세부평가지표 배점은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배점의 합이 평가항목 배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는 세부평가지표 배점이 가장 낮은 지표(동점이 있는 경우 목차 후 순위) 배점에서 감하고, 작은 경우는 세부평가지표 배점이 가장 높은 지표(동점이 있는 경우 목차 선 순위) 배점에 가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심의위원별 세부채점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⑦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⑩ 위원장(소위원장)은 제30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발주청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법 제19조에 따라 구축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이하 “건설CALS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3조(기술제안 반영)** ①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②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적격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시 요구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발주청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 ④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에 따라 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⑤ 발주청장은 제31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⑥ 발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자가 변경하거나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발주청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제34조(소위원회 제출서류)** ① 발주청장은 제11조제7호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4. 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용량,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
6.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 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금지행위 및 감점)** ①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10 '감점기준'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청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기준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호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 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5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27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발주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보상 및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의 지급을 위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설계점수' 및 '기술제안점수'에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 및 심의위원별 배점의 합계(100점 만점)를 적용하여야 하며,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한 경우에는 차등을 적용한 최종점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제5장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제37조(입찰안내서)** ① 발주청은 일괄·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11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
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당해 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
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
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
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
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불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청은 일괄·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계약조건 등 설계분야 참가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계약서를 입찰공고일로부터 8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 계약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설계보상비 범위내의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의 설계분야 참가자의 지분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하도록 함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발주청은 민원 등의 원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계약관련 법령의 규정과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 기술제안 입찰 4개월 이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시급성 및 특성에 따라 설계기간 축소 검토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일괄·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전조사실시)** 발주청은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에서는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입찰서)** ① 발주청장은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12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영 제71조 제2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입찰참가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 제6장 건설기준 정비 등

**제40조(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관련단체(영 제65조제1항 제4호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는 별표13과 같다.

② 건설기준의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기준의 관리와 하위기술기준(표준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정비 등에 대해 관련단체를 지도·감독
2. 건설기준 정비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3. 건설기준 유권해석 등 질의회신

③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기준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기준의 제도정비 및 정책 수립
2. 건설기준의 정비계획 수립과 국고보조금 교부
3. 정비지침, 업무요령 등의 제정 및 운영
4. 건설기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
5. 공통분야 건설기준 관리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 등에 참여하는 관련단체(이하 “참여관련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6. 총괄업무 관련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7. 건설기준의 정보화시스템 연구

**제41조(소관부서의 의무 등)** ① 건설기준의 소관부서는 소관 건설기준에 대한 제·개정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소관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의 정비·관리 등과 관련된 부서 및 다른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참여관련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2조(건설기준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② 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영 제65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을 별표14의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건설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건설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R&D사업의 시행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 ④ 기술진흥원은 건설기준과 관련된 R&D사업을 수행할 경우 착수, 중간, 최종단계의 사업추진내용과 최종 연구성과물에 대해 건설기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기준센터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기술진흥원은 가능한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기준센터는 R&D사업의 연구성과가 건설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3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

### 제1장 정 의

**제43조(정의)** 제3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평가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유사신기술”이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법의 신기술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공지한 것을 말한다.
6. “기술개발자”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7.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8.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44조(적용범위)** 제3편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제45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3.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4.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영 제19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

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유사신기술의 활용)** 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 제3장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제47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기술사용료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50조(신기술공사비)**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1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5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2조(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 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요율, y2 : 큰 금액요율

**제53조(낙찰률)** 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제4장 건설신기술 사후관리

**제54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 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입력한 경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4편 건설정보표준 등에 관한 관리

### 제1장 정의

**제55조(정의)** 제4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정보 표준”이라 함은 건설사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공유하기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업체 등이 정하여 운용하는 지침·요령·기준 등의 준칙이나 기술규격 등을 말한다.
2. “건설정보 단체표준”이라 함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건설정보 표준을 말한다.

### 제2장 건설정보표준의 관리

**제56조(표준의 제안 및 채택)** ① 건설정보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에게 표준화의 대상 또는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과제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화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과제가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한 후에 표준화 과제로 채택하여야 한다.

**제57조(단체표준안의 작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표준화 과제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안의 개발·작성과정에서 당해 단체표준안이 제정목적에 적절히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8조(표준화위원회)** ① 전담기관에 건설정보 표준화위원회(이하 “표준화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표준화위원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표준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표준의 제·개정 절차)**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표준화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표준화위원회는 회부된 단체표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표준화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전문분과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의 기술적 검토 및 시험·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설정보 단체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된 단체표준안을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의견이 원만히 수렴되었다고 인정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를 단체표준으로 확정하여 공고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개정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국가표준의 건의 및 채택)**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중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표준에 대하여는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건설정보 국가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국가표준안을 건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60일 이상 국가표준 채택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의견이 원만히 수렴되었다고 인정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해 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표준채택을 중지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표준의 보급 및 적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나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종 건설정보 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표준·단체표준 등 상위 등급의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개정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정보 체계를 개발·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분야의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건설정보 표준이 동일한 위상의 다른 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정보 표준을 우선 적용한다.

### 제3장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제6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이하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정책지원
3.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4.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출연금의 관리와 집행
5.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활용 및 관리
6. 건설사업정보화 추진 및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7. 건설사업정보화 관련기관·단체 및 업체와의 공동사업 수행
8. 기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규모, 착수 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4회이내의 분할급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관리업무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전담기관의 장은 관계 부처, 학계, 연구소, 산업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관의 외부전문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정보화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의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기본목표
2.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
3. 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을 반영한 건설사업정보화 시행계획을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6조(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의 시행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 시행계획에서 정한 기본목표·추진방향·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등에 따라 사업명·사업내용·예산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

업비를 건설사업정보화 구축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비의 집행절차 등은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진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총괄책임자와 세부사업별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세부사업별로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협동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7조(사업결과의 평가와 반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의 성과를 협의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를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개발사업비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제68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세부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건설사업정보화사업에 대한 보고회 또는 시연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사업성과의 활용 및 보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성과가 건설사업정보화체계구축에 원활히 활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내용과 전년도 사업성과의 활용현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전담기관의 세부지침)**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제4장 건설사업정보화 정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1조(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간에 건설사업정보화사업간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각 기관간의 역할 조정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3.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은 건설사업정보화 관련부처의 담당과장, 국토교통부 산하 투자기관 및 공단 등의 임원,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건설사업정보화 관련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5. 민간전문가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건설사업정보화 추진방향 및 상호 협조사항 협의
2. 건설사업정보화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3. 건설사업정보화 추진 관련기관간 역할 조정
4. 건설사업정보화 추진예산 확보
5. 사업결과 평가
6. 기타 건설사업정보화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3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은 반기별 정례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와 같이 의결한다.

1. 협의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에 있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위원장은 의회의 결정사항중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실무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부의 건설사업정보화 관련정부부처와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주요사항을 협의회에 상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2조에 의한 협의회 기능의 세부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건설사업정보화 관련 정보수집·분석·보급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정보화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4.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검토
5.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장 건설공사 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

**제75조(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인·허가, 입찰·계약,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이하 “건설공사정보”라 한다)의 이용 및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건설공사정보중 건설공사의 시행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와 영 제4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법인·단체의 비밀 또는 권익,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공개대상 건설공사정보의 범위 등)** ① 건설공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3.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별표16에 예시된 정보
-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은 별표17과 같다.

**제77조(정보공개절차 등)** ①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정보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설공사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발주청은 별표18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별표17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건설공사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우송이 곤란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를 열람시키는 것으로 공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청구인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의 공개청구와 발주청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수신을 통해 청구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8조(정보의 공동이용)** ① 발주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 정보는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의 원활한 연계·공유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용 내용중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다.

② 공동이용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제공기관은 당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이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9조(정보통신망의 활용)** ① 발주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해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창구를 통하여 다른 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0조(정보의 연계 및 공유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전자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저장하고 있는 건설공사정보에 대한 연계·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 제1장 일반사항

**제81조(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활용)**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2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의 제정·개정, 연구·조사, DB구축, 해석 및 보급 등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 관리기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독립된 기구(공사비평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83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또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3.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제84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분할급으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8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 기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별표19에 따라 출연금 집행계획을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 제2장 표준시장단가의 관리

**제86조(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2. 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3.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및 건설공사비 지수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법정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다.

**제87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9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 표준시장단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
2. 건설현장의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 등 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
3. 기타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②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8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증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8조(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 공사비산정 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표준시장단가"라 한다)에 대한 심의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을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시장단가를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9조(건설공사비 지수의 관리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비 지수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 종류별 건설공사비 지수를 산출하여 매월 발표하여야 한다.

**제90조(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산출시 지역별·공사별 특수성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표준시장단가를 당해 공사에 적용할 경우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보정기준 범위 내에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정할 수 있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개정 대상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 이전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를 물가 보정하여 당해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할 수 있으며, 물가보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가 구분되는 경우, 노무비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 재료비 및 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
2.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서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89조에 따른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

### 제3장 표준품셈의 관리

**제91조(표준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①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표준품셈의 제정·개정 및 관리(이하 "표준품셈의 제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법개발 등에 따른 표준품셈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특정 항목에 대한 표준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9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 및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안건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한 자는 표준품셈관리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연구를 위한 제반 편의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2조(표준품셈의 제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
2. 표준품셈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3. 표준품셈의 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4. 기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삭제

**제93조(표준품셈의 확정)**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셈 제·개정에 대한 심의안(이하 “표준품셈 심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표준품셈 심의안을 제9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표준품셈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확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품셈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신기술품셈의 관리

- 제94조(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①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1차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설신기술 현장실사에 참석하여 신기술원가계산서 및 건설신기술품셈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⑥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품셈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전까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건설신기술품셈의 확정)**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2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전까지 건설신기술품셈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후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개정 시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품셈의 개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6조(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신기술개발자의 심의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 또는 시방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건설신기술 변경사항 인정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변경내용 확인 후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 확정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이 확정되면 세부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장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

**제97조(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①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에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

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표준시장단가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표준품셈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이하 “그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표준품셈의 제정 등의 필요한 항목 검토
2.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심의
3. 기타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품셈에 관한 사항

**제98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발주청과 민간 동수(同數)로 한다.

②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1.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
2.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연구원 및 건설관련 학과의 교수
3. 발주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건설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5. 기타 건설공사원가에 박식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 ③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 제출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은 별도의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분과위 및 그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술기준과장으로 한다.)으로 하며,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 및 그룹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0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공사비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표준시장단가 관리 및 품셈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표준시장단가 관리 및 품셈업무의 사업결과보고서(출연금 집행실적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편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검사

### 제1장 정의

**제102조(정의)** 제6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 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 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 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2. “발주청장”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상시관리”란 발주청장이 대상사업의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단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라 함은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나. 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 다. 법 제57조에 따른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점검
  - 라.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 마. 법 제38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무 수행사항 검사
  - 바. 국가계약법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확인
  - 사.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점검 또는 조사
5. “점검자”라 함은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피점검자”라 함은 점검을 받는 당사자로서 법인 및 점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기관”이라 함은 점검계획 수립, 점검실시, 점검결과 처리 등 점검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상품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9.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점검장 내에서의 불가피한 교통제공은 제외한다.

## 제2장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제103조(상시관리계획의 수립·보고 및 관리)** ① 발주청장은 매년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시관리계획을 수립 후 제104조제4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에게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책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2. 저가 낙찰(70퍼센트 미만)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3. 특수공법, 대절토사면, 가시설공사 등 안전 취약공종이 포함된 사업
4. 그 밖에 발주청장이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장은 제1항의 상시관리계획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매월 서면점검 또는 필요시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단장에게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관리단의 구성)** ①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도로국, 철도국에 각각 두며 각 관리단별로 점검요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정 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은 제105조제1항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종합 점검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외부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소속직원 등을 포함하여 적정 인원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의 구성은 시공, 토질, 구조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 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장은 도로국장, 철도국장으로 한다.

**제105조(점검의 실시)** ① 관리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별 관리 대상사업 중 주요사업과 발주청의 상시관리 내용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은 업무의 형편 및 점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해빙기·우기·동절기대비 점검 등을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관리단장은 점검계획을 사전에 기술안전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6조(점검방법)** ① 관리단장 및 단원은 법 제54조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관리단장은 점검하려는 현장의 부실시공 우려제기 등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검 3일 전까지 해당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장 및 단원은 점검을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7조(점검결과의 처리)** ① 관리단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별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에 따라 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은 건설안전·품질제도의 개선 검토와 해당 발주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각각 기술안전정책관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기술안전정책관은 반기별로 당해내용을 검토·분석하여 필요시 건설안전·품질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08조(관리단의 책무)** ① 관리단원은 관리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 및 단원은 관리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관리단에서 제외하고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09조(경비지원)** 관리단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제110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어 언론보도된 건설공사
2. 지방국토관리청의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에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신고된 건설공사
3.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 시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지적되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건설공사
4. 저가 낙찰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5. 국책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관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의 구성,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수단의 장(이하 “검수단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1조(검수단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및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요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요원으로 검수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요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의 6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6급 이상 공무원

② 검수단장은 검수단 요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검수단은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완료하는 때에 해산한다.

**제112조(검수단 예비요원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수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한다.

1. 시민단체,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0인 이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 중 30인 이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연구위원급 이상 소속 연구원 중 15인 이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또는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 공항, 수자원, 항만, 철도, 토질, 구조, 시공, 설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요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3조(조사의 실시)** ① 검수단장은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조사요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부실 건설사업관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검수단장은 조사 착수사실 및 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수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조사방법)** ① 검수단은 법 제38조에 따라 조사대상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

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은 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115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검수단장은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장은 조사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별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검수단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중간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6조(검수단 요원의 책무)** ① 검수단 요원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 요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계획 및 검수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검수단 요원은 검수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검수단 예비요원에서 제외하고, 검수단 요원 지정을 취소하며,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17조(경비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수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건설공사의 검사

**제118조(검사의 종류)**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부분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
2. 준공검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하자검사 : 공사의 하자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만료이전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성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
4. 예비준공검사 :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준공 1월전까지 공사주무부서에서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
5. 특별검사 :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제119조(검사원의 제출)** ① 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만료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준공검사는 공사감독자가 공사주무부서에 준공 45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한다

**제120조(검사공무원의 임명)** ① 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원,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접

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공사의 하자보증기간만으로 인한 하자검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일전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및 입회공무원(기성부분 검사 및 하자검사는 생략할 수 있음)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분야의 기술직공무원을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준공검사의 경우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18조제5호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를 행하기 위한 검사관 및 입회공무원의 임명은 발주청이 행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이 검사관 또는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즉일로 전화·전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예비준공검사의 검사관지명 및 예비준공검사는 공사주무부서에서 실시한다.

**제121조(검사관의 임무)** ① 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 라.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 바. 기성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나. 공사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 라.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 마.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 바. 준공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하자검사
- 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
  - 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
  - 다.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 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실제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 ③ 예비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자로 하여금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준공검사관으로 하여금 검사시에 이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2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기성부분검사는 별지 제6호 서식, 예비준공검사는 별지 제7호 서식, 준공검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은 해일등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청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3조(감독조서의 작성)** 공사감독자는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 서류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7.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8.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4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

고,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검사관은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기된 토사와 토석 등을 계약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방출케 하는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6조(준공표지설치확인)** 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를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장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제127조(성실의무 등)** ①제102조제5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공인으로서의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점검자는 항상 창의적인 노력과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점검자로서의 자질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점검자는 항상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8조(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점검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

될 때에는 즉시 점검기관의 장(점검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같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점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9조(특혜의 배제)** 점검자는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학연·혈연 등을 이유로 피점검자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0조(이해관계 점검업무의 회피)** 점검자는 점검업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또는 자신이 2년 이내에 제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피점검자에 해당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점검업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31조(청탁의 배제)** 점검자는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2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점검자는 점검업무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3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점검자는 피점검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134조(점검 계획의 수립)** ①점검에 관한 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기관은 가능한 점검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날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점검계획 및 점검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점검 3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피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 인적사항
4. 점검의 종류 및 방법
5. 점검내용
6. 기타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점검반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점검반의 점검조 편성은 가능한 한 2인 이상 1조로 편성하고, 피점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점검을 수행토록 한다.

⑥점검자는 안전장구 및 점검에 필요한 도구를 휴대하여, 피점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35조(점검자에 대한 교육)**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긴급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전 점검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의 목적

2. 점검과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3. 중점 점검사항
4. 점검자의 점검자세 등 청렴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점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6조(점검 순서 등)** ①점검자가 점검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해 피점검자가 비치하고 있는 방문기록부 등에 서명하고 점검목적, 점검일정, 점검내용, 점검결과 처리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37조(점검업무 수행)** ①점검자는 점검표를 점검에 활용하여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자는 점검수행중 경미한 사항 또는 재해위험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지도할 수 있다.

③점검자는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

④확인서에는 확인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점검자는 확인서 징구 등 점검일정이 종료되면 피점검자에게 점검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8조(이의제기 절차)** ①점검자는 점검 종료시 피점검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확인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점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점검기관의 장은 이의제기가 된 사항에 대하여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점검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9조(점검결과 보고)**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점검계획에 따른 기간 내에 점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0조(점검결과 처리)** ①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 또는 시정지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정지시 등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확인하고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1조(사후관리 등)** ① 점검자는 점검 후 피점검자의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렴한 점검이 이루어졌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자가 이를 실시하였는지 피점검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점검자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피점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문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점검계획 수립 시 이를 보완·반영하여야 한다.

**제14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3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점검자는 피점검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피점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점검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 등이 인도된 경우 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 점검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체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준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43조(징계 등)** 점검자가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점검기관의 장은 당해 점검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점검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4조(업무지도·감독)**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업무수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5조(유사업무 수행자 준용)** 점검기관의 장은 제102조제4호의 점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게 하는 자에게 동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7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제재 사무처리

### 제1장 일반사항

**제146조(처분권자 및 업무)** ① 법 제82조제1항 및 영 제115조에 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국토관리청장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 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

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마.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바. 법 제8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사.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제외

#### 2. 시·도지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 제91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② 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은 건설기술인의 거주지(「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해 신고된 거주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도지사의 권한은 건설기술인의 거주지 또는 건설

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시·도지사의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의 관내를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의 변경 등으로 다른 처분권자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관하고 위반사실을 통보한 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2장 처분요청 대상 선정 및 통보 등

**제147조(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 ①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군복무(현역)기간 중 업체에 재직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
2. 건설기술인의 사망일(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조회 결과 등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후 해당 건설기술인의 입사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증명서(이하 “제증명”이라 한다)가 발급된 경우
3. 건설기술인의 근무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한 4대 보험 등의 증빙자료를 변경하여 2005. 7. 1 이후 신고한 근무처 또는 근무기간을 경정하는 경우
4. 퇴직한 건설기술인의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
5.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경력증”이라 한다)의 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6. 학력 또는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건설기술인이 교육이수 기한내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위법사실을 인정하거나 실명이 확인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
2. 발주청 또는 사법기관 등에서 위법사실을 통보하거나 법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처분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업체가 부도·폐업 또는 면허반납 등으로 처분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건설기술인이 입·퇴사과정상 60일 이내에 이중으로 근무한 경우
3. 과태료부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④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경우(거짓 신고경력을 제외하여 건설기술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건설기술인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통보는 하지 않는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조사대상자의 소재지 불명 또는 확인자료 미제출 등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 제한 사유가 조사대상자 또는 관계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8조(처분대상의 통보)** ①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146조의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47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을 3회 이상 요청(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시행한 경우를 말한다)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문서위조(학력 또는 자격 등), 사법기관의 위반사실 통보, 관계기관 확인 또는 본인 진술 등으로 신고경력이 거짓일

경우 해당 신고경력을 정정(삭제 포함)하고 위반사항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따른 각각의 행정처분(행정형벌을 포함한다) 권한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있는 경우 위반사항을 제146조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처분대상자의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9조(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①** 처분권자는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해 14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태료처분의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관한 사항
2. 과태료처분 이외의 경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관한 사항
3.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

③ 처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또는 등록(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다른 기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소하려는 경우(법 제83조에 따른 청문 실시)
2. 처분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처분권자는 제1항의 의견진술통지서 또는 제3항의 청문안내 공문서가 반송되는 경우 인근 시·군·구청에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협조요청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 한 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위법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자료 재검토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하여 위법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 ⑥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시행할 수 있다.
- ⑦ 처분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견청취 후 처분내용을 확정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121조제1항 별표 11(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및 별표20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또는 가중기준별로 해당되는 사항의 감경 또는 가중범위를 합산하여야 한다.
- ⑧ 처분권자는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짓신고 건수를 참작하여 행정처분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⑨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48조제3항에 의한 처분대상자의 처분내용을 확정된 후 다른 처분권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사실을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송시켜야 한다.
- ⑩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인이 경력증 대여(국가기술자격 대여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을 신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⑪ 처분권자는 과태료 징수절차·가산금 징수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라야 한다.
- ⑫ 처분권자는 제11항에 따라 결정된 위법사실과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⑬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인에게 업무정지를 처분한 경우 경력증을 회수하여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⑭ 처분권자는 영 제115조제3항에 따라 모든 처분결과(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모든 수탁기관에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통보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⑮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을 할 때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46조제1항 별표 6 및 제121조제1항 별표11(시·도지사의 권한에 한한다)]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50조(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적용 및 통보 등)**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별표 6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행정처분업무를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른 행정처분 시 제149조를 준용할 수 있다.

- ② 수탁기관은 제147조에 따라 처분대상 선정과정에서 건설기술인이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거나 업체가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근무사실이 없는 기간의 경력에 대하여는 경정(삭제 포함)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제147조에 따라 처분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또는 면허행위의 위반이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장(대표업종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행정기관장은 위반사실 확인 후 다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

사실을 해당 행정기관에 이송시켜야 한다.

⑤ 한 회사가 수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1건으로 처리한다.

### 제3장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51조(이의신청)** 처분권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1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라야 한다.

#### 부 칙(제정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폐지한다.

1.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
2.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2호)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4.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3호)
5.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6호)
6.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374호)
7.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4-466호)
8.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5호)

**제3조(금지행위 및 감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금지행위 및 감점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가중기준 적용례)** 제149조제7항 별표18 제1호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가중기준은 이 훈령 시행 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1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6.12.0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1.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1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7.12.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6.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1.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4.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중 제28조제1항제4호, 제32조제2항제1호와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전문분야 분류(예시)**

구분	전문분야	세부전공분야
토목분야 (7개 분야)	도로 및 교통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철도	철도계획, 철도설계, 궤도, 관제, 측량 및 측지, 교량
	토목구조	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토질 및 기초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토류 구조물
	수자원, 상·하수도	댐,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 구조물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수처리
	항만·해안	항만, 연안계획, 해안시공, 해양물리, 해양지질, 해양수공
	토목시공 건설관리	토목시공, 건설관리(토목),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분야 (4개 분야)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전시기획
	건축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건축시공 건설관리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설관리(건축),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설비 통신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통신설비, 전자통신, 전자응용, 통신전자제어
공통분야 (1개 분야)	조경·환경	도시계획·설계, 단지계획 및 설계, 지역계획, 경관계획 조경계획·설계, 조경식재,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환경평가
<b>합계</b>	<b>11개 분야</b>	

##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

##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윤리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규정에 의한 위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분과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 3 조 【적용범위】

강령지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관련 분과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4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분과위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분과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과위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분과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심의에서 낙찰된 업체와 관련해서는 1년 이내에는 용역이나 연구, 자문 등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전에 분과위원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분과위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전한 설계심의 조성****제8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분과위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분과위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10 조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위반 시의 조치

### 제11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분과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 【징계】

분과위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영 제22조에서 정한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장 보 칙

### 제13조 【교육】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에 대하여 부패방지과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과위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 예시

전문분야	기술제안 과제	평가요소
토목구조	공사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li> <li>·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li> </ul>
	공기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li> </ul>
	교량유지관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li> <li>·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li> <li>· 비용 산출의 적정성</li> </ul>
	교량가설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관향상, 비용절감 등 제안내용의 적정성</li> <li>·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li> </ul>
	강교용접 등 품질관리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li> </ul>
	특정구조물 개선 (대규모 옹벽, 암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토질 및 기초	공사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li> <li>·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li> </ul>
	공기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li> </ul>
	터널, 사면 등 유지관리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li> <li>·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li> <li>· 비용 산출의 적정성</li> </ul>
	터널굴착 및 버력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터널 지보 및 라이닝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사면처리(안정화 등)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기초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전문분야	기술제안 과제	평가요소
	차수 및 흙막이공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연약지반 처리의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토목시공 건설관리	공정관리 최적화 및 공기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비, 자재, 인력 운영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사업관리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li> <li>·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li> <li>·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li> <li>·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li> </ul>
	지하매설물, 철도, 고압선, 병원, 학교 등 근접시공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li> <li>·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li> </ul>
	공사현장 주변 교통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li> <li>·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li> <li>·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li> </ul>
	공사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 안전시설 계획의 적정성</li> <li>·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li> </ul>
	소음, 진동, 분진, 수질오염, 토질오염, 악취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내용의 적정성</li> <li>·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li> <li>· 가설계획 수립, 공해방지의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공사현장 주변 지반침하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내용의 적정성</li> <li>·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li> <li>·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li> <li>· 가설계획 수립, 공해방지의 적정성</li> </ul>
	공사현장 및 주변 생태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내용의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 부산물 등에 대한 자원재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내용의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자연보호구역 등 희소 동식물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내용의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방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내용의 적정성</li> <li>·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li> </ul>
	공사 가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내용의 적정성</li> <li>·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li> <li>·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li> </ul>
	품질관리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등</li> </ul>

전문분야	기술제안 과제	평가요소
도로	공사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 또는 타당성</li> <li>·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li> </ul>
	공기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와 대책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타당성</li> </ul>
	도로유지관리 비용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li> <li>·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li> <li>· 비용 산출의 적정성</li> </ul>
	포장 평탄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li> <li>·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li> </ul>
	차량소음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li> <li>·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li> </ul>
	균열방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li> <li>·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li> </ul>
수자원, 상·하수도	공사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li> <li>·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li> </ul>
	공기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li> </ul>
	생애주기비용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li> <li>·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li> <li>· 비용 산출의 적정성</li> </ul>
	성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항만·해안	공사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li> <li>·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li> </ul>
	공기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li> </ul>
	생애주기비용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li> <li>·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li> <li>· 비용 산출의 적정성</li> </ul>
	성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전문분야	기술제안 과제	평가요소
건축계획	공사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li> <li>·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li> </ul>
	공기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계획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li> </ul>
	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방법,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li> <li>· 비용산출 적정성</li> </ul>
	성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건축구조	공사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li> <li>·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li> </ul>
	공기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li> </ul>
	생애주기비용 감축 (에너지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li> <li>·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li> <li>· 비용 산출의 적정성</li> </ul>
	건축구조 성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li> <li>·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li> </ul>
건축시공 건설관리	공사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비, 자재, 인력 운영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사업관리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li> <li>·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li> <li>·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li> <li>·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li> </ul>
	거푸집 등 가설공사 안전성 및 시공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ul>
	콘크리트, 철골 등 주요재료 품질 및 성능개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ul>
	마감품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ul>
	가설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li> </ul>

전문분야	기술제안 과제	평가요소
건축설비 통신	공사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li> <li>·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li> </ul>
	공기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li> </ul>
	생애주기비용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li> <li>·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li> <li>· 비용 산출의 적정성</li> </ul>
	각종 설비의 저소음, 저진동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li> <li>·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li> </ul>
	에너지 소비량 절감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li> <li>·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li> </ul>
조경·환경	공사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li> <li>·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li> </ul>
	공기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li> </ul>
	생애주기비용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li> <li>·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li> <li>· 비용 산출의 적정성</li> </ul>
	상징성, 예술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내용의 적용 적정성</li> <li>·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li> </ul>

[별표 4] 기술제안입찰의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

구분	주요내용	일시	주의사항	비고
심의계획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일정 및 평가방법 안내</li> <li>· 질문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 안내</li> <li>· 설명회 발표순서 결정</li> </ul>	평가회의 15일 이전	발주청, 입찰사 참석	
소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 선정</li> </ul>	평가회의 10일전	입찰사 참석	
현장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답사</li> </ul>	평가회의 8~9일전	입찰사 미참석	
공동 제안서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운영계획 설명 (심의기관→심의위원)</li> <li>· 설계내용 설명 (발주기관→심의위원)</li> <li>· 입찰사별 제안서 내용 설명</li> </ul>	평가회의 8~9일전		
기술검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질문 및 업체간 질문항목 확정</li> <li>· 기술제안검토서 검증</li> <li>· 기준위반사항 심의</li> <li>· 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 결정</li> </ul>	평가회의 5일전	입찰사 미참석	
제안서 평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참가업체 설계 설명</li> <li>· 업체간 설계토론회 개최</li> <li>· 보충·추가 질의 및 답변</li> <li>· 입찰사 답변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심의위원)</li> <li>· 기술제안서 검토 및 토론 (심의위원)</li> <li>·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심의 (심의위원)</li> <li>·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li> <li>· 평가결과 공개</li> </ul>	평가회의 당일 (2박3일)*		

\* 평가회의 소요일은 사업평가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5]

설계/기술제안검토서 작성기준

1. 작성기준

-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나. 발주청은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및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 다.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제시 공법·자재 등의 장·단점,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6.1.20>
- 라. 설계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각 업체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7.10.30>
- 마. 관련분야 전문서적·학술논문집·공공기관(연구·시험기관 포함)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 등 객관성이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학위 연구논문·홍보용 자료(팸플렛 등)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바.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사항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하여 작성시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향후 유사 용역 등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 계약

2. 설계검토서의 내용 등(도로공사에 대한 예시)

- 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구조형식·적용공법과 사용자재 등에 대한 장·단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 다. 적용된 각종 설계기준(설계하중·하중조건, 장래교통량, 설계방법, 지반조건 및 물성치, 안정성 검토계수 등)
- 라.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수리·수문, 지반, 교통량, 환경 등)
- 마. 수리·수문검토 내용(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적용계수, 유량결정 등)
- 바. 지질 및 지반조사 방법,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주요 구조물기초 선정시 적용 내용 등
- 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3. ○○공사 설계검토서 작성예시(도로분야)

전문 분야	세부 검토항목	A사		B사	
		제시 내용	관련 근거	제시 내용	관련 근거
도로	○ 사전 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				
	○ 설계기준 적정성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 · 후 접속 검토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토공설계 적정성				
	○ 배수시설 적정성				
	○ 포장설계 적정성				
	○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포장 및 깎기, 쌓기 사면의 유지관리 용이성				
구조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기타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 -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구조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				
	○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				

전문 분야	세부 검토항목	A사		B사		
		제시 내용	관련 근거	제시 내용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li> <li>○ 발파패턴의 적정성</li> <li>○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li> <li>○ 갯문형식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li> <li>○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li> <li>○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li> <li>○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li> <li>○ 지진에 대한 안전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li> <li>○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li>○ 기타</li> </ul>					
토질 및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li> <li>○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li> <li>○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깎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li> <li>○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공법 평가</li> <li>○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li>○ 기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li> <li>-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li> <li>-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li> <li>○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li> </ul>				

전문 분야	세부 검토항목	A사		B사	
		제시 내용	관련 근거	제시 내용	관련 근거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기타				
환경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 기타				
조경	○ 조경계획의 적정성				
	- 공간구조의 효율성				
	- 친환경적인 식재계획				
	○ 기타				
전기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기타				
기계설비	○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				
	○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기타				

[별표 6]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도로 및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li> <li>○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li> <li>○ 토공계획의 적정성</li> <li>○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의 적정성</li> <li>○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나들목/분기점 형식 및 접속계획의 적정성</li> <li>○ 교통수요 분석의 적정성</li> <li>○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토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설계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li> <li>○ 구조물계획(교량, 지하차도 등) 수립의 적정성</li> <li>○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li> <li>○ 부대시설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li> <li>○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수리, 수문분석, 세굴방지 대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토질 및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li> <li>○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li> <li>○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물 계획</li> <li>○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li> <li>○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li> <li>○ 발파패턴의 적정성</li> <li>○ 터널 지보설계의 적정성</li> <li>○ 갯문형식, 위치의 적정성</li> <li>○ 터널형식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li> <li>○ 터널 방배수 및 부대시설의 적정성</li> <li>○ 가시설 설계의 적정성</li> <li>○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li> <li>○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토목시공 건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li> <li>○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li> <li>○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건축설비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li> <li>○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li> <li>○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li> <li>○ 터널 환기시설 계획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li> <li>○ 에너지 절감계획</li> </ul>	
조경·환경·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계획의 적정성</li> <li>○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li> <li>○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도로설계의 적정성</li> <li>○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터널 등)</li> </ul>	
총 계		100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li> <li>○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li> <li>○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계획의 적정성</li> <li>○ 기초설계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건축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계획수립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li> </ul> </li> <li>○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li> <li>○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li> <li>○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기계 및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 시스템 계획</li> <li>○ 위생, 냉난방 및 소방 설비계획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li> <li>○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ul>	
전기설비·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 시스템 계획</li> <li>○ 방재, 통신 및 조명 설비계획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li> <li>○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및 향후 확정성</li> </ul>	
토목 및 조경·환경·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의 적정성</li> <li>○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li> <li>○ 흙막이 및 기초계획</li> <li>○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li> <li>○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ul>	
총 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별표 7]

##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도로 및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li> <li>○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li> <li>○ 토공계획의 적정성</li> <li>○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의 적정성</li> <li>○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나들목/분기점 형식 및 접속계획의 적정성</li> <li>○ 교통수요 분석의 적정성</li> <li>○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토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설계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li> <li>○ 구조물계획(교량, 지하차도 등) 수립의 적정성</li> <li>○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li> <li>○ 부대시설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li> <li>○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수리, 수문분석, 세굴방지 대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토질 및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li> <li>○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li> <li>○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물 계획</li> <li>○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li> <li>○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li> <li>○ 발파패턴의 적정성</li> <li>○ 터널지보공 적용의 적정성</li> <li>○ 갯문형식, 위치의 적정성</li> <li>○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li> <li>○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토목·시공 건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li> <li>○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li> <li>○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li>○ 사회적 가치실현</li> </ul>	
건축설비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li> <li>○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li> <li>○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li> <li>○ 터널 환기시설 계획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li> <li>○ 에너지 절감계획</li> </ul>	
조경·환경·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계획의 적정성</li> <li>○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li> <li>○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도로설계의 적정성</li> <li>○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터널 등)</li> </ul>	
총 계		100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철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철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li> <li>○ 철도 기능에 부합한 설계의 적정성</li> <li>○ 열차운행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공사용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li> <li>○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li> <li>○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토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설계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li> <li>○ 구조물계획(교량, 정거장, 지하구조물 등) 수립의 적정성</li> <li>○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li> <li>○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li> <li>○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공사 중, 공용 중 민원을 고려한 구조물 설계</li> <li>○ 관련계획 및 관련분야를 고려한 구조물 설계</li> <li>○ 친환경 구조물설계 방안</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토질 및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li> <li>○ 가시설 설계의 적정성</li> <li>○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li> <li>○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li> <li>○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li> <li>○ 터널형식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li> <li>○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li> <li>○ 터널 지보설계의 적정성</li> <li>○ 터널 갯문형식, 위치의 적정성</li> <li>○ 터널 방·배수설계 및 부대시설의 적정성</li> <li>○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물 계획</li> <li>○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토목시공 건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li> <li>○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li> <li>○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li>○ 사회적 가치실현</li> </ul>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선 특성을 반영한 배선계획 수립 여부</li> <li>○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li> <li>○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 수립 여부</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건축물 설계의 작품성 및 창의성</li> <li>○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li> <li>○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한 구조 적용 시스템 적합성</li> <li>○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li> <li>○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li> <li>○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조경· 환경·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계획의 적정성</li> <li>○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li> <li>○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철도설계의 적정성</li> <li>○ 경관설계의 적정성(교량, 터널, 건축물 등)</li> </ul>	
전철·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전철·전력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li> <li>○ 전철·전력분야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li> <li>○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li> </ul>	
신호·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신호·통신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li> <li>○ 신호·통신분야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성</li> </ul>	
기계·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li> <li>○ 방재(소화, 피난, 구난 등) 계획의 적정성</li> <li>○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li> </ul>	
총 계		100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수자원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수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의 부합성</li> <li>○ 수리·수문 분석의 적정성</li> <li>○ 시설물(댐, 하구둑 등) 설치계획의 적정성</li> <li>○ 하천정비계획의 적정성</li> <li>○ 주변시설물 및 주민의 안전성 고려 여부</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li> <li>○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li> <li>○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토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구조물 구조설계 기준 수립 적정성</li> <li>○ 주요구조물 안전성 및 내구성 등</li> <li>○ 구조재료 특성평가 및 적용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토질 및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반특성을 반영한 주요시설물 설계의 적정성</li> <li>○ 토질 특성 분석의 적정성</li> <li>○ 주요시설물 기초 처리계획의 적정성 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li> <li>○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토목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li> </ul> </li> <li>○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li> <li>○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li> <li>○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li>○ 사회적 가치실현</li> </ul>	
기계 및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li> <li>○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li> <li>○ 에너지 절감방안,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li> </ul>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환경 및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li> <li>○ 경관계획의 적정성</li> <li>○ 조경 및 생태환경 시설계획의 적정성</li> <li>○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li> <li>○ 환경 친화적인 설계의 적정성</li> </ul>	
총 계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항만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항만 및 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평면계획의 적정성</li> <li>○ 단면선정의 적정성</li> <li>○ 구조물 세부설계의 적정성</li> <li>○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의 적정성</li> <li>○ 부대시설의 적정성</li> <li>○ 준설 및 매립계획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토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구조물 단면계산의 적정성</li> <li>○ 구조물 부재 및 재료설계의 적정성</li> <li>○ 가시설물의 안전성</li> <li>○ 인접 구조물 안전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토질 및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반조사 및 토질정수의 산정의 적정성</li> <li>○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기초지반처리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li> <li>○ 계측계획의 적정성</li> <li>○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토목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li> <li>○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li> <li>○ 부대시설의 적정성</li> <li>○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li>○ 공사관련 계약관리의 적정성</li> <li>○ 사회적 가치실현</li> </ul>	
해상교통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해상교통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공사중 해상교통 안전성 확보 방안</li> <li>○ 해상교통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li> <li>○ 해상사고 대책방안의 적정성</li> </ul>	
해양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해저 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해양 보존을 고려한 시설계획의 적정성</li> <li>○ 해양환경 보전의 적정성</li> <li>○ 해양 구조물 및 자원 이용의 적정성</li> </ul>	
환경 및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li> <li>○ 친수성 시설계획의 적정성</li> <li>○ 환경 친화적인 항만설계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li> <li>○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ul>	
총 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li> <li>○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li> <li>○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건축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계획의 적정성</li> <li>○ 기초설계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ul>	
건축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li> </ul> </li> <li>○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li> <li>○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li> <li>○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li>○ 사회적 가치실현</li> </ul>	
기계 및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 시스템 계획</li> <li>○ 위생, 냉난방 및 소방 설비계획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li> <li>○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전기설비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 시스템 계획</li> <li>○ 방재, 통신 및 조명 설비계획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li> <li>○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및 향후 확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토목 및 조경·환경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의 적정성</li> <li>○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li> <li>○ 흙막이 및 기초계획</li> <li>○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li> <li>○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ul>	
총 계		100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공항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공항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의 적정성</li> <li>○ 설계기준 및 평면배치의 적정성</li> <li>○ 포장계획의 적정성</li> <li>○ 배수계획의 적정성</li> <li>○ 공항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li> <li>○ 토공계획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li> <li>○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토질 및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반조사 및 토질정수 산정의 적정성</li> <li>○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기초지반(침하대책)의 검토 적정성</li> <li>○ 비탈면 계획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li>○ 사회적 가치실현</li> </ul>	
토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물계획 수립의 적정성</li> <li>○ 구조설계의 적정성</li> <li>○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li> </ul>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토목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li> <li>○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li> <li>○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li> <li>○ 건축구조의 적정성</li> <li>○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li> <li>○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기계/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급유시설의 적정성</li> <li>○ 기계설비 설계의 적정성</li> <li>○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li> <li>○ 항공등화시설의 적정성</li> <li>○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li> </ul>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li> <li>○ 정보통신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li> <li>○ 정보통신시설 계획의 적정성</li> <li>○ 항행안전무전시설 계획의 적정성</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li> <li>○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li> </ul>	
총 계		100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상하수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상하수도	처리장/ 하수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li> <li>○ 설계 기준의 적정성</li> <li>○ 처리공정 선정 및 시설물 계획</li> <li>○ 부대시설계획</li> <li>○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기술이전, 시운전계획</li> <li>○ 관로정비 개선방향</li> <li>○ 관로정비 계획수립의 적정성</li> <li>○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성</li> <li>○ 저탄소 녹색성장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정수장/ 상수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li> <li>○ 설계 기준의 적정성</li> <li>○ 처리공정 선정 및 시설물 계획</li> <li>○ 부대시설계획</li> <li>○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기술이전, 시운전계획</li> <li>○ 관로계획의 적정성</li> <li>○ 관로정비의 적정성</li> <li>○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성</li> <li>○ 저탄소 녹색성장 도입의 적정성</li> <li>○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li> </ul>	
토목시공 건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li> <li>○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li> <li>○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li> <li>○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li> <li>○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li> <li>○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li> <li>○ 사회적 가치실현</li> </ul>		
토질 및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반조사 계획 및 결과분석(설계지반정수)의 적정성</li> <li>○ 굴착방법 선정 및 가시설의 안정성</li> <li>○ 구조물 및 관로 기초계획의 적정성</li> <li>○ 지하수 처리계획</li> <li>○ 지장물 및 인근구조물에 대한 안정성</li> </ul>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토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설계 제반기준 수립의 적정성</li> <li>○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설계의 적정성</li> <li>○ 방수 및 방식계획의 적정성</li> <li>○ 기타 시설물 계획</li> <li>○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li> </ul>	
건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의 적정성</li> <li>○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li> <li>○ 건축계획의 적정성</li> <li>○ 건축구조계획의 적정성</li> <li>○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li> </ul>	
조경· 환경·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계획의 적정성</li> <li>○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li> <li>○ 경관설계의 적정성(건축 등)</li> </ul>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 및 설비 구성의 적정성</li> <li>○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li> <li>○ 건축기계설비 설계의 적정성</li> <li>○ 설비의 경제성 및 합리성</li> </ul>	
전기 및 계측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li> <li>○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li> <li>○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li> <li>○ 설비의 유지관리 및 안정성</li> </ul>	
총 계		100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스마트건설기술을 전문분야로 별도 평가시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적용기술별 평가항목		배점기준
	단계별	평가항목	
스마트 건설기술	계획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주기별 BIM 적용 계획의 적정성</li> <li>○ 건설 주기별 스마트건설기술 활용계획의 적정성</li> <li>○ 시설물 설치 계획과 스마트건설기술의 연관성</li> <li>○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목표와 기대효과(생산성, 안전성 등)</li> <li>○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에 따른 장애요인과 대응방안</li> </ul>	10점 ~ 20점
	설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M 설계 모델의 활용 수준(시공, 공정, 안전, 품질 등)</li> <li>○ 설계분야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정도</li> <li>○ 설계분야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기대효과 등</li> </ul>	
	시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분야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정도</li> <li>○ 시공분야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한 공정/안전/품질관리의 적정성</li> <li>○ 시공분야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li> </ul>	
	유지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단계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정도</li> <li>○ 유지관리단계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유지관리 용이성, 사용자 편의성·안전성 등)</li> <li>○ 설계/시공단계의 스마트건설기술 데이터 활용 정도</li> </ul>	

## [별표 8]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 1. 일반기준

- 가. 기술제안서는 제시된 기술제안 분야에 대하여 공사비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그밖에 발주청에서 정한 사항 등의 과제목록(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술제안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평가항목별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나. 정부의 계약제도 및 건설관련법규, 최근 정부 제정 각종 지방서 및 기준에 의하여 제안 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련 지방서 및 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제안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 공법, 특허자재 적용을 검토 반영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 필요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 라. 신기술, 특허 및 특정 공사방법을 채택할 경우 기술권에 대하여는 하도급 계약 등의 처리 및 기술사용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운영 등에 있어 별도 관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마. 기술제안자는 기술제안으로 인·허가 및 각종 협의(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청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바. 안전과 관련된 기술제안은 기술적 통용이 가능한 안전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사. 기술제안자는 제공된 지반조사보고서 및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제안자 부담으로 지반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아. 품질관리비는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시험에 따른 시험비용과 기술제안에 따라 변경된 공법 및 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 자. 본 공사에 대해 낙찰자가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제시하였을 경우 제시한 단축 공사기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 차. 기타 발주청이 제안 받고자 하는 기술제안 내용, 성능기준 및 관련지침 등을 제시한다.

## 2. 제안도서 작성 세부기준

- 가. 기술제안 관련 제출도서는 기술제안요약서, 기술제안서(별지 제 3호 서식 참조), 부속서류, 산출내역서, 기술제안 설명자료(발표 자료) 등으로 제출부수와 쪽수를 정하여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제출도서의 규격, 지질 및 제본방식, 표지, 목차, 본문 등의 구성순서, 번호 부여방법, 글자색, 글자체, 글자크기, 줄간격 등은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작성세부내용에 따라야 한다.
- 다.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 등의 외국어 또는 외래어로 표기한다.
- 라. 모든 제안서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 마.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아. 제출한 기술제안서 등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로

제출받지 아니한다. 단, 평가위원의 질문서에 의한 답변서는 제출할 수 있다.

- 자. 기술제안요약서는 관련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여 심의·평가 시 기술제안 요약서만으로도 제안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 별도로 제본하고 표지는 기술제안서의 표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한다.
- 차. 각종 통계나 연구자료를 인용할 때는 발췌, 참고문헌을 각주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며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된 자료를 사용한다.
- 카. 기술제안에 대한 증빙 및 보충자료가 부속서류 등에 첨부되어 있을 때는 관련 페이지를 해당 기술제안서 하단에 명기한다.
- 파. 제출도서는 원칙적으로 흑백인쇄만 허용하되, 필요시 칼라도면의 내용 및 개수, 형식 등을 별도로 제시한다.

### 3. 산출내역서 작성지침

- 가.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비용 관련 증빙자료이며 실시설계내역의 내용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산출물량, 금액 등 기술제안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산출내역의 항목별 내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다. 산출물량은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한 적정수량으로 한다.
- 라. 산출금액은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한 적정비용으로 한다.
- 마. 법정경비율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적용한다.
- 사. 기술제안으로 지급자재의 수량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술제안 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자재 금액을 산출하며 변동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기술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 아. 기술제안으로 지급자재를 대체하는 신규자재가 발생할 경우는 일반자재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고 해당 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은 감한다.
- 자. 산출내역에 대한 주요내용(수량, 금액 등)은 기술제안서의 해당 항목 편에 명기한다.
- 차. 기술제안서 평가 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 타. 필요시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별표 9]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목록

번호	자료명	비고
일반사항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2	공사설명서	
입찰에 관한 사항		
3	입찰서 목록	
4	공사입찰 유의서	
5	기술제안입찰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에 관한 사항		
6	공동계약 운용기준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8	공사계약 일반조건	
9	공사계약 특수조건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술에 관한 사항		
11	설계지침	
12	시공지침	
1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평가에 관한 사항		
16	평가기준	
17	배점표	
18	평가지침	
19	감점기준	
참고		
20	내역서 등 참고자료	

## [별표 10] 감점기준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

##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2. 감점 부과방법

가.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 다.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 라. 제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
- 마.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한다.
- 바.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한다.
- 사.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3. 감점 적용방법

- 가.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른 위원회의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 감점기간 등은 감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다.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 라.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 4. 감점 취소

- 가. 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별표 11]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예시)

1. 도로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2	공사설명서	
3	입찰서 목록	
4	공사입찰 유의서	
5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6	공동계약 운용기준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8	공사계약 일반조건	
9	공사계약 특수조건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11	설계지침	
12	시공지침	
13	설계도서 작성지침	
14	공사관리지침	
15	공사관리도서 작성지침	
1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17	설계배점표	
18	설계평가방식	
19	감점기준	
20	토질조사 보고서(단, 노선의 미확정 등으로 활용성이 낮은 경우 생략가능)	

## 2. 철도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2	공사 설명서	
3	입찰서 목록	
4	공사계약 일반조건	
5	공사계약 특수조건(1)	
6	공사계약 특수조건(2)	
7	청렴계약 특수조건	
8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9	사업자료 작성 및 제출 표준요건(특별시방서)	
10	설계지침	
11	시공지침	
12	설계서 작성지침	
13	관리지침	
14	관리계획서 작성지침	
15	입찰서 평가기준	
16	입찰서 감점기준	
17	기본계획보고서	
18	기본계획설계도면 등	
19	지질조사 자료	

## 3. 수자원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2	공사입찰 유의서	
3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번호	자료명	비고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5	공사계약 일반조건	
6	공사계약 특수조건	
7	청렴계약 특수조건	
8	기계경비 지수조정 특수조건	
9	설계지침	
10	시공지침	
11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보고서	
12	입찰도서 작성지침	
13	지질조사 자료	
14	설계시공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기준	

#### 4. 항만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2	공사설명서	
3	입찰서 목록	
4	공사입찰 유의서	
5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6	공동계약 운용기준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8	공사계약 일반조건	
9	공사계약 특수조건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11	설계지침	
12	시공지침	

번호	자료명	비고
13	설계도서 작성지침	
14	공사관리지침	
15	공사관리도서 작성지침	
1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17	설계배점표	
18	설계평가방식	
19	감점기준	
20	기초자료 조사용역(지질조사, 측량보고서, 구조검토서 등) 보고서 등	
21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서류	
22	수중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3	현장설명서 자료배포	

## 5. 건축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2	공사설명서	
3	공사입찰유의서	
4	계약에 관한 사항	
5	설계 및 시공지침	
6	설계도서 작성지침	
7	관리지침	
8	입찰양식 및 평가기준	
9	부록(토질조사)	

\* 입찰비용 경감을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시스템은 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부터 구축토록 입찰안내서에 명시

[별표 12]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

1. 도로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설계보고서	
2	설계요약보고서	
3	지반해석보고서	
4	터널해석보고서(터널 존재시)	
5	설계도	
6	공사관리계획서	

2. 철도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기본설계 보고서	
2	기본설계 요약보고서	
3	기본설계도면	
4	선로 종단면도	
5	선로 평면도	
6	구조 등 각종계산서	
7	지반해석보고서	
8	사업수행계획서	
9	산출내역서	

## 3. 수자원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기본설계보고서	
2	기본설계 요약보고서	
3	지반해석보고서	
4	설계도면	
5	공사관리계획서	

## 4. 건축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기본설계 보고서	
2	설계도면	
3	실시설계 계획서	
4	지반해석 보고서	
5	공사관리계획서	

## 5. 항만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설계도면	
2	기본설계 보고서	
3	기본설계 설명서	
4	지반해석보고서	
5	공사관리계획서	

[별표 13]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

소관부서	건설기준명	코드	관련단체
13개	48종(설계기준 20, 표준시방서 19, 전문시방서 9)		
기술안전정책관	공통 설계기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DS 10 00 00 KCS 10 00 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 설계기준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KDS 11 00 00 KCS 11 00 00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콘크리트 설계기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KDS 14 20 00 KCS 14 20 00	한국콘크리트학회
	강구조 설계기준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KDS 14 30 00 KCS 14 30 00	한국강구조학회
	내진설계기준	KDS 17 00 00	한국지진공학회
	가설 설계기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KDS 21 00 00 KDS 21 00 00	한국건설가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시정책관	공동구 설계기준 공동구 표준시방서	KDS 11 44 00 KCS 11 44 00	한국시설안전공단
	조경 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DS 34 00 00 KCS 34 00 00	한국조경학회
도로국 철도국	교량 설계기준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KCS 24 00 00 KDS 24 00 00	한국도로협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학회
	터널 설계기준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KDS 27 00 00 KCS 27 00 00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학회
건설정책국	설비 설계기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DS 31 00 00 KCS 31 00 00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건축정책관	건축 구조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DS 41 00 00 KCS 41 00 00	대한건축학회
도로국	도로 설계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KDS 44 00 00 KCS 44 00 00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학회
철도국	철도 설계기준 철도공사 표준시방서	KDS 47 00 00 KCS 47 0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학회
국토정책관	하천 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KDS 51 00 00 KCS 51 00 00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소관부서	건설기준명	코드	관련단체
환경부	댐 설계기준 댐공사 표준시방서	KDS 54 00 00 KCS 54 00 00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 설계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KDS 57 00 00 KCS 57 00 00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 설계기준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KDS 61 00 00 KCS 61 00 00	한국상하수도협회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KDS 64 00 00 KCS 64 00 00	한국항만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공사표준시방서	KDS 67 00 00 KDS 67 00 00	한국농어촌공사
<b>■ 전문시방서</b>			
소관부서	건설기준명	코드명	관련단체
토지정책관	LH 전문시방서	LHCS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국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KRCS	한국도로협회
철도국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KRACS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학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 전문시방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서울특별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CS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댐 및 상수도공사 전문시방서	KWCS	한국수자원공사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KPCS	한국항만협회

[별표 14]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제42조제2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국가건설기준센터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한다)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관리기관에서 지급하는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한다.
	연구장비·재료비	1.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2. 전산재료·시험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작품(試作品)·시험시공·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1. 국가건설기준센터 당해연도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장비·재료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개인용 컴퓨터 및 부속은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세부운영계획서 승인 등)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된다.

비 목	세 목	사 용 용 도	계 상 기 준
	연 구 활 동 비	1.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숙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시험시공,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1. 위탁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위탁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국외 출장여비는 위탁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 구 과 제 추 진 비	1.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1. 위탁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위탁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위탁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국가건설

비 목	세 목	사 용 용 도	계 상 기 준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한다) 4.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 업무추진과 관련된 식대	기준센터 운영 사업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 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 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 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 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 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4. 회의비는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되 는 식대, 다과 등 회의부대경비를 말한다.
	연 구 수 당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수 행과 관련된 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 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미지급인건비 등을 포함한다)의 20퍼 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 탁 연 구 개 발 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 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 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국가건 설기준센터 운영 사업 직접비(위탁 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비 목	세 목	사 용 용 도	계 상 기 준
간 접 비	간 접 비	<p>1. 인력지원비</p> <p>가.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p> <p>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p> <p>2. 연구지원비</p> <p>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p> <p>나.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실 협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p> <p>다. 연구보안관리비: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에 필요 경비</p> <p>라.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 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p>	<p>1. 위탁기관의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인 경우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p> <p>2. 위탁기관의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인 경우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p> <p>3.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4.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p>

비 목	세 목	사 용 용 도	계 상 기 준
		<p>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p>3. 성과활용지원비</p> <p>가. 과학문화활동비: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p> <p>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 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p>	

[별표15]

## 기술사용요율표

신기술공사비	기술사용요율(%)
1억원 이하	8.5
2억원	8.3
5억원	8.0
10억원	7.5
20억원	6.8
50억원	6.0
100억원	5.0
100억원 초과	3.5

[별표 16]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정보 (예시)

분 야	내 용
실시설계	설계방침서, 과업수행계획서, 설계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각종 영향평가보고서, 예산현황, 사업별 투자계획서, 계획노선 및 교차로 계획, 주민의견 조치결과 등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착수	도로구역결정고시등 각종 인허가서, 용지 및 지장물조서, 건설사업관리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산출서, 공사계약서, 착공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서, 현지어건조사결과, 가시설물설치계획서 등
품질·안전관리	품질시험계획, 건설사업관리단검토의견서, 품질시험결과, 품질시험검사대장, 시공실태점검결과서, 검측체크리스트, 검측결과서, 매물부분검사서, 매물부분사진, 주요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 정기안전점검결과, 정기 안전교육 결과, 분기별 안전관리실적보고 등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일지, 조직도, 작업공정표, 공법설명서, 장비·노무동원계획, 자재조달계획, 공사예정세부공정표, 정기 공정보고, 현장실정보고, 공사중지 명령·보고서, 주요자재검사, 현장실정보고, 설계변경요청서, 변경설계도면, 설계변경시방서, 변경계약서 등
환경관리	환경관리대장, 환경관련평가서, 비산먼지·소음·진동등 환경관련 신고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 등
공사기성 및 준공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공사기성 건설사업관리조서, 예비준공검사결과서, 준공검사원, 준공설계도면, 준공건설사업관리조서, 시공단계사진앨범,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안전관리점검총괄표, 사용재료총괄표, 매물부분검사기록부, 준공검사조서, 준공사진첩 등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운영지침서, 시운전결과보고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기자재구매서류, 공사관련기록부, 시설물인수·인계서, 건설사업관리일지, 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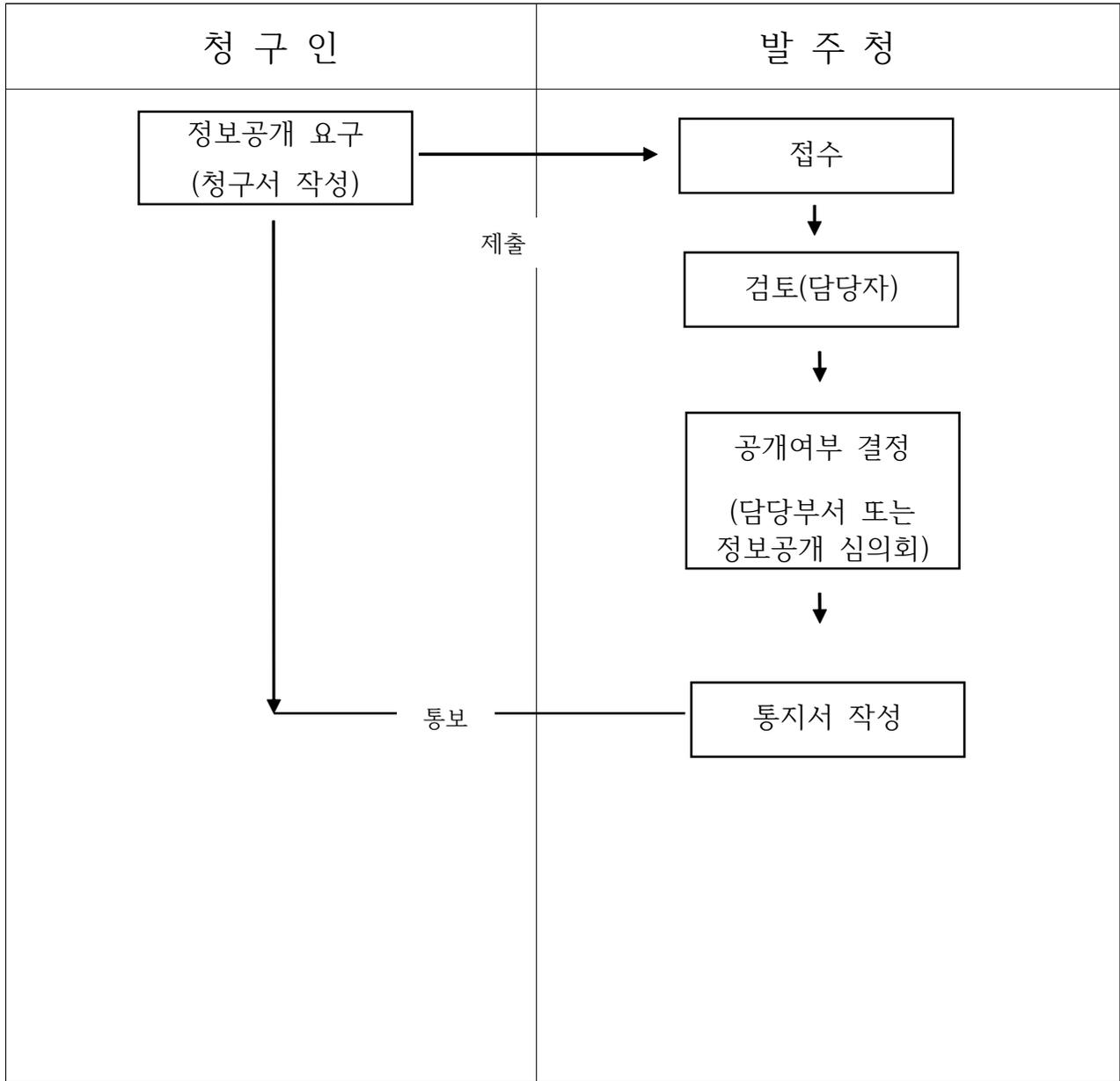
※ 비고 :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 [별표 17]

##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

등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li>- 국민의 안녕과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li>-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li> <li>-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ul>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등의 설계도면 및 사업계획 등과 관련한 정보</li> <li>- 법인 등으로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취득한 정보</li> <li>- 입찰계약·기술개발 과정에 있는 정보 등</li> </ul>
제한적 공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li> <li>-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li>-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li> <li>- 공개될 경우 지적소유권 등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li> </ul>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계획서</li> <li>- 자격증 사본 등 개인에 관한 정보</li> <li>- 사업계획서, 예산내역서 등 법인·단체의 고유한 기술력이 포함된 정보</li> </ul>
공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개 및 제한적 공개 이외의 건설공사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정보</li> </ul>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개 및 제한적 공개 이외의 정보</li> <li>-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및 제한적 공개의 필요가 없어진 정보</li> </ul>

[별표 18]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 비고 : 정보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발주청은 동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 [별표 19]

##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제85조제2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한다)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관리기관에서 지급하는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한다.
	연구장비·재료비	1.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2. 전산재료·시험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작품(試作品)·시험시공·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1. 공사비산정기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장비·재료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개인용 컴퓨터 및 부속은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사업계획서 승인 등)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된다.

비 목	세 목	사 용 용 도	계 상 기 준
	연 구 활 동 비	1.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공사비산정기준 관리운영 사업 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시험시공,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1.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국외 출장여비는 관리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 구 과 제 추 진 비	1.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1.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관리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공사비

비 목	세 목	사 용 용 도	계 상 기 준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 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 업무추진과 관련된 식대	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 수행을 위한 예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 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예비 규정」에 따라 계상 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 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 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4. 회의비는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 되는 식대, 다과 등 회의부대경비 를 말한다.
	연 구 수 당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수 행과 관련된 연구원의 보상금·장 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 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한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 탁 연 구 개 발 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 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 으로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비 목	세 목	사 용 용 도	계 상 기 준
간 접 비	간 접 비	<p>1. 인력지원비</p> <p>가.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p> <p>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p> <p>2. 연구지원비</p> <p>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공사비 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p> <p>나.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실 협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p> <p>다. 연구보안관리비: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에 필요경비</p> <p>라.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p>	<p>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p> <p>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p> <p>3.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4.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p>

비 목	세 목	사 용 용 도	계 상 기 준
		<p>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p>3. 성과활용지원비</p> <p>가. 과학문화활동비: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p> <p>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p>	

[별표 20]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금액의 감경·가중 기준**

1.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1) 감경기준

-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의 업무정지에 대하여는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감경사유	감경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한 때	1/4
위반내용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직원은 제외한다)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	1/4

2) 가중기준

- 업무정지 기간과 각 업무정지 가중기준에 따라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한다.

구분	가중사유	가중
위반건수	서로 다른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때	무거운 처분기준의 1/6가중
	동일한 위반 행위의 횟수가 둘 이상일 때	1/6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때	1/6
위반내용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1/6

- \* 위반건수 가중은 무거운 처분기준과 가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각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을 가중

## 2. 과태료

### 1) 감경기준

구분	감경사유	감경
처분횟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	1/4
위반동기및 건수	당해 위반행위가 단순한 경과실로 인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2건 이하인 때	1/4
자진납부	의견진술 기간에 자진 납부하는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8조)	부과될 과태료 의 1/5

- \*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가중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감경 또는 가중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추가로 감경. 다만, 감경기준 해당 여부를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감경사유를 입증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함

### 2) 가중기준

구분	가중사유	가중
처분횟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 인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1/4
위반동기및 건수	당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3건 이상인 때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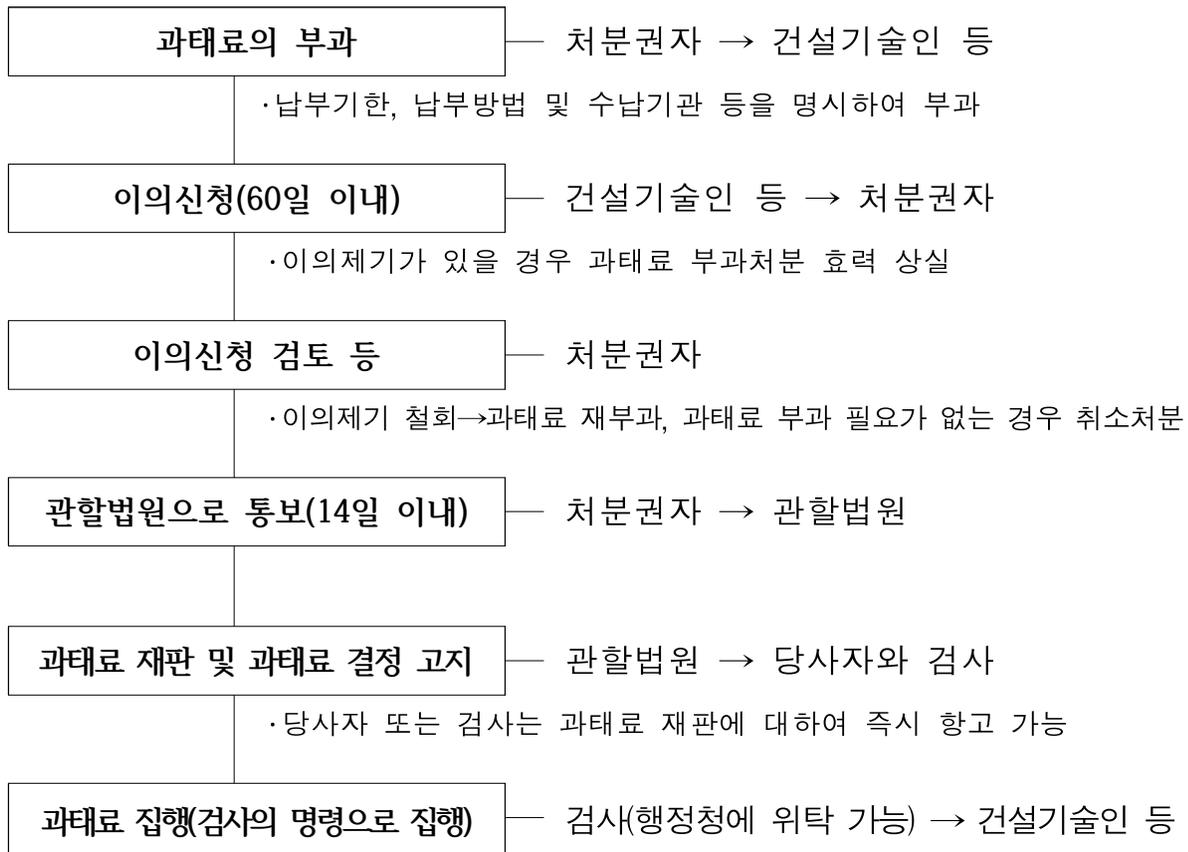
[별표 2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권자 및 제출기관

- 1) 이의신청권자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그 대리인
- 2) 제출기관(처분권자) :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2. 처리절차



### 3. 처분권자 처리요령

- 1) 이의신청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징수
- 2) 이의신청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 처리내용 통지 등 조치.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과태료 부과 취소처분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 그 내용을 통지
- 3)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며 행정청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한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 규정 참조

### 4. 행정심판과의 관계 등

- 1)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당한 자가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 재심사하는 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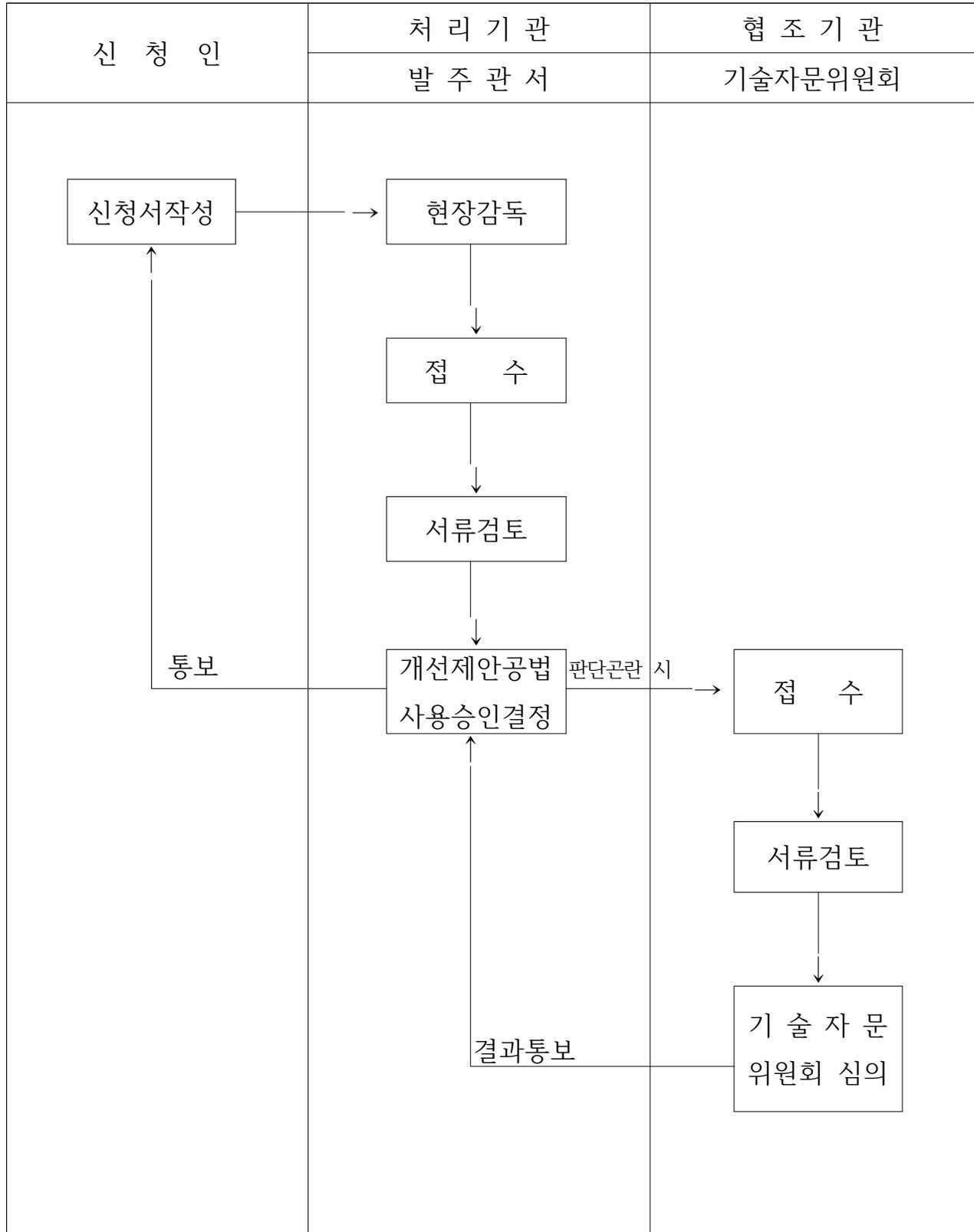
가.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직근상급청이 당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있다.

나.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재결청이 되어 당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공사비절감제안서

제안서번호

공 사 명		현장대리인	
개선자명			
개 선 안 내 용	개 선 전		개 선 후
구 분		공 사 비	비 고
공 사 비 내 용	A	개 선 전	
	B	개 선 후	
	C	절감액(A-B)	
	D	절감율(C/A×100%)	
개 선 안 특 징	장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 개선제안공법승인(기각) 내역서

분야	제안서번호	개선안명	절감액	승인여부	승인하지 아니한 사유

## [별지 제4호서식]

## 건설기술심의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건 명	
-----	--

심의요청인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심의, 건설공사의 설계심의(기본설계, 실시설계),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설계·시공일괄입찰심의, 대안입찰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심의, 기타공사), 건설기준심의, 기술개발보상심의 및 신기술지정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 기 술 제 안 평 가 심 의 요 청 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공 사 명	
-------	--

발 주 청	
제출년월일	201 . . .

※ “구분”란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처리결과( 년)

발 주 처 :

공사명	공사위치	신청자	개선제안공법개요	절감금액	인정여부	제출일	결정일

발주관서의장

인

[별지 제6호서식]

##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

1. 공사명 :

2.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예시)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 00교(길이=2000m): 00억원
  - .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 . 기 타 : 00억원
- 교 통 량 : 대/일(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기술제안 평가에 필요한 사항

## [별지 제7호 서식]

조 치 결 과 서

지적위원	① 한글4자이내(이하자수만표시)	지적분야	② 8
지적사항및 조치사항	③ 지적사항 : 280		
조치결과 :			

지적위원	4	지적분야	8
지적사항및 조치사항	지적사항 : 280		
조치결과 :			

※ 참 고 : 고딕체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① 지적위원 : 해당 지적사항을 지적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② 지적분야 : 지적사항의 분야를 기입한다.

지적사항 분류는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 분류를 사용하며 해당 심의위원이 소속된 분야를 기입한다.

③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적된 사항 및 조치한 결과를 기입한다.

[별지 제8호서식]

##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결과

### 1. 조치건수

구 분	조치 내용	조 치 가 능			전문가의 자문, 자료보완, 정밀검토후 조치	착공후 공사중 반영	조치곤란	비고
		조치완료		계				
		적정	미흡					
건축계획분야	건		건					
건축구조분야	건							
	건							
계	건	건	건	건	건	건		

※ 조치내용, 조치가능, 조치곤란에는 건수를 기입

※ 조치완료(적정)외에는 2항의 양식에 의거 구체적인 향후조치계획 또는 곤란사유를 작성 제출

### 2. 향후조치예정인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

#### 가. 조치완료중 미흡

구 분			지적내용	구체적인조치계획	비고
분야별	건수	지적번호			
건축계획분야 (○○○위원)		○ 번항			
계					

#### 나. 전문가의 자문, 자료보완, 정밀검토후 조치할 사항

구 분			지적내용	구체적인조치계획	비고
분야별	건수	지적번호			
건축계획분야 (○○○위원)		○ 번항			
계					

다. 착공후 공사중 반영

구 분			지적내용	구체적인조치계획	비고
분야별	건수	지적번호			
건축계획분야 (○○○위원)		○ 번항			
계					

라. 조치곤란

구 분			지적내용	구체적인조치계획	비고
분야별	건수	지적번호			
건축계획분야 (○○○위원)		○ 번항			
계					

3. 종합조치결과

구 분	지적내용	조치내용	비 고
건축계획분야 (○○○위원)			
계			

※ 구분 : 해당분야 및 위원 기입

※ 비고 : 관련근거, 해당도면등 기입

## [별지 제9호서식]

## 평 가 요 령 서

## 가. 일반사항

공 사 명 :	감 리 자 :
공사개요 :	계약금액 :
시 행 청 :	공사기간 :
시 공 자 :	현장대리인:

## 나. 평 가 서

구 분	평 가 내 용	반영정도	참고자료
1. 심의결과 조 치	가. 지적사항의 시공반영	(수, 우, 미, 양 등으로 표시)	(참고서류 사본, 도면 등 첨부)
2.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심의 지적 사항의 시공반영 나. 심의대상인 설계변경 현황		
3. 신 공 법 적 용	가. 법에 의한 신공법적용 나. 기타 신공법적용		
4. 시공수준	가.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등의 수준		

[별지 제10호서식]

제 · 개정규정(조례) 현황

위원회명 : ○○ 지방(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 분	규정(조례)명	제정(개정)일	주요골자	비 고

(주) : 1. 구분은 제정 또는 개정을 표시한다.

2. 제 · 개정 규정(조례)내용을 별도로 첨부한다.

## [별지 제11호서식]

## 지방(특별)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위원회명 : ○○ 지방(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야	공사명 (용역명)	공사개요	공사 금액	용역 금액	입찰 방법	심의일	심 의 위원수	발주 기관	비고

- (주) : 1. 분 야 :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전기설비공사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공사개요 : 공사규모, 구조의 종류 등을 기재한다.  
 3. 공사기간 : 월단위로 표시한다.  
 4. 입찰방법 : P.Q, P.P,기술가격분리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으로 표시한다.  
 5. 발주부서 : 시(도),국, 과단위까지(전화번호 포함) 기재한다.  
 6. 설계심사이외의 심의실적(사후관리평가, 기술진단등)은 별도로 첨부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가. 의 안 명 :

나. 참석위원 :

성 명	서 명

다. 회의내용 : (별첨)

위 원 장

(인)

## 회 의 내 용

가. 안 건 명 :

나. 회 의 일 시 :

다. 회 의 장 소 :

라. 심의의결사항 :

마. 회의진행사항 :

[별지 제13호서식]

## 청 럽 서 약 서

○ 사업명 :

본인은 위 사업 입찰공사의 설계심의분과위원(심의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 윤리행동강령을 엄수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별지 제14호서식]

## 심의위원별 설계 평가 채점표(예시, 3개사 참여시)

□ 안전명 :

□ 기본설계평가(토목시공 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세부배점	세부평가
○ 시공 계획수립의 적정성		미표시*	•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1위 <input type="text" value="○○사"/> 2위 <input type="text" value="△△사"/> 3위 <input type="text" value="□□사"/>
		-	• 토공, 기초공, 교량공, 포장공 등 주요 공종 시공계획의 적정성 1위 <input type="text" value="□□사"/> 2위 <input type="text" value="△△사"/> 3위 <input type="text" value="○○사"/>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 계획수립의 적정성		-	•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 1위 <input type="text" value="○○사"/> 2위 <input type="text" value="△△사"/> 3위 <input type="text" value="□□사"/>
		-	• 공기단축 방안 수립의 적정성 1위 <input type="text" value="○○사"/> 2위 <input type="text" value="△△사"/> 3위 <input type="text" value="□□사"/>
		-	•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1위 <input type="text" value="○○사"/> 2위 <input type="text" value="△△사"/> 3위 <input type="text" value="□□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상기 동일방법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상기 동일방법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상기 동일방법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상기 동일방법
소 계			
합계			

\* 세부배점은 평가위원들에게 미공개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설계평가 사유서

○ 안 건 명 :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평가 사유서
토목시공 (10)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별지 제15호1서식]

##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산정표(양식)

□ 안전명 :

□ 기본설계평가(전문분야) : 도로 및 교통

전문 분야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평가지표내 우선순위	세부 배점
도로 및 교통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3점)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미표시
		.측량, 골재원, 지장물 등 기초자료 조사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기준 등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5점)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교차로 계획		"
		.최적 노선의 경제성(B/C)		"
		.용지편입, 민원발생 최소화 등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4점)	.평면선형 설계의 적정성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평면 및 종단선형의 조화성				
토공계획의 적정성(3점)	.절토 및 성토의 균형			
	.사토처리 계획의 적정성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의 적정성(3점)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시설 규격의 적정성			
	.교통안전을 고려한 노면배수 용이성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3점)	.포장단면 및 형식, 평탄성 확보 등			
	.편의성 증대를 고려한 부대시설			
	.교통안전시설 배치, 교통사고 방지대책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4점)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년 월 일

발주청(입찰참여업체) 대표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기술 제안서

제안번호	00분야 - 00	기술적 과제	
제안제목			
제안내용	원안(필요시 개략도면 포함)		제안(필요시 개략도면 포함)
특징 (장단점)			
기대효과	공사비	LCC	성능
			품질
			공기
		기타	
	* 위의 칸에는 ↑, ↓, - 중 택일(기타효과는 개략적으로 작성)		
	○ 각각의 기대효과에 대한 산출근거 및 구체적인 증빙 (단, 공사비 절감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은 표시하지 않음)		
	○ 검증방법 - (시공 중이나 준공 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방법)		
제안의 적정성	○ 기술적 적합성 ○ 연계성 ○ 시공성		
근거 자료			

[별지 제17호서식]

## 기술제안서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평가대상	00 공사명
평가분야	분 야
소위원	(인)

평가 분야	평가항목(기술제안과제)	배점	업체별 평가점수			
			A사	B사	C사	D사
	합	계				

※ 항목별 평가배점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에 따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 기술제안서 평가사유서

○ 안 건 명 :

평가분야	평가항목(기술제안 과제)	평가 사유서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참가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술제안서 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 설계심의 감점 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설계심의 감점 심의

건 명	
-----	--

심의요청기관	
제출연월일	

## < 건 명 >

###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총공사비 :

### 2. 추진경위

- 턴키 등 기술형입찰 발주 및 심의 완료시까지 주요일정 등 작성

### 3. 신고 내용

- 신고접수일 :
- 신고대상 :
- 신고내용 :

### 4. 발주청(기관) 검토내용

- 사실여부 확인내용  
발주청에서 신고서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 조사내용을 작성
- 검토결과 : 감전 대상 여부 및 부과감전·감전기간 작성

### 5. 기타 참고사항

신고서 원본(신고자 인적사항은 제외),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참가업체 현황 및 접수 등 참고사항

[별지 제20호서식]

##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

번호	심의일	신기술명 (지정번호)	신기술 개발자				공사개요			심의결과요약	비고
			법인명 (개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공사명	신기술 공사비	계약 형태		

[별지 제21호서식]

#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일:      년      월      일

## 1. 신기술 및 공사개요

신 기술 명				(지정번호 :      )	
기술개발자					
공 사 개 요	발주자			시공자	
	개발자 참여형태	<input type="checkbox"/>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input type="checkbox"/>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input type="checkbox"/> 자재, 장비 납품			
	공사명 (계약명)	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 하도급 공사명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현장주소				
	총공사비		원	신기술 공사비	
	총공사기간		~	신기술 공사기간	

## 2. 활용 평가

평가시기	<input type="checkbox"/> 준공 <input type="checkbox"/> 하자 보수공사 준공
------	---

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가				
			매우우수 (1.0)	우수 (0.9)	보통 (0.8)	미흡 (0.7)	매우미흡 (0.6)
공사비절감	시공비 절감	10					
	시공중 관리비 절감	10					
	타공종의 공사비 절감에 기여	5					
공기단축	공정단순화	10					
	기계화시공(인력 감축)	10					
시공성	시공용이성	10					
	신기술시방서 준수	10					
	타공종과 간섭 축소	5					
	인력 및 장비 적시 투입	10					
품질향상	내구성 향상	10					
	시공목적물의 완성도	10					
	시공상의 하자 저감	10					
친환경성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 상태	5					
	환경관련 민원 저감	5					
안전성	안전사고 저감 효과	10					

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 점	평가				
			매우우수 (1.0)	우수 (0.9)	보통 (0.8)	미흡 (0.7)	매우미흡 (0.6)
보급활용성	타 현장에 추천	10					
	협력사와의 분쟁 발생 저감	5					
	안전사고 저감	5					
계		150					

※ 해당란에 ○표

### 3.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 사항)

--

### 4. 신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

### 5. 작성자 및 확인자(비공개)

평가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 ※ 1. 감리현장: 평가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자(발주청 담당자)  
 2. 발주청 직접 감독현장: 평가자(공사관리관), 확인자(직 상급자)

[별지 제22호서식]

표준시장단가 축적서식

1) 총괄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 접 공 사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li> <li>• 산재보험료</li> <li>• 고용보험료</li> <li>• 국민연금보험료</li> <li>• 건강보험료</li>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li> <li>• 환경보전비</li> <li>• 공사이행 보증수수료</li> <li>•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li> <li>•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li> <li>•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li> <li>•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등)</li> </ul>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2)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자료

공종코드	공종명칭	단 위	수 량	단 가			비 고
				예정단가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 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대상공종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별지 제23호서식]

##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을 위한 작성서식

## I. 신청자 정보

작성기관		부 서	
성 명		전 화	
팩 스		이 메 일	

## II. 신청 신기술 개요

## 2-1. 신기술명

## 2-2. 신기술 개요

\* 귀사의 신기술 개요와 기존기술과의 차이를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신기술의 범위

\* 신청서 상 귀사의 신기술 고유범위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Ⅲ. 신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는 신기술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신기술의 고유영역을 독립적인 시공프로세스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대상 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1 시공절차 비교표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b>비교대상 기존기술 설명</b>	* 비교대상 기술의 적정성 설명
기존기술 명 : 기존기술 특성 및 신기술 대체 적정성 - - -	

\* 비교대상 기술은 아래 유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신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기술특성 보유

\*\*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특허기술 또는 기존 신기술

\* 표준품셈 : [www.kict.re.kr](http://www.kict.re.kr) → 국토교통전자정보관 → 공사정보 → 건설공사표준품셈

## [작성예시]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b>예시1) 참고하고 있는 표준품셈 상세히 제시</b>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토목 6-3-2 합판거푸집 (구체화 필요)	
	②특수시트 부착	자사기준	○
②거푸집 조립	③거푸집 조립	토목 6-3-2 합판거푸집 (4회)	
③콘크리트 타설	④콘크리트 타설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타설 (무근 50㎡미만)	
<b>예시2) 신기술 영역 세분화 제시</b>			
③ 말뚝시공	③ 말뚝시공 - 일렬말뚝 - H말뚝 - 캡형 유공강판보강재 사용	- 신기술 고유영역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시공절차 분리 필요	
↓	↓		
③ 말뚝시공	③ 말뚝시공-일렬 H말뚝		
-	④ 캡형 유공강판보강재		○

## 3-2 시공절차 비교표 설명자료

“3-1 시공절차 비교표”에 제시하신 기존기술 및 신기술 시공절차의 세부 항목별 설명 자료를 사진 또는 도해(圖解) 등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V. 신기술 원가산정기준

### 4-1 시공절차 세부항목별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

(단위)

시공절차 세부항목 <sup>①</sup>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sup>②</sup>	출처 <sup>③</sup>
	품명	규격			

[주<sup>④</sup>] ①

②

③

자사기준 적용 품 설명	* 자사기준 적용항목에 대한 간략한 사유 설명
가. 항목명 : 유 형 : 조정사유 : 조정내용 :  나. 항목명 : .....	

#### \* 자사기준 적용 품 유형

- \*\* 1. 현장실사에 의한 조사 값 적용 : 실사내용(조사기준) 간략 설명
- \*\* 2. 유사 관련 기준 응용 : 응용한 품 기준 및 증감사유 설명
- \*\* 3. 개발 또는 신규장비 적용 : 손료산정기준 설명

① “3-1 시공절차 비교표”의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 중 복수의 세부항목이 1개의 정부 표준품셈과 대응되는 경우는 출처가 동일한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모두 기입(아래 예시 첫칸)
- 표준품셈 복수 항목을 조합하여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구성한 경우,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을 표준품셈 단위로 분개하여 출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

② 소요량 적용기준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시 적절하게 양식변경 또는 별지 사용

③ 정부 표준품셈이 있는 항목은 표준품셈의 부문, 장-절-항 표시, 표준품셈 없는 경우는 출처 (자사기준 등) 기술

④ 주기사항은 제시한 품의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등, 설계시 참고사항을 명확하게 기술

## [작성예시]

(㎡)

시공절차 세부항목①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②	출처③
	품명	규격			
①거푸집제작	합판		㎡	0.47 (3회 기준)	표준품셈 토목, 6-3-2 합판거푸집
	각재		㎡	0.018(3회 기준)	
③거푸집조립	...				
	형틀목공		인	0.10 (3회 기준)	
...	...				
②특수시트부착	시트재료		㎡	1.252	자사기준
	보통인부		인	0.042	
...					

[주] ① 본 품은 소운반 및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② 동바리 재료 및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수중에서 거푸집을 조립·해체할 때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자사기준 적용 품 설명(예시)

\* 자사기준 적용항목에 대한 간략한 사유 설명

- 항목명 : ②특수시트부착

유 형 : 유사 관련 기준 응용(관련품셈 건축 13-6-1 합성고분자 시트)

조정사유 : 현행품의 경우 방수공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공이 단순화되어 보통인부로 시공 가능

조정내용 : 방수공 삭제, 현행품셈 방수공+보통인부 투입기준(0.6인) 품의 70%를 보통인부에 적용

\* 장비개발의 경우 기계경비(손료, 운전경비, 장비가격) 기준 제시

\* 재료의 경우 할증포함 여부 제시

\* 공구손료기준(공구 종류)제시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 설계심사 및 운영  
**4-2 신기술 일위대가(신청 신기술과 기존기술 분리하여 작성)**  
 표준안

시공절차 세부항목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단가			금액 (소요량×단가)				단가출처	비고
	품명	규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계**													

- 굵은 실선 안은 “4-1 시공절차 세부항목별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현행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 시공절차별로 일위대가 작성
- 단가출처
  - \* 자재비 : 물가정보지 해당월 기재(예, 물가정보 10월)
  - \* 노무비 : 표준품셈 적용 기준 제시(예, 2012년 하반기), 자체기준 인 경우
  - \* 경 비 : 경비산정기준월 제시(2012년 10월)
- 비고 : 원가계산서상 해당 page 기입
- \*\* 계 : 금액(소요량×단가)의 합계를 기재

## [별지 제24호서식]

## 원가계산서 적정성 검토서식

□ 신청 신기술명(관리번호          호)

## I. 신기술 분류

기존공법 보완	자재/재료/장비 개발(보완)	독립기술	기타

## II. 신청 신기술 시공절차 및 고유영역

1) 시공절차 적정성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3) 표준품셈 관련항목(장,절,항)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4) 비교대상 기존기술의 적정성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5) 신청 신기술 고유영역 적정성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보완사항	* 번호별로 사유 및 보완내용 설명

### III. 신청 신기술 원가산정 적정성

1) 3-1의 시공절차 별 세부항목과 일치여부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2) 출처(품셈)제시여부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3) 현행 품셈과 비교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4) 적용단위 제시여부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5) 간접비 등의 적정성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6) 일위대가와 일치 여부 - 항목, 수량, 단위 등의 적정성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7) 적용단가, 신규자재, 노임단가의 적정성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8) 수량산출 및 할증 등의 적정성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9) 기존 기술과의 공사비 비교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10) 신기술 범위내에서 작성여부	적정( )	보완필요( )	제시필요( )

<b>보완사항</b>	* 번호별로 사유 및 보완내용 설명

<b>기타의견</b>	* 해당 항목별 종합검토의견 제시

년      월      일

검토기관 :

검 토 자 :

(인)

[별지 제25호서식]

점 검 요 원 증

증 명  
사 진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사람은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중앙품질관리단운영규정)에 의하여 품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90mm×60mm

[별지 제26호 서식]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요원증

증 명  
사 진

소 속 :

직급 및 직위 :

성 명 :

위 사람은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별지 제27호 서식]

공사기성부분검사원(제 회)

공사감독자경유 (인)

- 1. 공 사 명 :
- 2. 위 치 :
- 3. 계 약 금 액 :
- 4. 계약년월일 :
- 5. 착공년월일 :
- 6. 준 공 기 한 :
- 7. 현 재 공 정 : . . . . . 현재 %
- 8. 첨 부 서 류 : 공사기성부분내역서, 기성부분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 발견시에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귀 하

## [별지 제28호 서식]

##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자경유 (인)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년 월 일 :
5. 착 공 년 월 일 :
6. 준 공 기 한 :
7. 실 지 준 공 년 월 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하자 책임기간내에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 발견시에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귀 하

[별지 제29호 서식]

하자보수준공검사원

공사감독자경유 (인)

- 1. 공 사 명 :
- 2. 위      치 :
- 3. 계 약 금 액 :
- 4. 계약년월일 :
- 5. 준공년월일 :
- 6. 하자보증금 :
- 7. 하 자 기 간 :      .   .   .   ~   .   .   .
- 8. 하자발생금액 :
- 9. 하자보수준공년월일 :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으므로 검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결과 하자가 있을 시에는 즉시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귀 하

## [별지 제30호 서식]

##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공 사 명 :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 제 회 기성부분검사의 명을 받아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공사에 대하여 그 기성공정을 %로  
 조정함.

단, 수중 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공사감독자 감독조서에 의거함

년 월 일

기성부분검사관 (인)

입 회 원 (인)

귀 하

[별지 제31호 서식]

예 비 준 공 검 사 조 서

공 사 명 :

년 월 일 준공예정  
년 월 일 과 계약분

위 공사 예비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년 월 일 검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예비준공검사결과

년 월 일

예비준공검사관 (인)

귀 하

예비준공검사 결과		
공사명 :		
지적내용	시정해야할 사항	비 고



[별지 제33호 서식]

공사감독자 기성부분 감독조서  
준 공

공 사 명 :

년 월 일 과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자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지 현장 감독한 결과(제 회 기성부분검사까지의)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공사의  
%가 기성(준공) 되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공사감독자 (인)

귀 하

[별지 제34호 서식]

소 명 서				
소 명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비    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200 . .</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span>소 명 인</span> <span>(서명)</span> </div>				













[별지 제40호 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인 제재처분 현황

월말 현재

구분	위반 내용	합계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 취소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비 고
	합 계							
건설 기술인								
건설기 술용역 업자								
건설 업체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1호(2019.02.25)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3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이하 “낙찰자결정방법”이라 한다)을 심의할 때 적용한다.

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 “대형공사”라 한다)
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
3.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
4.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공기단축공사”라 한다)
5.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는 공사로서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스마트건설공사”라 한다)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① 발주청장은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공사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이하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시공일괄 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로 집행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제출
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3.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②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한다.

1. 별표 1의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입찰방식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
3.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

③ 발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의2 제3항 각 호의 낙찰자결정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때 별표5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시공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장은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심의를 요청하려면 대안구간 또는 제안대상구간이 시·중점부에 위치하는 등 원안구간과 분할할 수 있고 원안구간의 규모가 최저가낙찰 공사 발주대상인 경우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장은 별표1의 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전에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
2.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3.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난이도 높은 기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4.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이 누락되는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한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받은 집행기본계획서 중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

가.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다.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

2. 대안입찰 :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다.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5. 설계·시공 분리입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심의를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 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입찰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제3조제7항에 해당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 완료되었는지 여부

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

4. 분리 도급(발주)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검토한 결과,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공사의 특성, 현지 여건, 공사관리 역량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아닌 기타공사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 예정시기를 조정하도록 발주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낙찰자결정방법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낙찰자결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별표5의 낙찰자결정방법 심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3. 낙찰자결정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 등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결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2. 입찰가격 조정 방식
3. 설계점수 조정 방식
4. 가중치 기준 방식
5.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제5조제1항제1호의 입찰방법인 경우에만 해당)

**제6조(입찰방법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 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등)**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운영·관리 등)** ① 위원은 가능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관리대장 및 심의 회의록(서면으로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 심의의견서 등으로 갈음 가능)을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입찰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입찰방식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추진할 경우, 영 제86조에 따른 사후평가 시 입찰방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주청 제시 설계내용과 낙찰 설계내용을 비교한 정량적 추정치 산정 결과서(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공기단축, 품질 향상 효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효과)를 실시설계 완료 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내용과 비교

2. 기본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설계 내용과 비교

3.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실시설계 내용과 비교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심의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8.4.23>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

①(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고시일 이전에 적용하던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94호 (2008.4.23)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2009.8.2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9>

(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lt;2010.12.24&gt;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 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입찰방법 심의된 공사 중 아직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장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lt;2013.4.12&gt;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lt;2013.7.22&gt;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lt;2014.5.23&gt;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lt;2015.8.25&gt;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lt;2016.00.00.&gt;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일괄·대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도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 이상) 및 경간장 100m 이상 (철도교량은 70m 이상)인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li> <li>▪ 일반터널(3,000m 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li> <li>▪ 댐(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배수갑문</li> <li>▪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li> <li>▪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li> <li>▪ 철도(철도차량기지)</li> <li>▪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li> </ul>
건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공동주택</li> <li>▪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li> <li>▪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li> </ul>
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처리시설</li> <li>▪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li> <li>▪ 가스공급시설</li> <li>▪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li> </ul>

##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m 이상(한 경간 교량은 제외), 연장 500m 이상,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li> <li>▪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500m 이상</li> <li>▪ 도로터널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li> <li>▪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li> <li>▪ 항만 : 높이(기초 포함) 30m 이상 및 설계파랑 5.0m 이상 해상구조물, 연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시설</li> <li>▪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홍수전용댐</li> <li>▪ 하천 :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강변여과 취수시설(10만톤/일 이상)</li> <li>▪ 상수도 : 광역상수도, 공업상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li> <li>▪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li> <li>▪ 철도(철도차량기지)</li> <li>▪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li> </ul>
건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신공법 적용이 필요한 공동주택(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li> <li>▪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li> <li>▪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li> </ul>
플 란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1만톤/일 이상 하수·폐수 처리시설</li> <li>▪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li> <li>▪ 가스공급시설</li> <li>▪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li> </ul>

## [별표 2]

##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1. 여러 공종(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의 동시입찰이 필요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때</li> <li>2) 복합공종으로서 설계·시공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li> <li>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li> <li>▪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li> <li>▪ 설계·시공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공사비 (설계·시공 분리입찰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불리 사항 비교)</li> <li>▪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li> <li>▪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li> <li>▪ 적용공법에 따른 공종간의 연계성 변화 정도</li> <li>▪ 공종간의 연계성에 따른 효율보증 검증용이 정도</li> <li>▪ 법적 운영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금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사항</li> </ul>
2.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li> <li>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때</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li> <li>▪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li> <li>▪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li> </ul>
3. 설계VE,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li> <li>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li> <li>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li> <li>▪ 해외 신기술 국내 도입 필요성</li> <li>▪ 적용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정량적 추정치 비교(공기분석, 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등)</li> <li>▪ 원안과 예측 가능한 대안의 정량적 추정치 검토(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성능 등)</li> </ul>
4.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li> <li>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li> <li>▪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li> <li>▪ 준공 또는 공사중인 현장주변의 사례 및 조화 적정성</li> </ul>

[별표 3]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p>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p>	<p>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 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p> <p>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p>	<p>1)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축의 정도(준공시점 설정사유,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등)</p> <p>2)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자계획</p> <p>3) Fast-Track 실시 및 가능성 여부</p> <p>4)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시행 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 (세부적인 공기산출 내역제출, 실적공정 자료 포함)</p>

## [별표 3의 2]

## 스마트 건설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 ①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설계와 시공단계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을 설계 및 시공단계 전 과정에 적용하는 경우</li> <li>2) 시공 전 과정에 자동화된 건설기계 운용 및 통합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li> <li>3)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시설물 점검·진단의 자동화,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 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단계에 기술 적용이 필요한 경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필요성 (해당기술 채택 사유)</li> <li>2) 설계와 시공단계 전 과정에 적용하는지 여부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인 적용은 제외)</li> <li>3)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시 예상되는 변화 및 효과 검토(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품질, 안전, 유지관리 경제성 등)</li> <li>4) 시설물 유지관리 고도화 및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를 위해 설계 및 시공과정에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li> <li>5) 설계와 시공 분리발주시, 해당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이 불리한 지 여부</li> </ol>

## ② 스마트 건설기술의 주요 대상기술

스마트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M기반 스마트 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BIM설계 자동화)</li> <li>▪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건설기계 자동화, 건설기계 통합 운영 및 관제)</li> <li>▪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ICT기반 현장 안전 사고 예방기술, BIM기반 공사관리, 모듈화 또는 프리패브방식에 의한 시공)</li> <li>▪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기반 시설물 진단)</li> <li>▪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및 표준화, AI기반 최적 유지관리)</li> </ul>
--------	---

[별표 4]

### 대상공사 선정기준별 우선 입찰방식(안)

발주공사 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발주방식 (우선순위)			
	기본계획완료 후		실시설계완료 후	
	일괄	기본설계 기술제안	대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I. 여러 공종의 복합공사로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1)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	○	△	○	△
2)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	○	△	△
3) 연계공종간 책임이 불분명	○	○	△	△
II.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설비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 되어지는 때	△	○	△	○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 능과 품질보증이 요구	△	○	△	○
III. 설계VE, 신기술·신공법 적용등 경제적인 대안이 필요				
1) 경제적인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	○	△	○
2) 신기술·신공법 적용으로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	○	△	○	△
3) 공기,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 하는 경우	△	○	△	○
IV.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1) 가격 외에 시공자 기술, 창의적 요소 반영이 필요	△	○	△	○
2) 국가, 지역적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	△	○	△	○
V.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	△	-	○
VI. 설계와 시공·유지관리 전반에 스마트 건설기 술을 적용하는 경우				
	○	○	-	-

\* (검토시기) 발주청이 입찰방법 심의 요청전 공사수행방식 결정시 활용하고, 입찰방법 심의시 발주청 결정사항에 대해 적절여부 검토

\* (평가기준) 별표2 및 별표3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발주방식 우선 순위에 따라 “○”와 “△”로 구분 후, “○”가 많은 발주방식을 우선 적용  
발주방식 우선 순위를 달리할 경우, 발주청은 현장여건 및 사업여건과 발주방식간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 [별표 5]

##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 선정기준

## ① 낙찰자 결정방법 종류

종 류		낙찰자 결정방법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설계 적합자 중 최저가 입찰자
종합 평가 방식	입찰가격조정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설계점수조정	▪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가중치기준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일괄입찰만 적용)		▪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② 낙찰자 결정방법별 적용기준

- 낙찰자 결정방법은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감안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정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선정기준」을 따름

## (1)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 설계기준이 정형화되어 있고 비용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 단순반복 공사 등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

## (2) 입찰가격 조정/설계점수 조정방식 : 비교적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에 있어 비용절감,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 (3) 가중치 기준방식 : 시설물의 사용 목적 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 (4)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로서, 고난이도 기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공사 또는 창의성·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국가 랜드마크 시설 공사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1호서식]

## 집행기본계획서

구분	내용
① 발주기관	
② 공사명	
③ 공사 개요	
④ 총공사비(추정금액)	
⑤ 공사기간	
⑥ 공사위치	
⑦ 입찰예정시기	
⑧ 입찰방법	
⑨ 낙찰자결정방법	
⑩ 제안사유	
⑪ 사업효과	
⑫ 심의개최 요청시기	

**【작성요령】**

-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 말 것
-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 ④ 추정금액 명시(단위: 억 원) : 보상비 제외, 부가세 포함
-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 ⑥ 공사위치 명시
- ⑦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 예정시기만 기재
- ⑧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입찰방법 명시
  - 다만, 대안입찰(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또는 기술제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 ⑨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낙찰자결정방법 명시
- ⑩ 입찰방법 제안 핵심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 ⑪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개략적으로 명시
  - (일괄, 대안,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방법을 통해 얻고자하는 기대효과를 추가적으로 명시)

##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별지 제1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 집행기본계획서 세부현황

#### 1. 위치도 또는 도면

####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00교(길이=2000m) : 00억원
  -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 기 타 : 00억원
- 교 통 량 : 대/일(목표년도 년도)

####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 4. 추진경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 6.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

입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중 택일</li> <li>*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li> <li>*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이 필요한 구간, 공종 또는 분야</li> </ul>												
입찰방법 심의요청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발주공사유형별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li> </ul>												
공사의 목적 및 특성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 수립한 시설물(추정공사비)과 입찰시 예상되는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li> <li>- 기타공사 대비 공사기간 단축 예측치 비교 제시</li> </ul> </li> <li>○ 대안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설계 내용과 대안예상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li> </ul> </li> <li>○ 기술제안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단축, 사업관리, LCC, 사업비, 성능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원설계와 비교제시</li> </ul> </li> </ul>												
입찰방법별 장단점 비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검토항목</th> <th style="width: 25%;">심의요청 입찰방법</th> <th style="width: 25%;">타 입찰방법1</th> <th style="width: 35%;">타 입찰방법2</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가능한 다른 입찰방법과 비교하여 심의요청하는 입찰방법이 필요한 사유를 검토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항목을 구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신공법 필요성 : 일반적인 공법으로 시공가능한지 여부 등</li> <li>- 개선된 설계안 도출가능성 : 원안설계(일괄입찰의 경우 기본계획)와 비교검토하여 더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li> <li>- 별표2 내지 별표3의2 의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 중 입찰방법을 제안하는 핵심적인 사유 : 사유별 구체적 비교검토</li> <li>- 사업추진 소요예산기간 분석 비교</li> </ul> </li> </ul>	검토항목	심의요청 입찰방법	타 입찰방법1	타 입찰방법2	1.				2.			
검토항목	심의요청 입찰방법	타 입찰방법1	타 입찰방법2										
1.													
2.													
입찰방법 제안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li> </ul>												
사업추진간 타 기관 등과의 협의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간 민원발생가능성,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작성</li> </ul>												
심의대상시설 발주실적 (최근 10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요청 대상시설이 포함한 건설공사의 발주실적과 입찰방식 표기</li> <li>○ 과거 일괄·대안공사 시행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제시하였던 사업일정 계획과 실제 집행일정의 비교제시(계획대비 지연된 경우 사유제시)</li> </ul> </li> </ul>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별표 2, 3, 3의2)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													

(4쪽 중 제3쪽)

입찰방법 관련 총괄검토의견	* “별표” 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기재
1. --	
2. --	
낙찰자결정방법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 가중치기준방식,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중 택일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	
낙찰자결정방법 관련 총괄검토의견	

※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기본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표와 함께 별도 첨부

공종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 필요 사유	사업비 (억 원)
	내용	반영사유		

- 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기술제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표와 함께 별도 첨부

공종	실시설계		대안 또는 기술제안 필요 사유	사업비 (억 원)
	설계내용	반영사유		

-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란에 기재
- 공기단축을 사유로 입찰방법을 제안하는 경우 패스트트랙(Fast-track) 실시 여부 및 이에 따른 설계·시공 분리입찰과의 공기비교표, 공기단축을 위한 예산확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 스마트 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건설기술과 효과를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여 별도 첨부

### 7.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자체 평가표(“예시” )

입찰방식 : 일괄(심의 대상시설 :4,000m 터널)

발주공사유형	대 상 공 사 선 정 기 준	평가기준		자체평가(%)						평가 점수
		평점	가중치 (%)	A (100)	B (90)	C (80)	D (70)	E (60)	미제출 (0)	
여러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시행이 필요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고기술 요구	60	50		✓					27.0
	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30		✓					16.2
	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 명확		20	✓						12.0
			100							55.2
공급자의 직접 설계·시공이 필요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 요구	30	100			✓				24.0
상징성·예술성· 창의성 요구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 요구	10	50		✓					4.5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 필요		50		✓					4.5
			100							9.0
평 점										88.2
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			-5							-
최종평점			100							88.2

\*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등급	자 체 평 가 기 준
A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B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C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D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E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8. 분리 도급(발주) 검토

- 심의요청한 전체공사 중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공사 포함 여부:
- 분리 도급(발주) 예외 해당 여부:
  - ※ 심의요청한 전체공사 중 분리 도급(발주)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분리 도급(발주) 해야 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분리 도급(발주) 해당부분의 공사는 입찰방법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 분리 도급(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근거 및 사유: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1호의3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 별도 붙임

5. 분할 시공 불가능 사유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관련증빙 자료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 심의

건명	○○○○ 건설공사 등 건
----	---------------

발 주 청	
제출년월일	20 . . .

## 1. 심의주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2. 제안사유

○○ 시행부서 등에서 집행계획인 ○○ 공사 등 ( )건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 3. 관련규정

-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이 참고할 규정을 기재

## 4.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요청 사항(총괄표)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총공사비 추정금액( 억원)	발주기관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예정
				심의 요청	심의 의결	심의 요청	심의 의결	
1.								
2.								

### 【작성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등 참조

## 5. 건별 설명자료 따로붙임(00공사 예시참조)

※ 건별설명 자료는 붙임 예시를 참조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  
사용 가능

붙임 : 건별 설명자료

## 1. ○ ○ 건설공사

### 1. 위치도 또는 도면

### 2. 사업개요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추정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의 연속성, 하자보수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 4. 추진경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스마트 건설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 6.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 사유( ○ ○ 발주청) :

- 입찰방법 :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낙찰자 결정방법 :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심의 의견서

- ' 00년, 제00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심의안건			심의요청		
발주기관			공사비	입찰예정	
공사개요					
심의대상 시설기준	내 용				
	총족여부	<input type="checkbox"/> 매우총족 <input type="checkbox"/> 총족 <input type="checkbox"/> 미달 <input type="checkbox"/> □매우미달 (200%이상) (50%미만)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	공사종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input type="checkbox"/> 국책사업 <input type="checkbox"/> 수해복구 <input type="checkbox"/> 국가안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필요성 정도	<input type="checkbox"/> 매우필요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사유				
고난도/고기술	필요성 정도	<input type="checkbox"/> 매우필요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사유				
신기술/신공법	필요성 정도	<input type="checkbox"/> 매우필요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사유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 등	필요성 정도	<input type="checkbox"/> 매우필요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사유				
스마트 건설기술	필요성 정도	<input type="checkbox"/> 매우필요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사유				
기타 검토사항 · 설계변경 빈번 · 보증책임불명확 · 자재공급자 일괄시행 필요 · 공사비 절감	필요성 정도	<input type="checkbox"/> 매우필요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심의의결】	입찰방법	[ ]요청안 [ ]요청안이 아닌 기타공사 [ ]재심의
	낙찰자 결정방법	[ ]설계적합최저가 [ ]입찰가격조정 [ ]설계점수조정 [ ]가중치기준 [ ]확정가격최상설계

【심의의견】

○ 분리 도급(발주)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 적정 여부  
(기타공사로 의결된 경우 작성 불필요)

[ ]적정, [ ]부적정, [ ]기타의견

20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_\_\_\_\_(서명 또는 인)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4호서식]

국토교통부 공고 제20 -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과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심의의결내용

번호	공사명	공사개요	총공사비 추정금액 (억원)	발주기관	입찰 방법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예정일
					심의 요청	심의 의결	심의 요청	심의 의결	
1									
2									
3									

# 참 고 자 료

## (관 련 법 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3.5] [대통령령 제29318호, 2018.12.4, 일부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 제 6 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 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9.9.9>

**제79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9, 2006.5.25, 2007.10.10>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 2005.9.8, 2006.5.25>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16. 9. 2.>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

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10., 2008. 2. 29., 2013. 3. 23., 2016. 9. 2.>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3. 23., 2016. 9. 2.>

④ 삭제 <2006.5.25>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전문개정 1998.2.2]

**제81조** 삭제 <1996.12.31>

**제82조** 삭제 <1996.12.31>

**제83조** 삭제 <1996.12.31>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5.25]

**제84조의2** 삭제 <2010.7.21>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 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1999.9.9, 2005.9.8, 2006.5.25>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삭제 <2006.5.25>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 다.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 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 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삭제 <1999.9.9>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16. 9. 2.>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3.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 12. 31., 1998. 2. 2., 2014. 5. 22.>
- ⑦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14. 5. 22.>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2016. 9. 2.>

1. 설계점수(제84조제1항제2호의 자가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0.10]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9>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10.10>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4.>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공사 :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5. 22.>

[전문개정 2006.5.25]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2006.12.29, 2007.10.1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6. 12. 31., 2014. 5. 22.>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14. 5. 22.>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신설 1999.9.9, 2000.12.27>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 제88조 삭제 <1999.9.9>

**제89조(설계비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11.12.31>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제90조 삭제** <2006.5.25>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0., 2014. 5. 22.>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2.2, 1999.9.9, 2005.9.8, 2007.10.10>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제91조의2** 삭제 <2006.5.25>

**제92조(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시공과정·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7 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개정 2005.9.8>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 이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7. 21., 2011. 12. 31., 2013. 9. 17., 2016. 9. 2.>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8]

**제93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7.21>

[전문개정 2005.9.8]

**제94조(계약심의회 의 설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15. 6. 22., 2016. 9. 2., 2018. 12. 4.>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5. 9. 8., 2015. 6. 22.>

③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 6. 22.>

[본조신설 2000. 12. 27.]

[제목개정 2015. 6. 22.]

**제95조 삭제** <2005.9.8>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 ① 삭제 <2013. 9. 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조달청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 9. 17.>

[본조신설 2002.7.30]

## 제 8 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10.10>

**제97조(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21>

1. 삭제 <2010.7.21>

2. 삭제 <2010.7.21>

[본조신설 2007.10.10]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0.10]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9. 2.>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21., 2013. 3. 23., 2013. 12. 30.>

1.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 ③ 제80조제3항과 제5항은 입찰방법 공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10.]

[제목개정 2010.7.21]

**제100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1]

**제101조 삭제 <2010.7.21>**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4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6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필요한 기술제안점수·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0]

[제목개정 2010.7.21]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 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심의 및 점수 평가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심의를 하는 경우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본조신설 2007.10.10.]

[제목개정 2010.7.21]

**제104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제10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3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본조신설 2007.10.10]

[제목개정 2010.7.21]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 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관계 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⑥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

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를 하는 경우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실시설계서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기술제안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본조신설 2007.10.10.]

[제목개정 2010.7.21]

**제106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4. 5. 22.>

③ 제8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7.21>

[본조신설 2007.10.10]

[제목개정 2010.7.21]

**제107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4.]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1]

**제109조(평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3. 5] [기획재정부령 제699호, 2018. 12. 4, 일부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 제 6 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매년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3., 2006. 5. 25., 2007. 10. 10., 2009. 3. 5., 2013. 3. 23.>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및 제안이유
8. 삭제 <2006. 5. 25.>
9. 사업효과
10.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80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받을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07. 10. 10., 2009. 3. 5., 2013. 3. 23., 2016. 2. 1.>

[제목개정 1996. 12. 31., 2007. 10. 10.]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1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포함된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 2009. 3. 5., 2013. 3. 23., 2016. 2. 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 2009. 3. 5., 2013. 3. 23.>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

[전문개정 2006. 5. 25.]

**제79조의2(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 2016. 2. 1.>

[본조신설 2006. 5. 25.]

**제80조 삭제** <2006. 5. 25.>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5., 2013. 3. 23., 2013. 9. 17.>

[전문개정 2006. 5. 25.]

**제81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1.]

## 제 7 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개정 2005.9.8>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3. 5., 2010. 7. 21., 2016. 2. 1., 2016. 9. 23.>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 가. 계약의 목적
  -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 다. 예산액
2.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에 관한 사항
  - 가. 물품 제조·구매계약: 성능, 재질 및 제원 등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조건
  - 나. 용역계약: 과업 내용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용역의 세부사항
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의 목적
  -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 자.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4.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의 목적
  -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 다. 계약의 변경내용
  - 라. 계약변경의 사유
5.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 가. 검사 및 검수 결과
  - 나. 계약이행 완료일
- [본조신설 2005. 9. 8.]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3. 5.>  
[본조신설 2005. 9. 8.]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판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1.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 9. 9., 2002. 8. 24., 2009. 3. 5.>  
[제목개정 2002. 8. 24.]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판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5.]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17.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2호, 2016. 12. 30., 일부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일괄입찰 등에 있어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4조(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제5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제2항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2항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단서신설 2014. 1. 10.>

## 제 2 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 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제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16. 1. 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9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text{조정가격} = \text{입찰가격} / (\text{설계점수} / 100)$$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text{조정점수} = [(\text{설계점수} \times \text{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 / \text{입찰가격}]$$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③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text{가격점수} = \text{가격점수가중치} \times (\text{최저입찰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2조의2(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내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이 예규에서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본조신설 2016. 12. 30.]

**제13조(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동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 1. 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 3 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4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8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은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

계서와 함께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제16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5조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제1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개정 2011. 5. 13. 2016. 1. 1.>

**제1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8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text{조정가격} = \text{입찰가격} / (\text{설계점수} / 100)$$

**제19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text{조정점수} = (\text{설계점수} \times \text{예정가격}) / \text{입찰가격}$$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③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text{가격점수} = \text{가격점수가중치} \times (\text{최저입찰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

**제20조의2(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6조 내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 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 제 4 장 보 칙

**제21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 점수와 입찰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 부 칙 <제32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시행령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심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감점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및 제20조 관련)

<신설 2010.9.8.>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 30m 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 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50초과~ 80%이하
B 균등평가형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3,000m이상,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m <sup>3</sup> /sec이상) ④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⑤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⑥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⑦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⑧ 가스공급시설	40%이상~ 60%이하
C 가격강조형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50%미만~ 20%이상

##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0%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 ~ 30%이상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5.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방,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
6.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4호, 2019. 4. 30, 일부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수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마. 건설사업관리
  -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

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9. 4. 30.>

1. 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7. 건설기술용역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건설기술인력 관리,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안전관리·품질관리 등 건설기술의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18호, 2019. 6. 25, 일부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 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제5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
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3.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중앙심의위원회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⑧ 간사와 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4. 23.>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100명 이내의 위원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300명 이내의 위원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2.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심의 요청)**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6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29., 2019. 4.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4.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 ④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의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영관급 장교 및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 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특별심의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사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

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 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 ⑦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 ⑧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9. 4. 23.>
  - ⑨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 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4.] [국토교통부령 제617호, 2019. 4. 4., 일부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 공사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